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18. 1.

행 정 안 전 부

목 차

Ⅰ. 일반회계 ····· 1

<세입> ····· 2

<세출> ····· 19

<대변인실>

1. 국민안전방송운영 및 재난정책 홍보 ····· 21

<의정관실>

1. 국경일 등 정부행사 ····· 24
2. 정부포상 ····· 26
3. 전직대통령 및 유족 연금 ····· 28
4. 국가상징선양 ····· 30
5.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 ····· 32

<운영지원과>

1. 세종청사 이전 지원 ····· 34

<기획조정실>

1. UN거버넌스센터 지원 사업 ····· 38
2. 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화) ····· 40
3. 정책연구개발(R&D)(행안부) ····· 45
4.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 47
5.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 제고 ····· 50

6.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 52
7. 재난행정정보화 ····· 55
8. 정책연구개발(R&D) ····· 57
9.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59
10.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 61

<정부혁신조직실>

1. 생활공감정책추진 ····· 64
2. 정부조직진단관리 ····· 66
3. 책임운영기관제 운영 ····· 68
4. 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정보화) ····· 71
5.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 73
6.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 78
7. 행정생산성향상지원 ····· 80
8. 정부혁신 국제네트워크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 ····· 83
9.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 86
10.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 88
11.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 91
12. 정보공개활성화 ····· 93
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 ····· 95
14.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 98
15.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 100
16. 사회혁신추진단 ····· 102

<전자정부국>

1. 전자정부지원(정보화) ····· 106
2.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109
3.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정보화) ····· 112
4. 국가위임사무공통기반시스템 구축지원(자본)(정보화) ····· 114
5. 정보보호인프라 확충(정보화) ····· 116
6. 전자정부 성과평가 ····· 119
7.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 ····· 121
8.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고도화 ····· 124
9.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 127
10.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정보화) ····· 129
11. 캄보디아·베트남 범정부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파견(ODA) ····· 131
12. 캄보디아 전자정부 법·제도개선 연구용역(ODA) ····· 133
13. 전자정부 국가 간 국제협력 강화(정보화, ODA) ····· 136
14. 전자정부분야 국제기구 교류협력(정보화, ODA) ····· 139
15. 전자정부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정보화) ····· 142
16.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정보화) ····· 144
17.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사업(정보화) ····· 147
18. 정보자원관리 지원(정보화) ····· 152
19.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재량, 계속, 정보화) ····· 155
20.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 157
21.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추진체계 운영 ····· 160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정보화) ····· 163
23.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 165
24. 개인정보 보호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172

<지방자치분권실>

1. 불우소외계층격려 ····· 176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 ····· 178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 등 지원 ····· 180
4. 지자체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 182
5. 주민등록제도 개선 및 운영 ····· 187
6. 공직선거 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 189
7.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정보화) ····· 191
8.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운영(정보화) ····· 193
9. 자원봉사1365시스템 운영(정보화) ····· 195

10.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정보화) ····· 198
11.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201
12. 지자체 경쟁력 지원 ····· 204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207
14. 자원봉사활성화지원 ····· 209
15.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 211
16. 공무원단체 건전 육성 ····· 214
17. 행정・현장 종사자 지원 ····· 216
18.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 ····· 218

<지방자치분권실 - 지역발전정책관>

1. 새마을운동지원 ····· 221
2.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 223
3. 지역발전활성화 ····· 226
4. 고향희망심기 사업 ····· 230
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 232
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 234
7. 지역공동체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 236
8.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건전성 제고 ····· 239
9.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 241
10. 서민금융복지센터 ····· 243

<지방재정경제실>

1.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 246
2.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249
3.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 253
4.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 256
5.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 ····· 259
6. 지방공기업경영평가 ····· 261
7.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 ····· 264
8.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 267
9. 지역경제활성화 ····· 272

<지방재정경제실 - 교부세>

1. 보통교부세 ····· 276
2. 지역현안특별교부세 ····· 278
3.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 280
4. 부동산교부세 ····· 282
5.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 284
6. 소방안전교부세 ····· 286

<중앙재난안전상황실>

1. 중앙안전상황실 운영 ····· 289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포함)>

1. 특수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 292
2.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기반조성 및 활성화 ····· 295
3.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 대비 ····· 298
4.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 기술개발(R&D)(행안부)301
5.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사업(R&D)(행안부) ····· 305
6.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R&D) ····· 308
7.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R&D) ····· 311
8.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R&D) ····· 313
9.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R&D) ····· 316

<안전정책실>

1.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 319
2. 재난안전산업활성화 ····· 324
3.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지원 ····· 327

4. 국민안전의식선진화 ····· 330
5. 지역안전개선컨설팅 ····· 333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개선 ····· 337
7.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 ····· 340
8. 재해위험지역정비 ····· 342
9. 우수저류시설설치 ····· 345
10.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구축・운영(정보화) ····· 347

<재난관리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 351
2.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 353
3. 재난관리국제협력 ····· 357
4. 국가기반체계관리 ····· 361
5. 지진대비인프라구축 ····· 363
6. 재난경감대책협의회운영 ····· 365
7. 재난관리평가지원 ····· 369
8.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 372
9. 재난대책비 ····· 375
10. 재난구호지원 ····· 377
11. 풍수해보험 ····· 380
12. 재난심리회복지원 ····· 383
13.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정보화) ····· 387
1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390
15. 재난안전통신망구축(정보화) ····· 397

<비상대비정책국>

1. 비상대비훈련 ····· 401
2. 동원자원관리 ····· 403
3. B-1정부노후시설정비 ····· 407
4. 비상대비담당자 선발 ····· 409
5.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 412
6.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 416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 419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 421
3. 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 ····· 423
4. 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 427
5.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 ····· 430
6.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 432

<국가기록원>

1. 국가기록물정리 ····· 435
2. 기록물보존복원 ····· 438
3.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 ····· 440
4.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 443
5.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 ····· 446
6. 기록관리정책 및 교육 ····· 448
7. 기록정보서비스 ····· 451
8. 기록관보존시설관리 ····· 453
9.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연구(R&D) ····· 455
10. 대통령기록관리 ····· 458

<정부청사관리본부>

1. 청사시설유지보수 ····· 461
2. 정부청사노후시설 등 정비 ····· 463
3. 청사시설관리 등 위탁 ····· 465
4.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 468
5.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 470

<이북5도위원회>

1. 북한이탈주민지원 ····· 473
2. 이북5도청사시설 개보수 ····· 476
3. 이북도민관련단체 및 행사지원 ····· 478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교육원운영 ····· 48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과학수사감정지원 ····· 484
2.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 487
3.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 ····· 489
4.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 49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 496
2.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 499
3.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 503
4.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신축(정보화) ····· 50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ODA) ····· 510
2. 재난안전연구원운영 ····· 513
3.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 515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운영(정보화) ····· 518

<민주화지원 및 과거사정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운영>

1.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 522
2. 과거사관련사업지원 ····· 528
3. 제주4·3평화재단 지원 ····· 533
4.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 536

<강제동원 진상규명>

5.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 ····· 539
6.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보상금) ····· 541

<민주화관련자 명예회복>

7.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 54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 545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 547

Ⅱ.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 ····· 553

<지방자치분권실>

1.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 555
2.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 557

<지방자치분권실 - 지역발전정책관>

1. 특수상황지역 개발 ····· 560
2. 지역균형발전 추진 지원 ····· 562
3. 특수상황지역 개발(제주) ····· 564
4. 접경권 발전지원 ····· 566
5. 지역공동체일자리 ····· 568

6. 지역공동체일자리(제주) ····· 571
7. 지역공동체일자리(세종) ····· 574
8. 위험도로구조개선 ····· 577
9.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 579
10. 섬발전 협력사업 추진 ····· 581

<전자정부국>

1.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 584

<안전정책실>

1.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 587
2.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제주) ····· 590
3. 소하천정비 ····· 593
4.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 596

Ⅰ. 일 반 회 계

1. 세 입

토지대여료
51-51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토지대여료	429	180	180	451	451	451	271	150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30.>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세입 개요

○ 정부청사 등 국유재산(토지) 대여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4	165	165	165	171	165	100	96.5	1	5
'15	170	170	170	413.3	412.5	243	99.8	0.8	-
'16	175	175	175	429.3	428.5	245	99.8	0.8	-
'17.7	180	180	180	423	423	235	100	-	-
'18(예산)	451	451	451	-	-	-	-	-	-

건물대여료
51-5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건물대여료	1,907	2,439	2,439	2,014	2,512	2,512	73	3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30.>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세입 개요

○ 정부청사 등 국유재산(건물) 대여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4	1,341	1,341	1,341	2,790	2,688	200.4	96.0	99	3
'15	2,299	2,299	2,299	2,072	1,919	83.5	92.6	153	-
'16	2,368	2,368	2,368	2,162	1,907	80.5	88.2	255	-
'17.7	2,439	2,439	2,439	1,150	1,150	47.2	100	-	-
'18(예산)	2,014	2,512	2,512	-	-	-	-	-	-

기타재산수입
54-54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기타재산수입	1,851	2,312	2,312	2,390	2,364	2,364	52	2.2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

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20조(정부보관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이나 그 이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이를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나.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축금의 금융기관 예치 이자수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4	997	997	997	2,046	2,005	201.1	98.0	41	
'15	1,303	1,303	1,303	2,373	2,330	178.8	98.1	43	
'16	1,342	1,342	1,342	1,862	1,851	138	99.4	11	
'17.7	2,312	2,312	2,312	808	808	34.9	100	-	
'18(예산)	2,390	2,364	2,364	-	-	-	-	-	-

과태료
56-56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과태료	513	0	0	500	500	500	500	순증

가.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

나. 세입 개요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4	-	-	-	683	432	-	63.3	251	-
'15	-	-	-	456.5	292.5	-	64	164	-
'16	269	269	269	803	513	191	64	290	-
'17.7	-	-	-	834	834	-	100	-	-
'18(예산)	500	500	500	-	-	-	-	-	-

위약금
57-57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위약금	1,455	449	449	462	462	462	13	2.9

가.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나. 세입 개요

○ 계약불이행에 다른 위약금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4	411	411	411	343	343	83.5	100	-	-
'15	423	423	423	683	682.5	161	99.9	0.5	-
'16	436	436	436	1,455	1,455	334	100	-	-
'17.7	449	449	449	323	323	71.9	100	-	-
'18(예산)	462	462	462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28,533	39,994	39,994	41,864	40,925	40,925	931	2..3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국고보조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과오지급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납금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4	26,868	26,868	26,868	30,463	27,419	102.1	90.0	3,044	-
'15	27,551	27,551	27,551	42,081	40,716	147.8	96.8	1,365	-
'16	28,378	28,378	28,378	29,113	28,533	100.5	98	580	-
'17.7	39,994	39,994	39,994	14,984	14,984	37.4	100		-
'18(예산)	41,864	40,925	40,925	-	-	-	-	-	-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면허료 및 수수료	47	105	105	34	105	105	-	-

가.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나. 세입 개요

○ 정보공개 열람 수수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4	1,440	1,440	1,440	1,663	1,663	115.5	100	-	-
'15	105	105	105	34	34	32.4	100	-	-
'16	108	108	108	47	47	43.5	100	-	-
'17.7	105	105	105	17.8	17.8	16.9	100	-	-
'18(예산)	34	105	105	-	-	-	-	-	-

기타잡수입
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기타잡수입	1,775	780	780	803	803	803	23	2.9

가.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불용품이 매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드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뺀 금액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63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세입 개요

○ 불용품 매각수입, 청사 입주업소의 공공요금·관리비, 의무실 내진비·스케일링 대금·요양급여비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4	750	750	750	1,375	966	129	70.2	409	-
'15	735	735	735	1,415	1,026	140	72.5	389	-
'16	2,457	2,457	2,457	2,193	1,775	72.2	81	418	-
'17.7	780	780	780	496	496	63.5	52	-	-
'18(예산)	803	803	803	-	-	-	-	-	-

수입대체경비(기타잡수입)
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액		2018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기타잡수입	7,632	6,789	6,789	5,776	6,891	6,891	102	1.5

가.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8조(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 공무원인재개발밥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자치인재원) 운영에 따른 수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4	5,484	5,484	5,484	10,016	10,016	182.6	100	205	-
'15	6,347	6,347	6,347	7,219	7,219	113.7	100	-	-
'16	5,319	5,319	5,319	7,632	7,632	143.5	100	-	-
'17.7	6,789	6,789	6,789	5,058.6	5,058.6	74.5	100	-	-
'18(예산)	5,776	6,891	6,891	-	-	-	-	-	-

2. 세 출

대 변 인 실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국민안전방송운영 및 재난정책 홍보 ····· 21

사 업 명
1. 국민안전방송운영 및 재난정책 홍보(7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0
명칭	재난안전행정지원	국민안전방송운영	국민안전방송운영 및 재난정책홍보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국민안전방송운영 및 재난정책홍보	1,268	585 (1,354)	585 (1,354)	699	607	607	22	4

※ ( )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양경찰청·소방청으로 이체되기 전 예산액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민안전방송을 통해 다양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방송영상물 제작·송출함으로써 국민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 전략적·체계적인 재난안전 정책홍보 및 공익캠페인 제작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② 추진경위

-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교육 및 신속·정확한 재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방송 국민안전방송(NEMA TV) 개국('06.4월)
- 지상파 재난전문방송구축을 위한 NEMA TV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12.4월)
- 2013년도 국민안전방송 운영 기본계획 수립('13.2월)
- 2014년도 국민안전방송 운영 기본계획 수립('14.2월)
- 국민안전처 발족('14.11.19)에 따라 홍보담당관실에서 국민안전방송 운영
- 2015년도 국민안전방송 운영 계획 수립('15.1월)
- 국민안전방송 홈페이지 전면 개편, 「안전韓-TV」로 명칭 변경('15.11월)
- 행정안전부 발족('17.7.26)에 따라 안전소통담당관실에서 국민안전방송 운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6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의 정 관 실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국경일 등 정부행사 ····· 24
2. 정부포상 ····· 26
3. 전직대통령 및 유족 연금 ····· 28
4. 국가상징선양 ····· 30
5.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 ····· 32

사 업 명
1. 국경일 등 정부행사(2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0
명칭	정부의전	국가의정관리	국경일 등 정부행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의정관실(총액)	1,169	1,001	1,001	1,044	1,004	1,004	3	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품위 있고 격조 높은 정부 의전행사를 거행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② 추진경위

- ‘49. 1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공포 (모든 국경일 행사는 정부주관으로 거행)
- ‘81. 광복절을 정부차원의 경축행사로 격상
- ‘83. 모든 국경일 행사를 총무처에서 주관
- ‘88. 제헌절 행사 주관 이관 (총무처→국회사무처)
- ‘05.12.29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
- ‘15.11.22.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장 거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48년 ~ 계속
- 사업규모 : 4대 국경일, 대통령 취임식, 국무총리 이·취임식, 국빈방한 공식환영식, 대통령 해외방문 공항 환송·환영 행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 정부포상(2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1
명칭	정부의전	국가의정관리	정부포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정부포상	9,556	10,550	10,550	9,988	9,872	9,372	△1,178	△11.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사회 각 분야 및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선행시민 등을 폭넓게 발굴하고, 소관 부처 추천 등 법정절차를 거쳐 포상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성과 수훈자의 자긍심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80조,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모범공무원규정
- 헌법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② 추진경위
- '건국공로훈장령'을 제정·공포(1949.4.27.)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훈·포장의 신설 및 제도개선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48 ~ 계속
- 사업규모 : 훈·포장, 수장·수치(표창) 등 41,212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정부포상 수상자

사 업 명
3. 전직대통령 및 유족 연금(21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2
명칭	정부의전	국가의정관리	전직대통령 및 유족 연금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전직대통령및유족연금	477	511	511	511	511	511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직대통령(유족 포함)에게 그에 상응한 예우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85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서 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 ·'69. 1. 2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정(법률 제2086호)
  - ·'69. 1. 29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3753호)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9년~계속
- 사업규모 : 전직대통령 1인 유족(배우자) 3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직대통령 및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 국가상징선양(21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0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3
명칭	정부의전	국가의정관리	국가상징선양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국가상징선양	1,839	172	172	163	163	163	△9	△5.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국새 및 나라문장 등의 체계적 관리 및 선양·교육 등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 및 국가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대한민국 국기법 및 동법 시행령, 국새규정, 나라문장규정 등

② 추진경위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민통합 및 자긍심 제고 등을 위하여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국새,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음
- 2007.1.26. 대한민국 국기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상징에 대한 선양·홍보 및 민간단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21세기 국민통합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4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5.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21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7
명칭	정부의전	국가의정관리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전직대통령및유족예우	1,264	1,399	1,399	1,669	1,669	**1,669**	**270**	19.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직대통령(유족 포함)에게 그에 상응한 예우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립묘지 외 안장된 전직대통령 묘지 관리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85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서 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 ·'69. 1. 2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정(법률 제2086호)
  - ·'69. 1. 29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3753호)
  - ·'17. 3. 21 국립묘지 외 안장된 전직대통령 묘지 관리 지원을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9년~계속
- 사업규모 : 전직대통령 1인 유족(배우자) 3인, 전직대통령 묘지 2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직대통령 및 유족, 국립묘지 외 안장된 전직대통령 묘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10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사)해위윤보선대통령기념사업회	10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운 영 지 원 과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세종청사 이전 지원 ····· 34

사 업 명
1. 세종청사 이전 지원(71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02
명칭	재난안전행정지원	재난행정지원	세종청사 이전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세종청사 이전 지원	19,776	1,387	1,387	674	660	660	△727	△5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15.10.16.)」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구 국민안전처 직원을 대상으로 이주지원비 및 국내이전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환경 및 세종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37호, '15.10.16)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5년
- 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15.10.16) 이후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 5월 ~ '18. 8월
- 사업규모

(이주지원비) 구 국민안전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년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구분	인원(명)	지급기간(2년)
1단계 이전	292	'16. 5월 ~ '18. 4월
2단계 이전	258	'16. 9월 ~ '18. 8월

(국내이전비) 세종시로 이사하는 구 국민안전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개인 이사비 지급 / 대상인원 9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구 국민안전처)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기 획 조 정 실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UN거버넌스센터 지원 사업 ····· 38
2. 행정안전부정보화 ····· 40
3. 정책연구개발(R&D)(행안부) ····· 45
4.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 47
5.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 제고 ····· 50
6.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 52
7. 재난행정정보화 ····· 55
8. 정책연구개발(R&D) ····· 57
9.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59
10.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 61

사 업 명
1. UN거버넌스센터 지원 사업(19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3	303
명칭	정부혁신조직	행정효율성향상	UN거버넌스센터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UN거버넌스센터 지원	853	2,379	2,379	2,379	2,289	2,289	△90	△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UN거버넌스센터 지원 사업

한국·UN간 조약(제2298호)에 의거, 글로벌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역량개발 프로그램 및 연구사업을 실시

□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유엔 회원국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연구개발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 한국정부와 UN간 협력 강화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 '15. 9월 193개국, '30년까지 17가지 목표 실천 약속
①빈곤퇴치, ②기아해소,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③보건 증진, ④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향상, ⑤성 평등 달성 및 여성역량 강화, ⑥물과 위생 제공 및 관리, ⑦에너지 보급, ⑧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확대,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구축, ⑫지속가능 소비.생산,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⑮육상, 생태계 등 보호 및 지속가능 이용, **⑯평화로운 사회 증진 및 제도 구축, ⑰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5. 5.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서울선언"에서 설립 결의

○ '06. 6.「기술협력 신탁기금 협정」체결 (조약1790호, 한-UN, 사업기간 '06~'16)

○ '06. 9.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설립. 1차 사업 추진

※ 한국에 설립된 최초의 UN사무국 산하기관 (UNPOG : UN Project Office on Governance)

○ '16. 6. 유엔거버넌스센터 2차 사업 협정 체결 (조약2298호, 한-UN, 사업기간 '16. 7~'30)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6년 ~
- 사업규모 : 23억원 (신탁기금 150만불, 센터 운영비·이전공사비 7억)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UN거버넌스센터)
- 사업 수혜자 : UN회원국

사 업 명
2. 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화)(7031-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11)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500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행정안전정보화(정보화)	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화)	2,170	2,219	2,219	2,552	2,280	2,280	61	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하모니(업무관리)시스템 운영・개선

- 부내 정보시스템 기반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하모니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성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 부내 정보시스템 웹접근성·호환성 진단

- 부내 대국민 웹사이트 정보검색 척도 개선을 위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 웹 개방성・무결성(데드링크 오류로 인한 신뢰도 하락 방지) 확보 등 컨설팅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관리

- 부내 정보자원(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로 정보자원 운영·관리 최적화 및 효율성 향상
- 정부업무평가(범정부 EA 성숙도 평가) 대응(6~10월)
- 부내 정보화 사업 및 정보자원 등 EA정보 현행화(상시) 수행

○ 부내 사이버보안

- 부내 PC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기술지원
- 부내 정보보호시스템 노후화 장비 교체, 부내 PC 백신 등 SW 라이선스 구입
- 부내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등 정보보안 컨설팅

○ 부내 전산장비·SW 관리

- PC 장애복구 및 이용불편을 지원하기 위한 PC 및 N/W 운영
- 내용연수(5년) 경과에 따른 노후 PC・모니터 교체

○ 부내 개인정보 보호

- 본부·소속·산하기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이행점검 및 컨설팅
- 구글 등 외부포털 대상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및 조치
- 부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관리시스템의 노출 상시점검

○ 부내 정보화교육 및 역량강화 등

- 부내 정보화 전문교육 운영, 부내 정부업무평가(정보화분야) 평가 대응 등

○ 업무 기반시스템 운영·관리

- 행안부 대표홈페이지의 상시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웹 서비스 운영·관리
- 부처 생산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제공을 위한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록물 보존처리,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자료실 운영, 본부 및 소속기관 자료실 도서 관리시스템 통합운영 유지보수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하모니(업무관리)시스템 운영·개선

- 전자정부법 제25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하모니시스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 부내 정보시스템 웹접근성·호환성 진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동법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부내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관리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제2항
- 전자정부법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제2항
- 전자정부법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및 시행령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 부내 사이버보안

- 전자정부법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동법 시행령 제20조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 사이버(국가·공공)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 국정원 2016년도 국가기관 정보보안관리 실태 평가
- 행안부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안 수준 진단
- 국가·공공기관 업무망과 인터넷 안전한 자료전송 가이드라인

○ 부내 전산장비·SW 관리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57조(물품수급관리계획), 제65조(물품의 정비)

○ 부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부내 정보화교육 및 역량강화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및 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동법 시행령 제8조, 전자정부법 제53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 업무 기반시스템 운영·관리

- 전자정부법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서관법」 제40조 및 제41조(전문도서관 관련)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포의 절차), 관보규정 제14조의2(전자관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하모니시스템 구축・운영

- 2005. 10 ~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서비스 실시
- 2008. 7 : 통합 온나라(문서유통기능 포함) 도입
- 2010. 1 : 망분리에 따른 외부포털 구축(망분리사업)
- 2012. 3 : 모바일 업무포털 서비스 구축
- 2012.10 : 하모니 문서보안(DRM) 서비스 구축
- 2014. 12. ~ : 클라우드 저장소 연계, 장관과의 대화방 민원 처리 기능 등 개발
- 2016. 5. ~ : 전자우편 및 메신저 정부표준 시스템 교체 지원

○ 부내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관리

- 2006 : EA 기반의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정보자원관리 기반 구축
- 2007 : 안정적 EA정보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사업
- 2008～ : EA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 2014 : 정보화지원시스템 구축(EA관리시스템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통합)
- 2015 : EA정보 현행화(125개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모바일 대민 서비스 포함) 운영성과 측정
- 2016 : 정보시스템 현황 관리 및 기능활용도(FP산정) 점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등 정보보안 진단

- 2008.7.～2016.12.12. : 정보보안 지침 및 메뉴얼 정비,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점검, 소속·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등

○ 부내 개인정보 보호

- 2011. 09.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노출시 징역 등 처벌수위 강화
- 2011 ~ 2016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사업 추진
- 2012 ~ 2016 : 우리부 개인정보보호 법적의무조치사항 이행점검 및 컨설팅
- 2013. 09. : 부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2016. 09. :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규칙 개정·시행으로 의무사항 증가

○ 행안부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개선

- 1998.4 : 대표 홈페이지 개설
- 1999.10 : 대표 영문홈페이지 개설
- 2000~2010 : 기능 개선, 운영·서버보강('08년), 웹접근성 개선 등
- 2013. 7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2016. 11 : 대표 홈페이지 반응형 웹 개편

○ 자료관 전산화

- 2000 : 도서관리전산시스템 및 자료실 홈페이지 구축
- 2002 : 자료관 홈페이지 전용 웹서버 구축
- 2003 : 서버통합보안시스템 구축
- 2005 : 자료관시스템(기록물)구축 및 기록물 DB 구축
- 2006 : 기록물 검색활용시스템 구축
- 2013 : 본부 및 소속기관 도서관리시스템 통합
- 2014~ : 부내 도서관리시스템(4개) 통합 유지보수 실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국민

사 업 명
3. 정책연구개발(R&D)(행안부)(70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0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정책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R&D)(행안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정책연구개발(R&D)	575	570	570	570	570	57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정현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법령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시책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시작년도 : 1999년
- 추진배경
  - · 정부출연기관 정비계획(1998.5.13)에 따라 그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원하던 출연금을 출연금(70%)과 정책연구비(30%)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운용
  - · 정책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연구용역을 각 출연연구기관간 경쟁을 통해 수주토록 함으로써 경영효율화 도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9 ~ 계속
- 사업규모 : 예산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과제 연구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정책연구과제 수요 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70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0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부내행정지원	성과관리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302	334	334	633	319	319	△15	△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정책과제의 효율적 수행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성과 제도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의 유지관리 필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참여식 교육을 통한 직원 업무역량 함양
-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제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4조(평가예산) 등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평가 대상), 제7조의2(평가항목),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등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제13조(위탁교육훈련), 제14조(직장훈련) 등

② 추진경위

○ 성과관리 운영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05.6.) 및 시범운영(‘05.7.~9.)
-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 실시(‘06~)
-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06.12.)
- 역량평가시스템 구축(‘07.12.)

○ 행정효율성 제고

- 2005년도 부처 맞춤형 혁신교육 최초 사업 실시
-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구성원의 상황적응적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참여식 교육과정 운영 필요
- 미래 지향적 창조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필수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사업규모 : 정부업무평가 수행, 부내 성과평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부내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5.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 제고(70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1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부내행정지원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 제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 제고	972	974	974	1,002	890	890	△84	△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고객중심 행정 및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운영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 및 신뢰 학보
- 주요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제26조(처리 민원의 사후관리)
-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조(목적), 제12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항, 제13조(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7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4조(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제16조(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제17조(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등

② 추진경위

- 2005. 7. : 부내 고객관리시스템(CRM) 구축 및 서비스 개시
- 2007.12. : 권익위 연계 행정안전부 민원안내 콜센터 개설(MOU 체결) 및 운영
- 2015. 1. : 고객관리시스템 서비스 전환(행자부 홈페이지 및 하모니시스템에 통합)
- 2007. ~ : 사이버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사업규모 : 고객(정책)만족도 조사, 부내 민원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민원 관련 제도개선, 정책홍보 업무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고객중심의 CS행정 및 정책홍보 업무관련 내부직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6.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7034-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303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국제행정발전지원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 (B)		(B-A)/A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1,085	710	710	980	722	722	12	1.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중남미 핵심협력국과의 공공행정 분야 협력체계 제도화를 통해 국제적 개발협력 선도국가로서 지위 확보 및 행정한류 확산 기반 마련
- 공공행정분야 국제협력의 코디네이터로서 한국의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
- 범부처 공공행정 우수사례, 수요자 중심의 행정한류 콘텐츠 발굴 및 신규 국제협력 수요창출로 대외적 국가 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정과제 132번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의 세부이행 과제로 '한국의 발전경험 중 비교우위가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명시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제26항 내지 제28항 등

> 26.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추진 및 홍보
> 27.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구·개발 및 보급
> 28.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제17조 등

> **제5조②항**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4. 4. : 행정자치부 '국제협력담당관 신설
- '14. 4. : 행정한류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 '14. 6월 : 「UN공공행정포럼」 한국유치 및 개최

* UN 회원국 정부기관 및 공공행정 유관기관 133개국 1,570명 참석
- '14. 9월 : 주민정보관리 국제컨퍼런스 개최(서울 콘래드 호텔)
  * 각국 장관급 10명 포함 175명 참석,
- '14.12월. 한-아세안 행정장관 라운드테이블 및 혁신 전시회 개최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별도 예비비 확보)
  ※ 인도네시아와 공공행정 분야 MOU 체결
- '15. 3. : 한-아프리카(1+5) 행정장관 회의 개최
  ▪ '15년 신규사업(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련 예산 반영
  ※ 아프리카 4개국과 공공행정분야 MOU 체결(에티오피아,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 '15. 8. : 한-인니 전자정부/행정개혁 공동위 개최
  ※ 인도네시아와 전자정부협력센터 구축 및 새마을운동 협력 MOU 체결
- '16. 1. : 2016년 제1차 행정한류 협의회 개최
- '16. 4~11. :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 기관방문 설명회 개최
  ※ 총6회 개최, 12개 기관 방문 및 주한외교사절 외신기자 110명 참석
- '16. 5. : 한-중남미 공공행정협력단 파견
- '16. 7. : 2016년 제2차 행정한류 협의회 개최
- '16. 8. : 한-중앙아 공공행정협력단 파견
- '16.11. : 제3차 한-인니 전자정부/행정개혁 공동위 개최
- '16.12. : 2016년 제3차 행정한류 협의회 및 우수사례 공유마당 개최
- '17. 5~7. :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 기관방문 설명회 개최
  ※ 총2회 개최, 9개 기관 방문 43개국 주한외교사절 60여명 참석
- '17.7. : 한-중미 및 한-칠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코스타리카, 칠레)
  ※행자부, 법제처, 안전처, 관세청, 서울시 등 5개 기관 협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7.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3035-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11)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5	500
명칭	재난안전정보화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재난행정정보화	1,119	4,243	4,243	2,149	1,612	1,612	△2,631	△6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재난안전분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및 노후 보안장비 교체 등을 통한 재난안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지원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전자정부법』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9조(재난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제3종 시설물의 지정 등)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의10(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4(보험등의 가입관리)

② 추진경위

- '06. 9월 소방방재 지식행정포털시스템('반디') 구축
- '08.11월 소방방재 지식행정포털시스템('반디') 보강
- '15.11월 舊 국민안전처 업무포털시스템('부엉e') 구축
- '16. 3월 舊 국민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 '16.12월 舊 국민안전처 정보통신사업관리 프로그램(상용SW) 도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8. 정책연구개발(R&D)(71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133	300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재난행정지원	정책연구개발(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정책연구개발(R&D)	594	530	530	530	530	53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정현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법령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시책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시작년도 : 1999년
- 추진배경
  - · 정부출연기관 정비계획(1998.5.13)에 따라 그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원하던 출연금을 출연금(70%)과 정책연구비(30%)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운용
  - · 정책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연구용역을 각 출연연구기관간 경쟁을 통해 수주토록 함으로써 경영효율화 도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9 ~ 계속
- 사업규모 : 예산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과제 연구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정책연구과제 수요 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9.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7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01
명칭	재난안전행정지원	재난행정지원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23	223	223	330	223	223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직원 역량강화 교육, 성과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우수부서·직원 격려 등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안전감찰 및 관련 활동을 위한 회의·자문위원회·교육·워크숍 추진 등
- 소속직원들의 위기관리 역량강화 및 급증하는 국제안보협력 수요 대응을 위해 해외유수 위기관리 전문교육기관에 단기 교육파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국민·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부처별 특성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직원 교육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한 정부부처의 공통예산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사업규모 : 정부업무평가 수행, 부내 성과평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안전감찰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부내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10. 정책기획위원회 운영(70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5	300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	-	-	4,409	4,409	3,956	3,956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9호, 2017.9.5., 제정]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신설 발표('17.7.19,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회)
  *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해 100대 국정과제 관리 및 일자리 등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 총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7 ~ 계속
- 사업규모 : 국정과제 전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정부혁신조직실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생활공감정책추진 ····· 64
2. 정부조직진단관리 ····· 66
3. 책임운영기관제 운영 ····· 68
4. 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정보화) ····· 71
5.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 73
6.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 78
7. 행정생산성향상지원 ····· 80
8. 정부혁신 국제네트워크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 ····· 83
9.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 86
10.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 88
11.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 91
12. 정보공개활성화 ····· 93
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 ····· 95
14.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 98
15.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 100
16. 사회혁신추진단 ····· 102

사 업 명
1. 생활공감정책추진(12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0	010	013
명칭					일반・지방재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300
명칭	지역발전	생활공감정책추진	생활공감정책추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생활공감정책추진	523	526	526	500	300	300	△226	△4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과제 발굴
- 나눔과 봉사로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국정홍보활동을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제3항(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② 추진경위

-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국민의 참여 속에 생활공감 정책을 대폭 발굴・실행'하는 방안 마련 요청('08 국회)
- '생활공감 국민행복 실천대회' (제1회 '08.12.29, 제2회 '09.12.29, 제3회 '10.12.23, 제4회 '11.12.27, 제5회 '12.12.27, 제6회 '13.12.18, 제7회 '14.12.15, 제8회 '15.12.18)
- '모니터단 구성・운영' 1기 3,041명('09년), 2기 10,258명('10년), 3기 10,036('11~12년), 4기 5,084명('13~14년), 5기 4,036명('15~16년), 6기 3,858명('17년) 활동 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생활공감정책 발굴 및 추진으로 혜택을 받는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해당 없음

사 업 명
2. 정부조직진단관리(19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1	300
명칭	정부혁신조직	책임운영기관제운영 및 정부조직진단관리	정부조직진단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정부조직진단관리	493	517	517	529	491	491	△26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여러부처 관련 사회이슈 또는 국정과제 등 조직현안에 대해 조직진단·연구용역 등을 통한 정부기능 수행체계 개선
- 다수 부처간 협업으로 부처간 소통을 통한 정부기능 효율화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2(조직진단)

② 추진경위

- **조직진단 도입 준비** (2003년)
  - ▪ ’03. 3 : 정부조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향 수립 필요성 제기
  - ▪ ’03. 7 :「행정개혁로드맵」에 상시적 조직진단 실시 반영(‘04 이후)
  - ▪ ’03.12 :「조직진단・변화관리 매뉴얼」 개발
- **부처별 조직진단 추진** (2004～2006)
  - ▪ ’04년 : 재경부, 국조실 등 17개 부처 조직진단 실시
  - ▪ ’05년 : 과기부, 정통부 등 16개 부처 조직진단 실시
  - ▪ ’06년 : 인사위 등 8개 부처 조직진단 실시
- **조직진단 전담조직 설치・운영** (2007～2009)
  - ▪ ’07년 : 바람직한 정부조직 재설계를 위한 포럼 등 운영
  - ▪ ‘08년 :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 지원(특별행정기관 이관 등)
  - ▪ ‘09년 : 대국대과제 하부조직 재정비 및 국정과제수행체계 진단 등
- **현안과제 진단 및 융합행정 추진** (2010~2012)
- **다수부처 관련 문제해결형 조직진단 추진** (2013~2014)
- **현안과제 및 일선집행기관 등 진단**(2015)
- **현안과제 및 중앙-지자체 연계기능 진단(2016)**
- **현안과제 및 정부조직 진단·컨설팅(2017)**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사 업 명
3. 책임운영기관제 운영(19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1	301
명칭	정부혁신조직	책임운영기관제운영 및 정부조직진단관리	책임운영기관제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책임운영기관제 운영	418	441	441	441	441	441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책임운영기관에 행·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미비점을 지속 보완, 성과지향적 정부조직 모델로 정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99년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월)·시행령(7월) 제정
- ’02년 : 하부조직 설치·운영 자율화(총리령·부령→기본운영규정), 초과수입금 사용범위 확대 및 사용절차 간소화
- ’06년 : 업무유형 구분(행정형, 기업형), 인사·예산상 자율성 확대
- ’09년 : 기관장 채용시 행안부 협의 절차 폐지, 운영위원회 통합
- ’11년 : 업무유형 세분화(행정·기업형 → 조사연구·교육훈련·문화·의료·시설관리형), 중기관리계획을 통한 체계적 관리, 우수기관 평가유예제 도입 등
- ’12년 :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실시(각 기관 개별 실시 → 행안부 통합 실시) 민간 출신 기관장 최초 임용기간 확대 (2년→3년) 등
- ‘13년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추가 지정 등 총 38개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1개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
- ’14년 : 기탁물품 접수특례 대상기관 확대, 임기제공무원 임용비율 확대(30%→50%), 복수직급 허용범위 확대(정원의 15%→1/3) 등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증대
- ‘15년 : 기관장 전문임기제 임용, 성과 탁월 기관장 임기 연장(5년→8년), 기본운영규정 개정시 소속부처 사전승인 원칙을 사후통보로 변경, 종합평가 결과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통일교육원 등 11개 기관 추가지정 및 1개 기관(울산지방해양수산청) 지정 해제(12.30)
- ’16년 : 소속책임운영기관 2개 기관 추가 지정(국립수목원, 국립기상과학원), 1개 기관 지정 해제(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총 49개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1개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
- ‘17년 : 의무직렬의 임기제공무원 활용 범위 확대(계급별 정원의 50%→80%)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 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정보화)(19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정부	정부혁신조직실	0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2	500
명칭	정부혁신조직	민원처리개선	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 (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B-A)	(B-A)/A
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	204	256	256	269	256	256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체계화하고, 업무관리카드 기반의 실시간 업무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유지관리
- 조직개편 등으로 기관간 기능의 이관 등에 따라 기능 변경시 기능 분류 정비 및 개선
- 정부조직개편 수요 발생 시 국정목표를 기능별·목적별·조직별 분류 재구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정부기능분류시스템 지원근거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

·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 제8조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기능분류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ㅇ추진경위

- 2004. 08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구축 BPR/ISP
- 2005. 05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구축
- 2006. 07 : 정부기능분류모델 보완 등 시스템 고도화
- 2007. 07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이용활성화
- 2013. 10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 2008. ~ 현재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유지보수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 사업규모 : 57개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중앙행정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5.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1932-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	010	015
명칭					일반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2	501
명칭	정부혁신조직	민원처리개선(정보화)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전자문서소통시스템	6,180	9,063	9,063	5,287	5,287	5,287	△3,776	△4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온-나라 문서시스템(클라우드 온-나라 포함)의 안정적 관리와 보안성 강화를 통한 정책결정의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
-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성 강화를 통한 행정·공공기관 간 신속·정확한 전자문서 유통 제공 및 이용 활성화
- 온-나라 이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온-나라시스템 운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9조(업무관리시스템구축·운영 지원), 제20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기안 및 시행)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운영≫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2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등)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둔다.

≪온-나라 이음 시스템 운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6조의2(행정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제46조의3(행정협업시스템의 활용 촉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2(행정협업시스템의 구축 운영)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작업 및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이하 "행정협업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3(행정협업시스템의 활용 촉진)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중 행정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 행정협업시스템 활용 실태를 평가·분석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온-나라시스템 운영≫

- ’05. 7. : 행정자치부 업무관리시스템 및 기능분류시스템 구축
- ’06. 3. : 시범부처 대상 업무관리시스템 확산(기획예산처 등 5개)
- ’06. 7. ~ ’07. 5. :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확산 추진
- ’07. 1. : 전 중앙행정기관 업무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시
- ’07. 5. ~ ’07. 9. : 이용활성화를 위한 통합방안 연구
- ’07.12. ~ ’08. 7. :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 구축
- ’08.12. ~ ’09. 5. :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 확산
- ‘11. 9. ~ ‘11.11. : 온-나라 시군구 확산 1차 사업
- ‘11.10. ~ ‘11.12. : 온-나라시스템 모바일 사업
- ‘12.11. ~ ‘13. 2. :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 간 자료유통시스템 구축
- ‘13. 9. ~ ‘13.12. : 온-나라시스템 보안성 강화 1차 사업
- ‘14. 8. ~ ‘14.12. : 온-나라시스템·문서유통 보안성 강화 2차 사업
- ‘14. 7. ~ ‘14.12. : 모바일 온-나라 전자문서 결재기능 구축 사업
- ‘17. 1. : 비공개 5호~8호 문서를 대상으로 5급 이상 처리토록 범위 확대
- ’17. 5., ‘17. 6.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신규 구축
- ‘17. 7. : 정부조직개편 온-나라 신규 구축 및 전환 지원
  * 해양경찰청(신규), 대통령경호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전환)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 운영≫

- ‘15. 8. ~ ‘16. 7. :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1차 사업
- ’16. 8. ~ ’16.12. : 개인정보위원회 등 17개 기관 클라우드 온-나라 전환
- ‘16.11. ~ ‘17. 3. :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2차 사업
- ‘17.5. : 일자리위원회 온-나라 문서2.0 신규 구축
- ‘17.7. : 소방청 온-나라 문서2.0 신규 구축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운영≫

- ’98.10.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추진
- ’99. 5. ~ ’01. 7. : 전자문서시스템 간 전자문서유통 표준화 추진
- ’00. 7. ~ ’02.10. :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유통(E-mail) 단계적 확대
- ’01.12. ~ ’02. 4. : 전자문서유통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추진
- ’02.12. : 전자문서유통 확대를 위한「사무관리규정」개정
- ’02. 8. ~ ’03.12. :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구축
- ’03. 9. ~ ’04. 3. : 신 전자문서시스템 행정기관 확산
- ’04. 6. ~ ’04.12. :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ISP 사업
- ’05. 6. ~ ’05.12. :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1단계 사업
- ’06. 6. ~ ’06.12. :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2단계 사업
- ’07. 7. ~ ’06.12. : 정부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3단계 사업
- ’09. 3. ~ ’09. 8. :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 확충사업
- ‘12. 5. ~ ‘12.11. : 공공・민간 간 유통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 ’16. 7. : 문서24 시범서비스 운영(법인, 용역)
- ’16. 10. : 문서24 서비스 확대(영유야보육)
- ’17. 2. : 문서24 서비스 확대(렌터카)
- ’17. 3. :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DB 동기화 솔루션 업그레이드
- ’17. 4. : 문서유통 NAS 스토리지(2TB) 증설
- ’17. 6. :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전자문서함 등 웹 취약점 조치

≪온-나라 이음 시스템 운영≫

- ’10.11. ~ ‘11. 2. : 디지털 행정협업체계 수립 BPR/ISP 실시
- ’11.10. ~ ‘11.12. : 디지털행정협업시스템 시범구축
- ‘13. 9. ~ ‘13.12. :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나라e음) 구축
- ’14. 2. : 협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 ‘14. 4. :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서비스 개시
- ‘14. 7. ~ ’15. 2. : 범정부 행정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나라e음 2단계 사업 추진
- ‘15. 1. : 지자체로 서비스 확대
- ‘15. 2. : 권익위 민원상담서비스에 PC영상회의 적용
  * 세종청사 권익위 공무원과 서울사무소 방문 민원인 간 연결
- ‘15. 4. : 공공기관으로 PC영상회의 (인터넷망) 확대
- ‘15. 9. ~ ‘15.12. : 정부 의사소통 채널 통합 구축(나라e음 3단계) 사업 추진
- ‘16. 2. : 온-나라 이음으로 명칭 변경, 지방공기업으로 인터넷 PC영상회의 확대
- ‘16. 5. :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 ’17. 4. : 온-나라 이음 사용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합 메인페이지 신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사업규모 : 국민,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위탁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사 업 명
6.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1932-5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2	504
명칭	정부혁신조직	민원처리개선(정보화)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2,635	3,622	3,622	3,891	3,566	3,566	△56	△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행정・공공기관 등의 민원 업무 처리 시 구비서류 제출 생략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행정내부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2) 사업내용

① 법령상 근거

-「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② 추진경위

- 2005. 7. : 행정정보 공유현황 및 개선방안 대통령 보고
- 2005. 11. : 행정정보공유위원회 발족
- 2005.~2006. : 행정정보 공유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 2006.~2007. : 범정부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사업
- 2007.~2008.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
- 2008.~2009. : 수요자 맞춤형 공동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
- 2009. 8. : 수요자 맞춤형 공동이용체계 기반 구축사업
- 2011. 11. :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확대 구축사업
- 2012. 5. :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기능 고도화사업
- 2013. 6. :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기능 고도화 2차 사업
- 2014. 5. :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사업
- 2015. 7. :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확대 구축사업
- 2016. 7. :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확대 구축사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일반국민

사 업 명
7. 행정생산성향상지원(19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지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3	300
명칭	정부혁신조직	행정효율성향상	행정생산성향상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행정생산성향상지원	764	377	377	377	319	△58	△1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정부의 각종 정책·제도·서비스를 국민의 유형·특성별 요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활발한 정책소통 및 제도개선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으로 정부 경쟁력 및 성과 제고
-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의 평가를 통해 정책품질과 행정생산성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3조(제안제도),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9조

② 추진경위

<행정제도 개선>

- 2004~2007년 : 행정개혁을 통한 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
- 2008년 : 창조적 실용성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변화 추진
- 2009~2010년 : 주요 행정분야의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
- 2011년 : 취약계층지원, 국민편의제공 등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 추진

<제안 활성화 추진>

- 1971. 3 : 공무원제안제도 최초 실시(총리 지시)
- 1973. 7. 2 : 공무원제안규정 제정(대통령령) *이후 8차 개정
- 2006. 6.15 : 공무원제안규정 전면 개정(대통령령) *이후 5차 개정
- 국민제안규정 제정('06. 5.30) 및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06.7.1)
-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시스템' 개통('07.5)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국민행복제안센터' 개통('13.4)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개통('16.3.28)
- 행정개혁을 통한 제도 및 서비스 개선('04~'07년)
- 주요 행정분야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09~'10년)
- 취약계층, 국민편의제공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11년~)

<국민 맞춤형서비스 확산>

- 2014. 5 :「2014 맞춤형서비스 추진계획」 마련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16.6.30.) 및 고도화('16.2.15.)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16.3.31.)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온라인화 시행('17.8.30.)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온라인화 시행('17.11.30.)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사항 없음

사 업 명
8. 정부혁신 국제네트워크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19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3	302
명칭	정부혁신조직	행정효율성향상	정부혁신 국제네트워크 강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 확정(B)		
정부혁신 국제네트워크 강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	127	140	140	633	633	859	719	513.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UN, OECD, OGP 등 국제기구·국제네트워크와의 협력, 주요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뢰도 제고
- 정부혁신 등 우리나라 우수사례 공유 등 해외 확산·전파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 행정안전부가 '정부혁신, 행정능률'에 관한 사무를 관장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3항 1의2,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을 분장

○ 추진경위

- '15. 4. : 제51차 OECD 공공행정위원회(PGC) 정기회의 참석(파리)
- '15. 8. :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포럼 참석(방콕)
- '15. 8. : 한-인니 공동위원회 정부3.0 워크숍 개최(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15.10. : OECD 공공거버넌스 관계장관회의 참석(헬싱키)
- '15.10 : OGP 연례회의 정부3.0 세션 운영(멕시코시티)
- '15.11 : D5 장관회의 정부3.0 주제발표(에스토니아 탈린)
- '16. 2. : 국제행정학회(IIAS) 집행이사회 참석(브뤼셀)
- '16. 4. : 제53차 OECD 공공행정위원회(PGC) 정기회의 참석(파리)
- '16. 5. : OECD 정부혁신담당자 회의(OPSI) 참석(파리)
- '16. 6. : UN거버넌스센터(UNPOG) 확대개편 협정 서명식 참석(뉴욕)
- '16. 6. : UN 공공행정의 날 참석(뉴욕)
- '16. 9. : 국제행정학회(IIAS) 총회 참석(청도)
- '16. 11. : 정부3.0 글로벌포럼 개최(부산)
- '16. 12. : OGP 고위급 연례회의 참석(파리)
- '17. 2. : MENA-OECD 작업반 회의 참석(두바이)
- '17. 4. : 제55차 OECD 공공행정위원회(PGC) 정기회의 참석(파리)
- '17. 5. : OECD 공공혁신전망대(OPSI) 국가담당자회의 참석(오타와)
- '17. 5. : OECD 공공데이터 전문가회의 참석(파리)
- '17. 6. : UN 공공행정포럼 참석(헤이그)
- '17. 6. : OECD 증거기반 정책수립 컨퍼런스 참석(파리)
- '17. 6. :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운영위원회 회의(워싱턴)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9. 지식기반의 행정구축(193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3	304
명칭	정부혁신조직	행정효율성향상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378	599	599	599	554	554	△45	△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효율적 지식관리 및 공유·활용을 통해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 및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정책연구용역 성과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정책연구과제의 품질향상 제고
- 온-나라 지식 및 온-나라 정책연구(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② 추진경위

- '01 : 「전자정부법」에 행정지식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
- '05 :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정 및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개발
- '06 : 지식행정지수 개발·진단
- '08 :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 확대 사업 완료
- '08 :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 및 온라인 행정백과사전 '국정피디아' 서비스
- '10 : 표준KMS(지식관리시스템) 개발·보급
- '11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 '12 : 행자부-매경 '대한민국 지식대상' 공동 제정 및 운영(계속)
- '14 : 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C) 개인정보필터링 적용
- '15 : GKMC 메인화면 개편 및 퇴직공무원 지식코너 도입
- '16 : 범정부 행정협업체계(클라우드 기반 온-나라 지식) 구축 완료 및 서비스
- '17 : 온-나라 정책연구(PRISM) PDF 변환 서버 OS 업그레이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2년～계속
- 사업규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1933-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3	306
명칭	정부혁신조직	행정효율성향상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140	533	533	535	533	533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민·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확인·점검·평가, 인증제 추진
-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97.8.22, 민원관련 독립규정)
  ·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민원운영실태 확인·점검·평가 등 규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7855호, 전부개정 '06.3.3.)
-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 시 대통령 지시('08.3.13.)
  · 산업단지 인·허가 처리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제도개선
-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 시 보고사항('08.4.30.)
  · 공무원의 행태·의식을 개선하여 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토록 제도개선
- 민원서비스 수준 상향 평준화를 위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12년)
-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에 대한 민원편의 제공('12.12.20, 시행령 개정)
- 장차관 국정토론회의('13.3.16.)
  ·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제도개선 강구
- 정부혁신 업무보고시 대통령 말씀('15.1.14.)
  ·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처리되도록 정책에 반영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5.8.11.)
  · 제명 변경, 민원 종류 및 처리절차 명확화, 헌법기관까지 법적용범위 확대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6.2.12.)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추진
  · '16년 정부혁신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16.1.26.)
    * 도돌이표민원과 같은 후진적 관행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민원 선제적 관리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전 행정기관(303개)에 대한 행안부 주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실시 결정*('16.5.20.)
    * 전년에는 중앙·광역 및 일부 기초지자체를 대상 시범평가 실시, 올해부터 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 민원행정 확인·점검 및 평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1.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1933-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3	307
명칭	정부혁신조직	행정효율성향상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정부혁신변화 관리지원	3,973	4,605	4,605	14,433	14,433	7,033	2,428	5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열린혁신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② 추진경위

-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13.5.28)
- 정부3.0 발전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14.9.23)
- 정부3.0 체험마당 개최('15.4.30.~5.3. / 4일간)
- 성과중심 정부3.0 가속화 계획 수립('15.6.15.)
- 7대 핵심과제 발표('15.9.15.), 합동브리핑 등 통합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 정부3.0 서비스 안내 및 가치 확산으로 국민 생활 속 정착 실현
- 국민체험마당에 10만2천여명 참관 및 공감대 형성('16. 6월, 11월)
- 200여개 다양한 정부서비스를 모바일(웹・앱)로 간편하게 검색·이용('16.8월)
- 정부3.0 성과의 국제 확산으로 글로벌 행정혁신 브랜드화 추진
- 국정과제(8번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지정('17. 7.)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4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해당 없음

사 업 명
12. 정보공개활성화(1935-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5	305
명칭	정부혁신조직	정보공개활성화	정보공개활성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정보공개활성화	994	1,149	1,149	1,729	1,690	1,690	541	4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 확대, 각급 기관의 담당자 교육, 운영평가, 연차보고서 제작 배포, 정보공개위원회 운영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원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 기능개선·장애 예방, 서비스데스크 운영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98.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 '04. 1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사업으로 추진, 전자적 정보공개, 행정정보의 공표 도입 등 정보공개법 개정
- '05.10 ~ '06. 4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1단계 구축 및 개통
- '06.10 ~ '07. 3 : 정보공개시스템 2단계 구축
- '07. 9 ~ '08. 3 : 정보공개시스템 3단계 구축
- '09. 1 ~ '09. 7 :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시스템 웹접근성 개선
- '10. 6 ~ '10.12 : 공개정보목록 자동제공기관 확대(162개→418개), 검색 기능 등 개선
- '11. 6 ~ '11. 9 : 공공기관 이용확대(30개), 국민신문고 연계처리, 정보목록 검색 개선
- '12. 8 ~ '12.12 : 공공기관 이용확대(329개), 노후서버 교체, 모바일 서비스 실시('13.1)
- '13. 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정보대상기관 확대, 원문정보 사전공개 근거 마련 등)
- '13. 9 ~ '13.12 :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1단계), 원문서비스기능 등
- '14. 4 ~ '14.12 :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2단계), 검색기능 보강 등
- '15. 6 ~ '15.12 :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3단계), 인프라 보강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사업규모 : 범정부적 해당(중앙, 지자체, 교육청, 공사·공단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 공공기관 담당자, 전 국민

사 업 명
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1936-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6	502
명칭	정부혁신조직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	21,674	19,931	19,931	30,016	30,016	30,016	10,085	5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능형·융복합형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확대, 품질 제고 및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효율적인 데이터 통합 제공·관리를 위한 범정부 데이터 오픈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및 사회 현안 해결 참여 기반 조성

○ 빅데이터 분석·활용으로 사회현안 및 국민의 요구에 대한 선제적 공공서비스 제공, 정부업무 효율성 제고 등 데이터기반의 행정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10 시행)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
> - - - - - - << 중 략 >> - - - - - -
>
> **제40조(과태료)** ① 제13조 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전자정부법 제51조 (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 **제51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행정기관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정보자원 중 여러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이하 "공유서비스"라 한다)을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7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30조의3(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 활용)

> **제30조의3(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활용)** ① 제30조의3(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관리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② 추진경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13.7.30), 시행(10.31)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구성・출범('13.12.10)
- '공공데이터분쟁위원회' 출범('13.12.12)
-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과제 구축 사업(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13.9~12)
- '유능한 정부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확대 방안(관계부처 합동)' 보고(국무회의, '14.1)
-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과제 확대 구축 사업 추진('14.7~12)
-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심의·의결(공공데이터전략위, '14.9.16)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 계획' 심의・의결(공공데이터전략위, '14.12.30)
- 대한민국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달성('15.7.6, 'Government at a Glance 2015')
- 공공데이터법 개정('15.12, 시행 '16.4.7)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근거 마련 및 민간 침해 서비스 개발 금지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성장 지원 공간 "오픈스퀘어-D" 개소('16.1)
- 제2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출범('16.1)
- 공공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6.2)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계획 수립(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6.2)
  ※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시행, 개방표준·오픈포맷 확대, 오픈API 서비스 품질점검 등
- 공공기관 앱·웹서비스 대상 민간서비스와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수립('16.2)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제정(누적 79개, '16.12)
- 제2차('17~'19)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6.12)
- 제2차('17~'19)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6.12)
- 대한민국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 1위 달성('17.7., 'Government at a Glance 2017')
- 문재인 정부 공약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기업 및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화진흥원	100%	공공데이터법 제14조, 시행령 제29조

사 업 명
14.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1937-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	010	015
명칭					일반 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7	503
명칭	정부혁신조직	대민서비스기반확충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행정서비스통합 포털운영	1,961	2,421	2,421	5,300	5,267	5,267	2,846	11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민원24**와 정부, 공공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알려드림e, 대한민국정부대표포털**을 **통합**하여 구축한 정부대표포털인 「**정부24**」 운영 및 유지보수
- '정부서비스', '민원24', '정책·정보'로 구성
- 다양한 브라우저와 모바일(전용 앱 운영) 환경으로 제공
- **모바일 기반 민원서비스 확대** (300여종 → 400종)
- 20개 기관 100여종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정부24」에서 제공
- 정부의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정보포털** 및 **각 부처 홈페이지 정책·정보 게시판 연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 672호)
- 전자정부법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제9의2(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시행령 제10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 전자정부법 제12조의2(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② 추진경위

- '10. 4 ~ '10.11 : 민원서비스선진화 2단계 구축 사업
  * 정부민원포털 '민원24'로 서비스 명칭변경('10.8)
- '09년 ~ '11년 : 대한민국정부포털 1~3단계 구축사업
- '12년 ~ '13년 : 대한민국정부포털 운영 및 이용활성화 사업
- '13년 ~ '15년 : 민원24 기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구축(시범, 1·2차)
- '15. 6 ~ '15.12 : 민원24 주민등록번호 DB암호화 구축
- '15. 10. : 행정서비스 통합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
- '16. 6.~ :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추진
- '17. 3.~ : 『정부24』 시범서비스 시작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민원24, 정부서비스, 정책·정보를 통합한 정부24 유지보수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사 업 명
15.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8	300
명칭	정부혁신조직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	-	-	20,000	14,000	5,000	5,0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최근 급증하는 시민의 직접참여 욕구와 우수한 역량 및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사회적 난제를 창의적·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문제해결 역량 강화 및 시민참여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
사회혁신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② 추진경위 :
- 국정과제 5개년 계획 발표('17.8.19): 국정과제 8번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8-3. "사회혁신 기반강화 및 생태계 조성"
- 사회혁신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 제정('17.9.7)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50억
- 사업기간 : 신규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정부혁신조직실 사회혁신추진단)
- 사업 수혜자 : 국민참여형 문제해결을 통해 혜택받는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6. 사회혁신추진단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0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3	309
명칭	정부혁신조직	행정효율성향상	사회혁신추진단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사회혁신추진단	-	-	-	841	739	739	739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사회혁신 추진단 운영 및 민관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회혁신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② 추진경위 :

- 국정과제 5개년 계획 발표('17.8.19): 국정과제 8번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8-3. "사회혁신 기반강화 및 생태계 조성"
- 사회혁신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 제정('17.8.25)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7.4억
- 사업기간 : 신규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혁신추진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전 자 정 부 국

1. 전자정부지원(정보화) ····· 106
2.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109
3.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정보화) ····· 112
4. 국가위임사무공통기반시스템 구축지원(자본)(정보화) ····· 114
5. 정보보호인프라 확충(정보화) ····· 116
6. 전자정부 성과평가 ····· 119
7.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 ····· 121
8.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고도화 ····· 124
9.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 127
10.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정보화) ····· 129
11. 캄보디아・베트남 범정부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파견(ODA) ····· 131
12. 캄보디아 전자정부 법・제도개선 연구용역(ODA) ····· 133

13. 전자정부 국가 간 국제협력 강화(정보화, ODA) ····· 136
14. 전자정부분야 국제기구 교류협력(정보화, ODA) ····· 139
15. 전자정부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정보화) ····· 142
16.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정보화) ····· 144
17.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사업(정보화) ····· 147
18. 정보자원관리 지원(정보화) ····· 152
19.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재량, 계속, 정보화) ····· 155
20.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 157
21.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추진체계 운영 ····· 160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정보화) ····· 163
23.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 165
24. 개인정보 보호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172

사 업 명
1. 전자정부지원(정보화)(2031-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500
명칭	전자정부	전자정부실행기반마련(정보화)	전자정부지원(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전자정부지원	123,705	126,324	126,324	91,447	91,447	86,947	△39,377	△3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주요 국정과제 지원과 핵심 전자정부 과제의 추진을 통해 부처 간 정보 연계· 공동 활용 등 행정 업무 효율성 및 국민 편의성 제고

○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고 미래 전자정부의 성장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 전자정부법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전자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2.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3. 제도적·기술적 실현가능성
> 4.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 및 성능 개선, 긴급한 사업의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4. 3~4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업무 및 관련예산 이관(정통부→행안부)
- '04～'07년 : 전자정부 31대 과제 세부사업 등 추진 지원(9,011억)
  - ▪ 온라인 국민참여, 복지정보서비스 등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 '08년 : 이명박 정부 전자정부 과제 BPR/ISP 및 31대 과제 마무리(1,438억)
- '09년 : 이명박 정부 전자정부 과제 시스템 구축(1,307억)
- '10～'12년 : 이명박 정부 전자정부 과제 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확산
  ('10년 1,600억, '11년 1,304억, '12년 1,087억)
- '13년 : 이명박 정부 추진과제 마무리 등(688억)
- '14년~16년 : 박근혜 정부 핵심 전자정부사업 추진
  ('14년 839억, 15년 1,215억, 16년 1,237억)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 계속
- 사업규모 : 20,521억('04～'17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출연(한국정보화진흥원)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예산확보), 각 과제별 주관기관(사업추진)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기업, 각급 행정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화진흥원	100%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한국정보화 진흥원의 설립 등) - 전자정부법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사 업 명
2.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20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500
명칭	전자정부	지역정보화지원(정보화)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국가위임사무종합 정보시스템운영	12,997	12,740	12,740	14,437	14,437	14,437	1,697	1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은 환경, 교통, 농촌, 축산 등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전산화한 것으로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선진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 대국민서비스의 최접점인 시도·시군구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량의 각종 인·허가 자료를 통합적·전면적으로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데이터 개방 공간 마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공동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8년부터 전자지방정부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사업추진
-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및 안정적 유지관리로 대민서비스 개선 및 예산절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사업규모 :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대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사 업 명
3.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정보화)(2032-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502
명칭	전자정부	지역정보화지원(정보화)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625	1,543	1,543	1,580	1,580	1,580	△274	△1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시도·시군구 25개 행정업무에 적용된 공간정보 기능 및 스마트폰 기반 현장행정 시스템 유지보수
- 스마트안전귀가, 인허가자가진단, 생활불편신고서비스 등 3개 대민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 행정공간정보시스템과 생활공감형 서비스연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행정서비스 인프라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등)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자치단체 행정업무 공간정보 연계활용 ISP수립('07.5～'08.3)
-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08.10)
  - · (행안부)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 ·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기반인프라(H/W, S/W, 통합DB) 구축
- 행정공간정보체계 시범사업 추진('09.2월 ～ 12월)
-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 추진('10.6월～'12.11월)
-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추진('12년～현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사업규모 :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대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사 업 명
4. 국가위임사무공통기반시스템 구축지원(자본)(정보화)(2032-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503
명칭	전자정부	지역정보화지원(정보화)	국가위임사무공통기반시스템구축지원(자본)(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2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국가위임사무공통기반시스템구축지원(자본)	4,224	3,655	3,655	1,949	1,949	1,949	△1,706	△4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자치단체에 보급된 공통기반*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지원
  * 국가위임사무 및 공통업무 처리를 위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보급한 표준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자치단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지원('06.7월 ~ '11.6월)
-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공통기반Ⅰ) 교체지원('10.9월 ~ '13.9월)
-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재해복구체계 구축 지원('12.9월 ~ '17.9월)
  · 자치단체 공통기반 장비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지원
-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DB서버) 교체지원('14.9월 ~ '19.3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사업규모 :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대상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245개)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1항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1] 115번

사 업 명
5. 정보보호인프라 확충(정보화)(2033-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3	500
명칭	전자정부	정보보호체계강화	정보보호인프라확충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정보보호인프라확충	9,842	9,285	9,285	10,840	10,807	10,807	1,522	1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 중요시스템 등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위협 증가로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대응 등 전자정부 정보보호 체계 강화
- 사이버침해 사고 시 경제적 손실과 사회혼란 등 국민 생활·안전에 영향이 큰 행안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 수립, 이행점검 등 추진
-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의 효율적 운영, 진본성 확보 및 전자문서 보안 강화로 전자유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 정보시스템 보안약점 최소화, 단계별 시스템 보안성 관리·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보호기반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24조 및 제56조
-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8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제34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등
  * 시행령은 전체 조문 기재 생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고시) 제6장(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0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가 정보보호 수준 제고
  - ·'08.7.「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수립·추진 국무회의 보고
  - ·'09.3.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대응계획 보고
  - ·'09.4.「정보보호 추진현황 및 '09년 역점과제」국무회의 보고
  - ·'11.6.「전자정부 정보보호 중기 추진계획」국가정보화전략위 심의·의결
  - ·'12.7.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 결집,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정보보호의 날」지정 운영 (매년 7월 둘째수요일)
  - ·'13.04. 대통령 지시사항('13.4.9)으로 '지자체 시스템 해킹 방지 대책' 마련·추진
  - ·'15.10. 전자정부사이트 인증서 관련 웹트러스트 국제인증 획득
  - ·'15.12. 보안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및 이행점검
  - ·'17.04 전자정부 정보보호컨설팅 수행(4월~11월, 전남광양시청 등 30개 기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강화

· ’01.0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공포
· ’01.07.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
· ’07.12.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등 기반보호법 일부 개정
· ’13.01. 행정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구축 운영
· ’16.1. 행안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현황(국가 전체 385개 중 98개)

계	제어시스템(50개)						정보시스템(48개)		
	철도	교통	상수도	에너지	U-CITY	물재생	긴급구조	시도행정	행안부
98	11	13	16	2	5	3	18	17	13

-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보안체계 강화
· ‘09.12. SW개발보안 시범진단 및 제도화 가능성 검토
· ‘11.09.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보안성 검증센터 오픈
· ‘12.06.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개정하여 SW 개발보안 적용 의무화
· ‘14.09.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개정하여 모바일 앱 개발 시 보안기준 제시
· ‘15.01. 전자정부 SW·IOT 보안센터 구축 운영
· ‘15.08.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관리지침 개정하여 공공앱 정비하여 성과관리 기준 마련
· ‘16.12.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SW설계단계까지 SW개발보안 범위 확대
· ‘17.07. 전자정부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보안약점 진단·제거로 보안성 강화 추진
· ‘17.07. 전자정부시스템 SW개발보안 교육 추진(공무원 및 개발자 등 1800여명 대상)
-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화 운영 및 유지관리
· ‘00.12. 행정전자서명 제도도입 및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 ‘09.02.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 구축 및 진본확인서비스 본격 확산
· ‘12.11. 전자정부서비스 본인확인수단 강화(복합인증시스템) 구축
· ‘15.10. 행정전자서명인증 웹서비스 국제 신뢰성 마크(웹트러스트) 획득
· ‘17.05.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신규 구축 완료에 따른 서비스 개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위탁 등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인터넷진흥원(출연)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위탁)	100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사 업 명
6. 전자정부 성과평가(2034-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4	502
명칭	전자정부	전자정부성과평가강화(정보화)	전자정부 성과평가(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전자정부 성과평가(정보화)	187	138	138	268	198	198	60	4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민 지향적 전자정부서비스를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성과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UN 등 국제기구 평가에서 전자정부 선도국가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68조 및 제70조

② 추진경위

-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수준 평가 실시('00년 이후 계속)
- UN 전자정부 평가 '10년, '12년, '14년 연속 1위, '16년 3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보화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행정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화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제4항

사 업 명
7.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2035-5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0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보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5	506
명칭	전자정부	공공서비스 신기술 촉진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	3,600	3,600	3,600	5,250	5,250	5,250	1,650	4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등 국정과제 수행 및 사회 현안 해결,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첨단 정보기술*을 행정업무와 접목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u-서비스) 발굴·확산 *인공지능, RFID, IoT센서, 웨어러블 기기, 드론 등
- 행안부는 시범사업 발굴 및 확산가능성 검증을 통해 표준화하고 이후 주관부처에서 자체 확산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전자정부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교통·복지·환경·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6~2007 : u-지역정보화 사업을 통해 공공분야 u-서비스 사업 추진
- 2008. 2 : 조직개편으로 (구)정통부 및 (구)지경부로부터 공공분야 u-서비스 사업* 이관
  * 'RFID/USN 확산사업' 중 공공분야, 'u-City 구축기반조성사업' 전체
- 2008. 3 :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Ⅱ-8-38과제중 RFID/USN 확산사업)
- 2009. 1 : 정부의 17대 신성장 동력산업(IT융합시스템)으로 지정
- 2009. 12 :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u-서비스 추진사업 추진 근거 마련
- 2012. 1 : "지역기반 u-서비스지원" 사업을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으로 통합

- 2012. 12 :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
  ※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56호, 시행일 13.1.1
- 2013. 3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사업 미래부로 이관
- 2013. 5 : 새정부 국정과제(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에 포함
  ※ 133-8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창출
- 2016. 4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에 포함
  ※ 3-1-1 지능정보 기반 전자정부 新 서비스 개발·확산
  4-1 개방형 IoT 공통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 2017. 7 : 새정부 국정과제(8.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에 포함
  ※ 8-5 정부업무 지능화로 스마트한 정부행정 구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8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100%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시범사업 주관기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일선행정담당 공무원 등 시범사업성격에 따라 다양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화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사 업 명
8.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고도화(2035-5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5	509
명칭	전자정부	공공서비스 신기술적용 촉진(정보화)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고도화(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행정기관정보통신서비스이용환경고도화	1,568	1,598	1,598	2,598	2,124	2,124	526	3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원격지 간 행정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영상회의시스템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상호 연계 및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통기반 구축·운영
- 모바일서비스, 스마트워크 등 행정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로 선진화된 정보통신환경 제공
  -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이용제도 개선으로 보안이 확보된 저렴한 통신서비스 제공
  - IoT 등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술표준, 보안성 가이드라인 등 도입환경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32조
-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8조 및 제59조
- 행정·공공기관용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행안부 고시 제2015-22호)
- 전자정부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4조
- 행정정보통신망운영관리규정(대통령 훈령) * 전체 조문 기재 생략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8. 7. :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통합정비방안 마련
- ‘11. 9.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 기본계획 수립
- ‘13. 2. : 2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마련
- ‘13. 6. : 영상회의 활성화 추진방안 마련
- ‘13.12. : 영상회의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완료
- ‘14.10. : 행정기관 유·무선 융합 전화 시범서비스(200명 대상)
- ‘14.12.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 컨설팅 수행
- ‘14.12. : 중앙부처 및 시도 영상회의 공통기반 시스템 연계(71개)
- ‘15.7. : 시군구 및 중앙부처 소속기관 영상회의 공통기반 시스템 연계(273개)
- ‘16.06.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3단계 협약 체결(통신3사)
- ‘16.07 : 국가융합망 구축 실무추진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 ‘16.09 : 국가융합망 구축실무추진단 구성운영에 관한 훈령(676호)제정
- ‘16.12 :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 분산환경 구축
- ‘16.12 : 영상회의 공통기반 시스템 연계(394개)
- ‘16.12. : 세종 및 서울청사 모바일행정전화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화진흥원(출연)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사 업 명
9.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2035-5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5	511
명칭	전자정부	공공서비스신기술적용촉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 (B)	(B-A)	(B-A)/A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2,400	2,148	2,148	2,278	1,875	1,875	△273	△1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출장·이동 중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을 이용한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확충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
  * 공공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보안 등 공통기능 제공
- 모바일 메신저 등 다기관 공동활용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통해 중복투자 방지 및 보안성, 정부 업무효율성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국정과제 135번 "세종시 조기 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② 추진경위
-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11.8.)
-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 7종 배포('12.5.)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운영('13.4.)
- 현장행정 모바일 공통기반 구축('14.10.)
- 모바일 전자정부 화이트리스트 검증시스템 구축('14.12.)
- 보안이 강화된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구축('14.12.)
- 모바일 전자정부 가상화 시범서비스 실시('15.2.)
- 아이폰용 바로톡 서비스 개시('16.8.~)
- 모바일 공통기반 가상화 서비스 개시('17.1~)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보화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화진흥원(출연)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사 업 명
10.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정보화)(2037-5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7	507
명칭	전자정부	정보화마을활성화(정보화)	정보화마을조성및활성화(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정보화마을조성 및 활성화(정보화)	3,236	2,384	2,384	1,946	1,946	1,946	△438	△18.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농·산·어촌 정보이용환경 조성 및 주민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 IT를 통한 상거래 지원 및 지역주민 역량 제고로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직·간접 일자리 창출

⇒ 정보이용생활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② 추진경위

○ 정보화마을 기반 조성('01~'07년)

·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계획 수립('01.3, 1단계 시범마을)

·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03.7, 2단계 사업)

○ 정보화마을 내실화 및 효율화 추진('08~)

· 정보화마을 육성 성과 및 개선방안 수립('08.4)

· 정보화마을 내실화를 위해 우수마을 발굴·육성 및 관리강화

※ '15년말 기준 전국에 358곳 조성·운영 중

○ 정보화마을 운영평가('05년~) 및 부진마을 컨설팅('06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1년 ~ 계속(자치단체보조는 '07년 ~ 계속)
- 사업규모 : '15년까지 조성된 전국 358개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및 249개 마을 인건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위탁,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농·산·어촌 정보화마을 주민 등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20%	전자정부법 제65조

사 업 명
11. 캄보디아·베트남 범정부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파견(ODA)(2038-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8	300
명칭	전자정부	국제사회 전자정부 선도국가 위상강화	캄보디아·베트남 범정부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캄보디아·베트남 범정부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	-	-	60	60	60	60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수원국에서 추진 중인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사업들을 양국가의 핵심 담당자가 모여 협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개별 사업 간 융합 및 수원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우리나라 선점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정부조직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10, '12, '14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 3회 연속 세계 1위
- '14.12. : D5 창립 멤버*로 가입,
  한-ASEAN 특별 정상회의 및 행정장관회의 時 한-ASEAN 전자정부 협력 강화 논의

  ※ 디지털정부 D5(Digital 5) 창립 멤버 : D5는 영국 주도로 구성된 Global 네트워크로 영국, 한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5개국)으로 구성
- '15. 1: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內 '글로벌전자정부과' 신설

  ※ '글로벌전자정부과'는 전자정부 해외진출 총괄지원 활동을 수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글로벌전자정부과)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참여기관) 외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KOICA,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 사업 수혜자 : 수원국(캄보디아, 베트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사 업 명
12. 캄보디아 전자정부 법·제도개선 연구용역(ODA)(2038-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8	301
명칭	전자정부	국제사회 전자정부 선도국가 위상강화	캄보디아 전자정부 법·제도개선 연구용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캄보디아 전자정부 법·제도개선 연구용역	-	-	-	150	150	150	150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전자여권관리, 워크넷 시스템, 국가토지정보 인프라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도적 기반 정비와 추진체계(조직)를 정비함. 본 연구는 캄보디아 전자정부기본법, 전자여권 및 개인정보에 관련 법령 등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권고하고 입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함. 또한 상술한 전자정부사업의 캄보디아 파트너 기관 및 운영기관의 행정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직기능 및 직무설계를 제시하여 전자정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킴. 캄보디아 전자정부사업의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지속관리 역량을 향상시킴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정부조직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10, '12, '14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 3회 연속 세계 1위
- '14.12. : D5 창립 멤버*로 가입,
  한-ASEAN 특별 정상회의 및 행정장관회의 時 한-ASEAN 전자정부 협력 강화 논의
  ※ 디지털정부 D5(Digital 5) 창립 멤버 : D5는 영국 주도로 구성된 Global 네트워크로 영국, 한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5개국)으로 구성
- '15. 1: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內 '글로벌전자정부과' 신설
  ※ '글로벌전자정부과'는 전자정부 해외진출 총괄지원 활동을 수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글로벌전자정부과)
- 사업 수혜자 : 수원국(캄보디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지자체 보조의 경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에 '지자체 보조'로 기재

사 업 명
13. 전자정부 국가 간 협력 강화(정보화, ODA)(2038-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8	501
명칭	전자정부	국제사회 전자정부 선도국가 위상강화	전자정부 국가 간 협력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전자정부 국가 간 협력강화	726	1,709	1,709	2,123	2,064	2,064	355	2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한국형 전자정부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전자정부협력센터를 구축·운영하고, MOU 체결국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전자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7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4조(국제협력)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전자정부국)

② 추진경위

○ 전자정부협력센터 구축・운영

- '03년부터 8개 센터를 구축・운영 하였으며, 7개 센터(멕시코, 칠레, 터키, 남아공, 불가리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는 운영종료 되었고, 1개 센터(인도네시아)는 운영 중
- 한-베트남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11.6.~'13.6.)
- 한-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13.3.~'15.12.)
- 한-인니 전자정부협력센터 구축 및 운영 양해각서 체결('15.8.)
-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개소('16.3.2., 자카르타)
- 한-케냐 전자정부협력 양해각서 체결('16.5.)
- 한-페루 전자정부협력센터 구축 및 운영 양해각서 체결('17.6.)
- 한-페루 전자정부협력센터 개소('17.6)

○ 전자정부협력 MOU 체결

- '15년(7개국) : 에디오피아(총무부), 르완다(행정노동부), 탄자니아(총리실 국무부), 우간다(공공서비스국무부), 페루(국무총리실), 칠레(국무조정부), 베트남(정보통신부)
- '16년(9개국) : 세르비아(행정자치부), 튀니지(공직·굿거버넌스·반부패부), 케냐(정보통신부), 엘살바도르(기술기획처), 아르헨티나(현대화부), 아제르바이잔(공공서비스혁신청), 카자흐스탄(정보통신부), 포르투갈(행정현대화부), 프랑스 LOI(국가개혁간소화부)
- '17년 상반기(2개국) : 벨라루스(정보통신부), 페루(국무총리실)

※ 전자정부협력 MOU 현황('17. 7월 현재) : 총 43개국, 4개 기구, 51개 MOU, 1개 LOI

○ 전자정부 수출기반 조성

- 전자정부 수출 확대를 위해 '16년부터 전자정부지원사업(전자정부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시스템 보유부처의 컨설팅, 전문가파견, 로드쇼, 해외협력, 홍보 등을 지원
- '16년 실적 : 우정사업본부(우편물류현대화, 우즈벡), 예금보험공사(예보시스템개선, 몽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학수사정보시스템 컨설팅, 몽골) 등 9개 부처 사업 지원
- '17년 실적 : 대구시(도시재난안전시스템 컨설팅, 베트남 다낭), 헌법재판소(전자헌법시스템 컨설팅, 우즈벡), 조달청(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코스타리카) 등 7개 부처 사업 지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사업 수혜자 : MOU 체결 국가 및 공적개발원조 수원국, 국내기업 등
- 출연기관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화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사 업 명
14. 전자정부분야 국제기구 교류협력(정보화, ODA)(2038-5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8	506
명칭	전자정부	국제사회 전자정부 선도국가 위상강화	전자정부분야 국제기구 교류협력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전자정부분야 국제기구교류협력	443	443	443	577	480	480	3	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제기구·국제개발은행 등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대상 전자정부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정보격차해소 및 전자정부 해외 진출에 기여
- 개발도상국 IT분야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2) 사업내용

- 전자정부 분야 개도국 지원 및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개도국 공무원 대상 전자정부 초청연수 추진
- UN 무역개발회의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정기 상호교류를 통한 한국 전자정부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70조(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② 추진경위

○ 전자정부 초청연수

- '98 : 제21차 APT(Asia Pacific Telecommunity) 관리이사회에서 IT인력양성 지원 사업을 제안
- '00-04 : ASEM 정상회의('00), APEC 정상회의('01), ASEAN+3('01), 부산 ITU 텔레콤('04) 등 국제회의를 통해 정부는 개도국의 정보격차해소 지원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
- '06 : 디지털기회포럼(현 디지털개발포럼) 창립총회 개최
- '08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기업 및 MDB 등과 협력하여 전자정부, 국가정보화 분야 기업협력과정 시작
- '09 : 전세계 30개국 240명 초청연수 실시

※ 아시아 개도국과 우리의 개발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아시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내용의 "신아시아 구상" 천명('09.3)

※ 對ASEAN ODA '15년까지 2배 확대 천명('09.6, 한-아세안정상회의)

※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ODA 확대 등 책임과 역할 강화 필요('09.11)

※ ODA 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09.12)

- '12 : 43개국 231명 초청연수 실시, 2012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개최
- '13 : 29개국 300명 초청연수 실시
- '14 : 32개국 1.426명 초청연수 실시
- '15 : 38개국 854명 초청연수 실시
- '16 : 40개국 851명 초청연수 실시

○ 국제부담금

- UN 무역개발회의(UNCTAD) 분담금 : UNCTAD에서 개도국 전자정부 발전 지원을 위한 ICT 정책개발 사업을 제안('12.6.), '13년도부터 매년 한-UNCTAD 협력사업 참여
- OECD 전자정부사업 자발적 기여금 : OECD회원국 전자정부 책임자간의 공통문제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2001년 이후 매 2년 단위로 전자정부 사업 공동 추진
- ICA(국제전자정부위원회) 회비 : 전자정부 및 정보기술정책 및 동향에 대한 경험·지식을 28개국과 상호교류를 위해 1969년 ICA 회원가입 이후 매년 회비 납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개별국가(수원국)의 수요 기반 공무원 및 공공기관
- 출연기관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화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사 업 명
15. 전자정부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정보화)(2038-5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8	507
명칭	전자정부	국제사회전자정부 선도국가위상강화	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운영 (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전자정부글로벌 아카데미운영	500	405	405	420	405	405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제적으로 공인된 한국 전자정부 모델의 구축경험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담기관(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을 통해 전자정부 글로벌 컨설팅 인력 양성 및 전자정부 교육 콘텐츠 개발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70조(국제협력)

② 추진경위

- '13.1월 : '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 신규 설립
- '14. 2. : '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 인력 확충
- '14. 6. : 전자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과정 개설
- '15. 7. : '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 사업 제주청사 이전
- '15 : 전문가과정 5회 실시 (전문가 126명 교육)
- '16. 4. : 청년 전자정부 청년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과정 개설
- '16 : 전문가과정 2회, 청년과정 2회 실시(전문가 85명 교육, 청년 64명 교육)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보화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전자정부 관련 국내·외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화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사 업 명
16.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정보화)(2038-5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8	508
명칭	전자정부	국제사회전자정부선도국가 위상강화	전자정부해외진출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전자정부수출지원 센터 구축·운영	-	-	-	1,442	1,442	1,442	1,442	순증
OECD E-Leaders Meeting 개최	-	-	-	539	539	539	539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자정부수출지원센터 구축·운영 >

-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를 계기로 **쇄도하는 교류협력 수요를 한국형 전자정부 해외진출로 연결**
-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발굴, 수출과 연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 및 전자정부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기여
- 국민에게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수 IT인력 양성의 계기마련

< OECD E-Leaders Meeting 개최 >

- OECD에서 주최하는 전자정부 분야 고위급 연례회의로 **35개 회원국 최고정보화 책임관(CIO)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정책·전략 논의 및 세계 전자정부 방향 제시**
-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회의 특성상 **한국 우수 솔루션 및 기술을 OECD 35개 회원국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던 해외진출 활동을 **디지털 선도국으로 확대하는 성과** 기대
- 한국 전자정부는 UN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에 이어 '16년에는 3위를 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전략을 선도하고 **전자정부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해 나갈 필요
  · OECD 사무총장의 공식서한이 접수되어 '18년 한국 개최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인만큼, OECD 회원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최고책임자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전자정부 위상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64조 제2항(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전자정부법 제7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4조(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전자정부국)

② 추진경위

< 전자정부수출지원센터 구축·운영 >

- UN 전자정부 평가 3회(2010, 2012, 2014) 연속 세계1위로 해외 전자정부 협력 요청 급증
- 전자정부 수출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어 전자정부 수출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시급 ('13년 23% →'14년 13% → '15년 10%)

< OECD E-Leaders Meeting 개최 >

- ('10.10.11.) 제2회 OECD E-Leaders 회의부터 한국정부 참석
- ('17.1.6.) 주OECD대표부 파견관과 OECD사무국 면담
- ('17.2.2.) 한국 개최를 희망하는 장관님 명의 서한 발송
- ('17.3.24.) OECD 사무총장 명의의 한국 개최 서한 접수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전자정부수출지원센터 구축·운영) '18 ~ 계속
  (OECD E-Leaders Meeting 개최) 1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OECD 회원국 및 지역회의 참여 개발도상국, 국내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화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사 업 명
17.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사업(정보화)(2039-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일반계정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지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9	500
명칭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기반확충	전자정부표준화체계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전자정부표준화 체계구축	2,095	2,463	2,463	4,833	4,833	2,995	532	2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자정부 웹사이트 수준 점검으로 공공정보 접근성 강화
- 전자정부 표준관련 시스템 위탁·운영
-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표준화된 기술기반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에 대한 지속적 품질관리
- 전자정부사업 수발주 추진여건 개선지원, PMO 및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 및 기술지원, 수발주 고충지원센터 운영
-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정부 內 업무환경 혁신으로 공유·협업 촉진 및 장소·기기 제약 없는 업무처리 기반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환경 개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정부법】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0조(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자정부표준관련 시스템 운영・위탁≫

▪ 전자정부법 제30조의2(타법개정 2016.12.27, 법률 제14474호)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통합적・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 할 수 있다.

②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유지관리・기술지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3호, '10.2.26.)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37호, '10.11.1 .개정)

제35조(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고시 제2016-48호, '16.12.26. 개정)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③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 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확인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개발 대비 비용이 높거나, 기능구현 또는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전자정부사업 발주지원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 「전자정부법」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및 제71조제1항제4~5호(전문기관의 지정 등)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 (클라우드 발전계획, '14.9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공무원 개인 PC시대를 마감하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 (전자정부법) 제30조의2(전자적시스템의상호연계및통합), 제30조의3(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구·활용), 제50조(표준화) 및 제54조(정보자원통합관리)

○ 추진경위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환경 개선≫

- ’05.09 : 중앙행정기관 등 대상 웹 접근성 실태조사 최초 실시
- ’07.09 : 웹 접근성 실태조사 대상기관 확대(기초자치단체)
- ’09.05 : “전자정부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종합대책” 수립
- ’09.12 : 웹 접근성 수진진단 결과 중앙행정기관(역량평가), 지자체(합동평가)에 반영
- ‘09.08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제정(행정안전부고시)
  ※ 1차 개정(‘10.6), 2차 개정(’12.10), 3차 개정(‘16.6)
- ’09.09 : 행정기관 웹사이트 웹 호환성 준수 수준진단 실시
- ’11.09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실태조사 최초 실시
- ’15.06 :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액티브X 제거 추진계획” 수립
- ’16.07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장애인 정보접근성 수진진단 개선방안”수립

≪전자정부표준관련 시스템 운영・위탁≫

- ‘00.10.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구축
- ‘04.12.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운영
- ‘06.12. 전자정부 표준관리시스템 구축
- ‘06.12. 행정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07.12.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 ‘14.12.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G-cloud 통합 구축
- ‘15.11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16.12.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전환 구축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유지관리・기술지원≫

- ‘08.06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09.05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1단계 사업 추진
- ’09.11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2단계 사업 추진
- ’10.11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3단계 사업 추진
- ’11.11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4단계(모바일화) 사업 추진
- ’12.11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5단계(배치) 사업 추진
- ’10~현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관리 및 기술지원 추진

≪전자정부사업 발주지원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 ’05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12월 공포, ’06.7월 시행, ’10.2월 전자정부법으로 통합)
- ’09 :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 종합대책 수립
- ’10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

- ’11 : 중소기업 공생발전형 공공정보화 선진화 방안 수립
- ’12 : PMO 제도 도입 추진 방안 수립
- ’13 : PMO도입 관련「전자정부법」개정 시행
- ’14 : PMO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수발주 관련 행정규칙 등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수립
- ’15 :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통합정보 제공창구 시범구축
- ’16 : PMO·감리 동시수행에 따른 예산낭비 및 행정비효율 방지,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PMO제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시행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 ‘11.06 :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IT 거버넌스 추진 계획” (국가정보화전략위)
- ‘12.05 : “행정기관 클라우드 사무환경 도입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 ‘12.06 : “범정부 클라우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가정보화전략위)
- ‘13.12 : “클라우드 추진계획“ (국무회의)
- ‘14.02 : “클라우드 추진현황 및 계획”
- ‘14.08~’15.2 : “개방형 기술 기반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ISP 사업 추진
- ‘14.09 :“클라우드 발전계획” 수립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과제 포함
- ‘15.4 : “범정부 클라우드 추진계획” (대통령 서면보고)
- ‘15.6 : “범정부 클라우드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 ‘15.8~’16.3 : “정부지식공유활용기반고도화”(공통기반 구축) 사업추진
- ‘16.11~’17.3 : “정부지식공유활용기반고도화 2차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정부, 공공, 민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화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사 업 명
18. 정보자원관리 지원(정보화)(2039-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9	502
명칭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기반확충	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정보자원관리지원	3,560	2,993	2,993	3,509	3,289	3,289	296	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EA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정보화 투자 효율성 증진과 조직의 성과향상 기여
-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활용·확산 및 정보자원 통합관리, 정보자원 공동활용 촉진 등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체계 강화
-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등의 운영현황 및 투자성과를 분석하여 최적의 운영 효율화 방안 도출
-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조정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관련 중복투자 방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제67조(사전협의),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② 추진경위

-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근거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마련('05년) ※ '전자정부법'에 통합('10년)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성숙도 측정 모델 개발 및 개선('06년 ~)
- 공공부문 EA 성숙도 측정('07년 ~)

※ '07년 2.0 → '08년 2.1 → '09년 2.6 → '10년 2.68 → '11년 2.43 → '12년 2.87→ '13년 3.22 → '14년 3.52 → '15년 3.79

- 공공기관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범정부EA 구축
- 년 1회 범정부차원에서 범정부EA 포털(GEAP)을 통해 각 기관 정보자원 현황정보를 통합·관리('10년~)
- 74개 행정서비스 영역별 현황진단을 통해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방안을 마련, 영역별 시스템연계 계획수립 및 추진('13년~)

- 범정부GEAP 포털 고도화를 통해 개별기관EAMS를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2019년까지 60여개 기관을 통·폐합추진('16년~)
- 3단계 정보기술아키텍처(EA) 기본계획('14~'16년)에 따라 공공부문 EA 활용 및 서비스 연계·통합, 정보자원 성과관리 강화 추진
- 범정부 정보화 투자관리체계 개선(정보통신기반효율화 과제) 추진('11년~)
  · 국내외 정보화 투자관리 환경 및 사례, 투자예산 구조 분석 등 국가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 추진(기재부 및 국회 요구)
- 지자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영('01~)
-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로 확대('11년~)
- 범정부 EA포털 및 사전협의 시스템 통합 운영('15년 ~)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 개정('15.12월)
  · 정보시스템 일몰제 도입, 기관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계획 수립, 행안부의 기관별 성과측정결과 점검 및 이행 권고 등 추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1,400여개 사용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행정안전부), 출연(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 수혜자 : 1,400여개 사용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 기획재정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화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사 업 명
19.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재량, 계속, 정보화)(2040-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0	501
명칭	전자정부	미래정보화추진(정보화)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3,047	3,382	3,382	3,582	3,356	3,356	△26	△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스마트워크 확산을 통한 공공부문의 일과 삶의 균형 달성,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마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행정비효율을 극복하고 업무 연속성 제공을 통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혁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전자적 업무수행 등),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② 추진경위

- '09.12. : 「스마트오피스 추진계획(안)」,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10.7. :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전략」 보고
- '10.11. : '스마트워크센터' 2개소 구축(도봉・분당) 및 시범운영
- '11.12. : '스마트워크센터' 7개소(서초・부천・수원・잠실・구로・인천・일산) 구축・운영
- '12.11. : 세종청사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 '12.11. : 스마트워크센터 능률적 이용가이드 및 운영지침 제정
- '13.10. : 국회, 과천청사, 서울청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4개소 구축
- '14.4. : 인천센터 통합 및 일산센터 이전
- '14.6. : 세종2, 서울3 스마트워크센터 2개소 개소
- '14.12. : 대전청사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 '15.12. :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 '16.03. :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민간에 센터 영상회의실 개방
- '16.12. : 제2회 대한민국 스마트워크 대상 개최(미래부·고용부 합동)
- '17.9. : 시·도청 및 수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스마트워크센터 18개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화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사 업 명
20.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2041-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1	502
명칭	전자정부	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	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O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행정정보화지원및 관리조정	4,497	4,899	4,899	4,829	4,316	4,316	△583	△1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지원 정보화사업관리 전문기관 운영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정보화 지원
- 전자정부서비스 연계통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IT 기반의 전문기술지원 체계를 강화
-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개발 및 시의성 있는 지역정보화 발전과제 발굴 연구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정보화사업 전문기술지원>

-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국가지원정보화사업관리 운영지원>

-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 추진>

- 전자정부법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분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② 추진경위

<전문기술지원>

- '07년 : 보건복지부 정보화사업 진단 및 컨설팅 실시(국무총리 지시)
- '09년 : IT아웃소싱 관리 업무매뉴얼 개발,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한 전문기술지원, 국방원가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 '15년 : 중소IT기업 지원을 위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표준방법론 실증 모델 연구 등
- '16년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UX) 진단모델 및 적용가이드 개발

<국가지원정보화사업관리 운영지원>

- '05년 ~ : 국가지원 정보화사업 지원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 추진>

- '02~'05년 : 행정기관 웹사이트 진단·평가(정부업무평가기본법)
- '06~'09년 : 행정기관 웹사이트 진단·컨설팅(기관별 평가 제외)
- '10~'12년 : 행정기관 웹사이트 진단·점검(서비스 품질관리 중점)
- '13~'14년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 및 서비스진단
- '15년 ~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현황조사 등 이용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행정기관 및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및 전자정부법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사 업 명
21.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추진체계 운영(2043-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3	500
명칭	전자정부	차세대 전자정부 전략계획 수립추진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추진체계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추진체계 운영	-	-	-	-	630	630	63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공지능(AI), ICBM 등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지능형 전자정부 모델과 발전 전략 수립
- 급속한 기술 환경 변화와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법·제도 등 방안 연구
-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예기치 못한 주요 이슈 및 트랜드에 대한 연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 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 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 **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 전자정부법 제48조(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 **제48조(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할 때 기존의 조직구성, 인력배치 및 업무절차 등을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의 범위가 둘 이상의 행정기관등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의 소관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수립·공표('16.4월)
-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신설 및 추진('16.4월)
- 전자정부 2020 실행계획 마련 및 추진('16.9월)
- 전자정부의 날(6.24.) 제정 추진 중('17.1월)
- 지능형정부 기본계획안 마련('17.3월)
- (대통령 공약 5-3-5) 정부 업무의 지능화 및 효율화를 통한 국민을 섬기는 스마트한 정부행정 실현('17.5월)
- (국정과제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17.7월)
  (실천과제 8-5) 정부업무 지능화로 스마트한 정부행정 구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화진흥원	100%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 전자정부법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사 업 명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정보화)(1934-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4	500
명칭	정부혁신조직	개인정보보호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정보화)	2,106	2,148	2,148	2,018	2,006	2,006	△142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개인정보보호 정책·제도·법령의 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헌법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시 시정권고 조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불법수집·유출·도용 등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② 추진경위

- 2011. 3. 29.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및 위원회 출범
- 2015. 7. 2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 업 명
23.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1934-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0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934	502
명칭	정부혁신조직	개인정보보호강화	개인정보유출및오남용방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정보화)	8,399	7,591	7,591	8,594	8,594	8,594	1,003	1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운영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대처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화 사회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규칙

-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유출통지 신고제 운영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있다.

-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정기 조사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I-PIN 및 My-PIN 서비스 제공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운영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정책연구 및 제도 개선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12.4.20, 국가정책조정회의)> 추진
o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만 주민번호 수집·이용 허용
o 주민번호 수집 허용 법령 및 민원서식, 민간서식 등 일제 정비
※「주민번호 수집 심의위원회」구성('12~'13년)하여 주민번호 필요성 등 심의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적용 및 확산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

>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운영

>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 : 6번(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② 추진경위
- 대통령공약사항(2008.3. 안전하고 따뜻한 디지털 KOREA 구현)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2008.3)
- 정보보호 5개년 종합계획 수립(2008.5)
-「개인정보 보호법」국회 제출(2008. 11)
-「주민번호보호 종합대책」수립·추진(2009. 7)
- 11년 개인정보보호 특별대책 마련 및 추진(2011. 2)
-「개인정보 보호법」공포(2011.3.29) 및 시행(2011.9.30)
-「12년도~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수립(2012.1)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마련・시행(2012.4, 행안부・방통위・금융위 합동)
-「개인정보 보호법」일부 개정안 공포(2013.8.6,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15년도~17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수립(2014.1)
- 경제혁신3개년 계획에「개인정보보호 강화」과제 포함(2014.3.5)
-「개인정보 보호법」일부 개정안 공포(2014.3.24, 주민번호 암호화조치 의무화)
- 범정부 TF를 통해「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수립・발표(2014.7.31.)
-「개인정보 보호법」일부 개정안 공포(2015.7.24.)
-「개인정보 보호법」일부 개정안 공포(2016.3, 고유식별번호 안전성 확보 조치 정기 조사 등)

-「개인정보 보호법」일부 개정안 공포(2016.3,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일부 개정안 시행(2017.3,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일부 개정안 공포(2017.4, 서면 동의서 작성 시 형식적 동의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위탁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출연(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 수혜자 : 380만 개인정보처리자 및 전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인터넷진흥원	64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6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사 업 명
24. 개인정보 보호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1934-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4	503
명칭	정부혁신조직	개인정보보호강화	개인정보 보호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개인정보 보호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104)	482	482	782	782	782	300	62.2

* 2016년 예산 104백만원은 개인정보유출및오남용방지 예산 중 개인정보의안전한국외이전환경조성 예산임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APEC의 CBPR 가입, EU GDPR 제정(2018.5월 시행), 러시아·중국의 데이터 국지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이슈 대응
- 정부 주도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민간 협・단체 등과 협치를 통하여 추진하고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이용 활성화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증진을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제13조, 제14조

-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 제1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정책연구 및 자율규제 지원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법 시행령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2011. 3.29.)
- 대통령공약사항(2008.3, 안전하고 따뜻한 디지털 KOREA 구현)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2008.3, 행정안전부)
- 준용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2008.5, 행정안전부)

- 정보보호 5개년 종합계획(2008.5,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국회제출(2008.11, 행정안전부)
- 11년 개인정보보호 특별대책 마련 및 추진(2011.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공포(2011.3.29) 및 시행(2011.9.30.)
-「12년도~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수립(2012.1)
-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으로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신설(2015.10)**
- 행정안전부 2016년 주요정책과제의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 중 '민·관 협업을 통한 민간자율규제 체계 마련' 과제가 포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6.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개인정보 보호 업무처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00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지방자치분권실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불우소외계층격려 ····· 176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 ····· 178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 등 지원 ····· 180
4. 지자체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 182
5. 주민등록제도 개선 및 운영 ····· 187
6. 공직선거 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 189
7.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정보화) ····· 191
8.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운영(정보화) ····· 193
9. 자원봉사1365시스템 운영(정보화) ····· 195
10.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정보화) ····· 198
11.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201
12. 지자체 경쟁력 지원 ····· 204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207
14. 자원봉사활성화지원 ····· 209
15.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 211
16. 공무원단체 건전 육성 ····· 214
17. 행정・현장 종사자 지원 ····· 216
18.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 ····· 218

사 업 명
1. 불우소외계층격려(7011-29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	010	016
명칭			지방행정정책관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96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불우소외계층격려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불우소외계층격려	2,495	2,350	2,350	2,252	2,252	1,952	△398	△17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격려로 매년 연말에 대통령 명의의 선물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 정부 차원의 불우계층 격려 사업

- '81년부터 매년 연말에 불우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님 명의의 선물 지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81년~)
- 사업규모 : 약 83,000명 * 23,500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차상위계층 등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불우소외계층으로 지원이 절실한 가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지방자치분권	지자체역량강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방자치발전위원회(총액)	2,228	2,097	2,097	2,097	1,713	2,313	216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주민이 행복해지도록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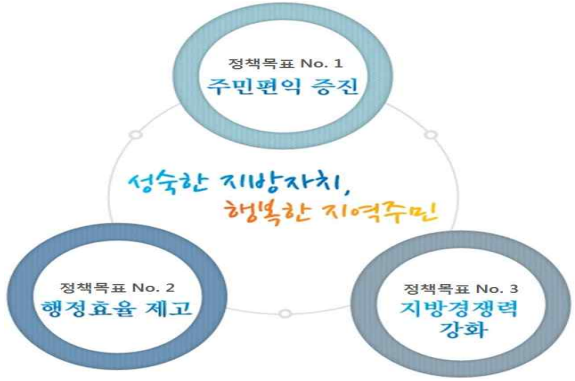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4조

② 추진경위

- '13. 5. 28.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 '13. 9. 13.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 '13. 10. 23. :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및 제1차 위원회 회의 개최
- '14. 12. 8.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확정
- '15. 3. 20. / '16. 2.19. : 지방자치발전 연도별('15, '16) 시행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 ~ 2018년(5년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 등 지원(11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일반행정	010	013
명칭					일반 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 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2
명칭	지방자치분권	지자체역량강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 등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 등 지원	2,241	2,329	2,329	2,550	2,529	2,529	200	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와 지방의 상생·협력 차원의 지방행정 및 자치제도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 및 정책개발, 연구·조사활동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제2항*

*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과 국가와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자치제도 연구 및 전체 지방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개발 연구 추진 필요성
- 수탁용역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 연구 사업에 집중, 질 높은 정책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 지방행정연구 정책개발의 안정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출연금"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성 강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이하 육성법)」에 국가예산 지원근거를 마련, '07년부터 연구원 운영비 및 정책개발연구 등을 위해 자본 보조

※ 출연금 지원 : '13년 23.4억원, '14년 23.4억원, '15년 21억원, '16년 22.4억원, '17년 23.3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업 수혜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2항

사 업 명
4. 지자체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11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010	013
명칭					일반 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 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4
명칭	지방자치분권	지자체 역량강화	지자체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자체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60	436	436	760	569	569	134	3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가) 지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 지자체별 기구·인력·인건비 운용의 효율성 분석·진단을 실시하여, 주민 서비스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운용 지원

- 기구·정원의 관리운영 상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조직 효율성이 낮은 지자체를 진단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부진단 실시 토대 마련
-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석·진단을 통해, 상시적이고 항구적인 지자체 조직관리 효율화 지원의 기재로 정착 도모

나) 지자체 균형인사정책 등 인사혁신 지원

○ 여성·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대표성 확대 지원

- 시간선택제공무원 확대 및 전환 등 일자리 창출 추진
- 육아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
- 지방인사혁신을 위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제도개선 추진

다)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운영

○ 지방간부공무원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관리자로서의 역량, 자질 등을 평가하여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

- 지방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운영
-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위원 양성
- 역량평가 신규실행과제 개발 및 모의테스트 운영

2) 사업내용

가) 지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4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5조 등

② 추진경위

- ‘05년 : 지자체 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도입 결정시, 전 자치단체 조직운영 상황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조직평가·진단제 도입
- ’07년 :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 기존의 조직평가·진단제도를 컨설팅 중심의 분석·

진단제도로 개선
- '08년 : 조직분석 진단 기본모델 개발
- '09년 :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하는 총액인건비 모델 재개발
- '10년 : 지자체 조직분석 진단 연구용역 실시
- '17년 : 지자체 조직분석·진단 5개년 계획에 따른 진단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25개 지자체 (광역 3, 기초 2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나) 지자체 균형인사정책 등 인사혁신 지원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1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51조의4, 제51조의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② 추진경위
- '98. 2월,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로 공직분야 여성정책 추진
- '99. 4월, 여성공무원 발전기본계획 수립
- '99.12월,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점검) 실시(매년)
- '02.10월,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수립
- '04. 7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마련
- '07. 2월, 제2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수립
  ※ '07년부터 시도 합동평가 및 시군구 점검 실시
- '07.12월, 지방자치단체 대체인력 운영지침 마련
- '08. 6월, 지방자치단체 여성·장애인 등 균형인사 통합지침 시행
- '08.12월,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 개정
- '09. 2월,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관련 균형인사 운영지침 개정
- '10. 1월,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으로 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시행
- '11. 5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요건 확대(만6세→만8세)

- '11. 7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을 균형인사 운영지침 반영
- '12. 2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 포함
- '12. 3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경력경쟁임용(일반직) 근거 마련 및 '기능인재 추천제' 도입
- '12. 9월, 제3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12~'16) 수립
- '13. 1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3차 연장시행('13~'17)
- '14. 1월, 대체인력 관리제도 개선, 사회복지인력풀 설치단위 확대 등 관련 균형인사 운영지침 개정
- '15. 11월,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제 도입·실시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 '16. 2월,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관리 문화 확산(대통령 지시)
- '16. 4월, 2016년 지방인사혁신 중점추진과제 보고
- '16. 4월 「지방인사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4.27. 행안부 훈령)
- '17. 3월,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17.~'21.) 수립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98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자치단체 여성·장애인·시간선택제·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기술계 고졸 등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다)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운영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5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2015.11.18. 신설)

② 추진경위
- '14. 10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강화 관련 장관 지시
- '15. 1월, 지방간부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실시관련 연두업무보고
- '15. 5~11월, 지방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 평가실행과제개발 2개 세트 8개
- '15.1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신설<'16.5 시행>)
- '16.7월, 지방인사제도 혁신 추진방안 수립

※ 평가센터: 지방인사혁신추진단, 교육센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16.8월, 지방인사혁신 추진계획 수립

※ '16년 말 시·도 역량평가 도입현황

시·도	대 상	도입시기	'16년 평가인원	운영형태	인사고과 반영
서울	3급승진후보자	2008년	18명	인사혁신처위탁	반영(PASS제)
	5급승진후보자		431명	자체운영	반영(30%)
부산	3~4급 승진후보자	2016년	207명	민간위탁	반영(PASS제)
대구	5급승진후보자	2015년	200명	자체운영	반영(PASS제)
경기	4급승진후보자	2008년	48명	민간위탁	참고자료
충남	3~4급 승진후보자	2014년	72명	자체운영	반영(PASS제)

※ 기초단체: 충남 당진시('16), 5급 승진대상자(40명) (충남 위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5. 주민등록제도 개선 및 운영(1131-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15
명칭	지방행정	지자체 역량강화	주민등록제도 개선 및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주민등록 제도개선 및 운영	(139)	339	339	513	513	513	174	51

※ 2016년 결산 : 사업이관 전「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제도 운영」('16년 155백만원) 내역사업의 결산내역임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 제도운영 및 개선을 통한 민원행정 효율성 제고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민등록법 제3조, 제7조의4, 제7조의5
- 인감증명법 제4조,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② 추진경위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구축 및 전국 온라인 개통('97. 2.)
- 인감시스템(읍면동시스템) 구축('02.~ '03.)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1.12.30.)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12.12.1.)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개시('13.8.2.)
-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발표('14.7.31.)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변경제도 도입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제출('14.12.31.)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시행('15.1.1.~)
- 헌법재판소, 현행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15.12.23.)
-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6.5.19.), 공포('16.5.29.)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16.8.5.)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및 사무국 출범('17.5.30.)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7년~계속, 기타 신규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사 업 명
6. 공직선거 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11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자치분권정책관		일반 · 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0
명칭	지방자치분권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8,608	8,531	8,531	1,086	786	786	△7,745	△9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및 공명선거 구현
- 재·보궐선거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선거제도의 지속적 개선
- 주민(소환)투표 사무의 공정한 관리 및 지원
- 지방의회 선진화 및 자치입법 역량강화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선거법 제37조, 제277조, 정부조직법 제34조, 주민투표법 제27조
-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제172조 등

② 추진경위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공직선거법 제277조)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경비는 국가가 부담(주민투표법 제27조)
- 지방의회 선진화 및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위법성 조례제정시 재의·제소 등 대응(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제172조)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48년 ~ 계속
- 사업규모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주민(소환)투표, 지방의회 역량강화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7.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정보화)(1133-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자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503
명칭	지방자치분권	기반정보관련전산망운영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방행정종합정보 공개시스템 운영	219	219	219	219	219	219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성과 비교·평가를 통해 성과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주민에게 의미 있는 행정정보 제공

○ 온라인 단일창구를 통해 자치단체 행정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동법 26조(평가결과의 공개)
- 주민에 의한 지자체 통제를 위한 평가·공시모델 개발
  (대통령지시, '05.4.30.,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② 추진경위

- 단계별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개시 ('07.1)
  * 1차 구축 : 대국민 홈페이지 구축 ('06.10～'07.5)
  * 2차 구축 : 관리자용 내부 홈페이지 보강 ('07.8～'08.1)
  * 3차 구축 : 지도보기, 지표 추가 등 기능 개선 ('08.6～'08.12)
- 지방행정정보 현행화 및 시스템 유지보수('0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계속
-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219	229	229	219	219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위탁사업)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8.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운영(정보화)(1133-5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일반행정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 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504
명칭	지방자치분권	기반정보 관련 전산망 운영(정보화)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운영(정보화)	189	189	189	219	219	189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부서별 기능과 수행의 목적에 따라 구분·분류하여 전자문서의 분류기준인 단위과제를 제공하는 '지자체 BRM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혁신 및 업무 효율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5조,「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3조

② 추진경위

- '03년 :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선정(정부혁신위)
- '05년 : 정부 BRM 구축 추진(중앙부처 50개에 대한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구축)
- '06년 : 정부 BRM 고도화 사업 추진(시스템 보완 및 지자체 시스템 설계)
- '07년 : 지자체 BRM 시스템 구축(16개 시·도 및 7개 시범 시·군·구 대상)
- '09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위탁 운영 실시
- '17년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27개 지자체 시스템 활용 중('17년 6월 현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사업규모 : 광역·기초 지자체 227개 대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9. 자원봉사1365시스템 운영(정보화)(1135-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500
명칭	지방자치분권	자원봉사1365시스템 운영	자원봉사1365시스템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자원봉사 1365시스템운영	1,737	830	830	830	830	83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원봉사 일감 조회하고,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대국민서비스 제공
- 자원봉사 실적을 타 기관 자원봉사실적시스템(보건복지부 VMS, 여성가족부 DoVOL, 교육부 NEIS) 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실적 확인 편의성 제공
- 대국민 사용자에게 원활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 만족도 제고 및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종합계획 수립(2006.1월)
-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07.1월)
- 통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07.1월) 및 2단계 구축(2009.12월)
- 자원봉사통합포털 구축(2010.5~11월,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
- 나눔포털 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BPR/ISP(2011.3~7월)
-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나눔포털 구축(2011.7~11월)
  · 자원봉사통합포털 기능 이관, 기부모집 업무 전산화, 지자체 회원관리 통합 등
- 나눔정보 연계확대 및 사용자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나눔 포털 고도화사업 (2012.11~2013.2)
-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종료(2014.1월)
  · 주민서비스포털의 기능과 역할은 민원24시스템으로 이관
- 나눔포털(1365자원봉사포털·1365기부포털) 안정적 운영 및 기능·성능개선(2015.12월)
- 1365자원봉사포털 G-클라우드 전환 등 고도화사업 완료(2016)
- 1365자원봉사포털 고도화사업완료에 따른 안정화 작업 추진(2017)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1년~계속
- 사업규모 : 사용자 약 1,100만명, 실인원 459만명, 연인원 3,000만명
  245개 지역자원봉사센터 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국 자원봉사 등록자(1,100만명) 및 전국 자원봉사센터 246개소 등

사 업 명
10.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정보화)(1137-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7	500
명칭	지방행정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	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1,747	1,822	1,822	1,942	1,664	1,664	△158	△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국 3,800여개(17개시도, 226개 시군구, 3,600여개 읍면동)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등록정보화센터 및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인감증명법 제4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인감사무 처리 및 대장관리)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활용)

② 추진경위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구축 및 전국 온라인 개통 : ‘97. 2월
-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 2001년~2002년
- 인감시스템(읍면동시스템) 구축 : 2002년～2003년
- 시군구인감시스템 개발 : ‘03. 9월(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개발완료 : ’04. 12월
- 인감대장DB 통합 구축 : ’07. 12월 ~
- 대통령께서 인감폐지 등 제도개선 검토 지시 (‘09.1.30, 중공교 장·차관 워크숍)
- 인감제도 개편방안 확정 (‘09.7.29, 제15차 국경위 전체회의 대통령보고)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1.12.30.)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구축(‘12.6.1. ~ 12.12.)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12. 12. 1.)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개시(‘13. 8. 2.)
- 재외국민주민등록시스템 구축 : ’14.12월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시행 : ’15.1.1.~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백업 장비 교체 : ’15. 6. 16. ~ 11. 20.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7~계속
- 사업규모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시·도 17, 시·군·구 226, 읍·면·동 3,500여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 국민

사 업 명
11.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8-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재정 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8	501
명칭	지방자치분권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운영(정보화)	829	1,465	1,465	829	829	829	△636	△4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인사 관련 업무 전 분야(인사, 급여, 상시학습, 평정 등)에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자치단체 유관 정보시스템에 인사정보를 제공하는 연계시스템 관리 및 확대를 통한 행정정보 유통체계 구현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방고시 응시자에게 채용정보 검색,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방공무원법」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특성에 맞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대통령령)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추진경위

- 시도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BPR/ISP 사업에 인사분야 포함 추진('02.12～'03.8)
-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선정('03.8)
-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04.3～5)

- 지자체 인사행정정보화 기본계획 수립('04.6)
- 지자체 인사행정정보화 1단계 사업 추진('04.8～'05.6)
- 지자체 인사행정정보화 시도 확산사업 추진('05.9～'06.2)
- 지자체 인사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 추진('05.11～'06.5)
- 지자체 인사행정정보화 3단계 사업 추진('06.5～'06.12)
-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자체별 운영지원('07.1～계속)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 3개 분야(인사,급여,원서접수), 43개 단위업무, 201개 기능, 1,018개 세부기능(메뉴)
  - · 지방공무원 채용 및 수렴면허 등 자격시험 인터넷원서접수 업무대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이용자 약30만명(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이용자 약 29만명(공무원 임용 희망자, 자격취득 희망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12. 지자체 경쟁력 지원(1139-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9	307
명칭	지방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지원	지자체 경쟁력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자체 경쟁력 지원	1,357	1,211	1,211	3,915	3,915	4,015	2,804	2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 및 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 달인 공무원 선발로 지방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사례 확산·공유로 대국민 공직이미지 개선
- 지자체의 성과를 비용-효과 측면에서 측정·진단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 '지방자치의 날(10.29.)' 기념식 및 지방자치 정책홍보관 설치·운영으로 지방자치 우수 정책성과와 지방분권 관련 정책방향 대국민 홍보 및 공유
- 지자체 간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 운영 및 개선
- 지자체 국제화업무의 총괄 조정·지원 부처로서 지자체 국제교류 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합동평가·컨설팅**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29조 및 시행령 제16~18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대통령령)
-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 지방행정의 달인 운영규정(행안부 훈령)
- **생산성지수 측정·활용**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제6조·제18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훈령)
- **지자체 갈등·분쟁 조정 및 해소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6항, 지방자치법 제149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2조
- **지방자치의 날 및 의병의날 기념행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지자체 국제교류 경쟁력 지원 :** 행정안전부 직제 제7조 제3항(지자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 및 제14조 제3항(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1년** : 합동평가(행자부), 개별평가(각 부처)로 평가제도 이원화
- **'06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 **'08년** : 중앙부처 개별평가를 행자부 중심의 통합 합동평가로 일원화
- **'09년** : '09년('08년 실적) 행자부 중심으로 일원화 된 합동평가 최초 실시
- **'10년** :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체계」 개발 및 활용 계획 수립('10.11.)
  국제화재단 해산('09.12.31) 후 행안부(現 행자부)로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지원업무 이관

- '11년 : 합동평가 특성지표 개발 및 부진 지자체 행정컨설팅 최초 실시(5개 시도)
「지자체 생산성대상」 제정 및 제1회 생산성대상 개최(35개 지자체 시상)
제1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28명)
- '12년 : 합동평가 실적검증 강화
지자체 생산성지수체계 고도화 및 제2회 생산성대상 개최(30개 지자체 시상)
제2회 지방행정의 달인선발(22명)
- '13년 : 지자체 생산성지수 측정·환류 및 제3회 생산성대상 개최(27개 지자체 시상)
제3회 지방행정의 달인선발(18명)
제1회 지방자치의 날(10.29.) 기념 지방자치정책박람회 개최(서울 aT 센터)
- '14년 : 지자체 생산성지수 측정·환류 및 제4회 생산성대상 개최(12개 지자체 시상)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자체평가) 컨설팅지원 사업 최초 실시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선발(15명)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대구 EXCO),
- '15년 : 지방행정평가정보(VPS)시스템 3단계 고도화 사업 완료
지자체 생산성지수 측정·환류 및 제5회 생산성대상 개최(16개 지자체 시상)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선발(15명)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시·도 순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개최(강원, 전남, 서울, 전북, 새만금)
- '16년 : 지자체 생산성지수 측정 환류 및 제6회 생산성대상 개최(16개 지자체 시상)
제6회 지방행정의 달인선발(12명)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부산, BEXCO)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개최(지방공기업·중소기업중앙회·충북)
한일 내정관계자 회의 개최('97년 이후 총 21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 개최('07년 이후 총 7회)
- '17년 : (가칭)실시간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 ISP 수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17년도 1,355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지자체,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지원비율 : 50% / 법적근거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사 업 명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1140-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101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0	300
명칭	지방자치분권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9,424	7,062	7,062	11,670	11,670	7,670	608	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과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소요사업비 지원
- 지원사업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에 의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

② 추진경위

- '98. 12. : 정기국회(예결위) 의결에 따라 '99년부터 사업시행
- '00.1.12.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매년 보조금지원

(억원)

'99~'08	'09~'10	'11	'12	'13	'14	'15	'16	'17
1,246	98	99	148	145	133	90	90	64

- '12.7.19 : 공익사업선정위원 해촉요건 명시, 위원의 제척·회피제 도입
- '13.12.25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구축
- '15.5.18 :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신설(선정의 공정성 제고, 영제7조)
- '15.8.18 :「비영리민간단체 시행규칙 제정」(평가·투명성 제고)
- '15.12.24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고도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사업규모 :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 1,613여개(시도 포함 13,833여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교부조건 준수)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비영리민간단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4.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14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6	302
명칭	지방행정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자원봉사활성화지원	8,612	8,863	8,863	9,523	9,561	9,561	698	7.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자원봉사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
- 체계적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진흥기반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8~10조, 제12~15조, 제17~19조, 지방분권특별법 제15조

② 추진경위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참여인원 증가 촉진 등 기반 구축
-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다변화 등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05.8) 및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1
사업비(백만원)	9,658	9,231	9,456	8,851	8,613	8,863
자원봉사자 실인원(천명)	2,163	2,643	3,175	3,747	4,590	4,531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전국의 자원봉사자 및 관련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0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민간자원봉사단체	사업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122번

사 업 명
15.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114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3	300
명칭	지방자치분권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	100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	1,533	1,314	1,314	657	657	657	△657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세계 속의 더 큰 대한민국 건설이란 시대적 사명을 국민과 공유하고 온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유도하여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② 추진경위

- '08.8.15 대통령의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제60주년 경축사

(선진일류국가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이 균형을 이루는 나라, 잘사는 국민・따뜻한 사회・강한 나라, 인류의 모범이 되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 앞으로의 60년은 성숙한 자유의 구현)

- '10.11.24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치사

(뉴새마을 운동을 통해 세계화 시대의 시민문화를 이끄는 범국민적 풀뿌리 정신운동 전개)

- '15.10.8.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축사

(국민운동단체의 일원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범국민의식개혁운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0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10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새마을운동중앙회	10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사 업 명
16. 공무원단체 건전 육성(18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54	지방자치분권실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31	306
명칭	인사관리	공무원단체건전육성	공무원단체건전육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공무원단체건전 육성	199	199	199	260	195	195	△4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각급 행정기관 공무원 노사 불법행위, 불법·부당관행 해소, 공무원단체 동향파악 및 대응,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발굴 확산, 건전 공무원노사관계 제도 연구 등을 통한 상생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반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8. 2. : 공무원 단결권 단계적 보장합의(노사정위원회)
- '05. 1. : 공무원노조법 제정
- '06. 1. : 공무원노조법 시행
- '09.11. : 공무원단체 협력·지원을 위해 2개과 신설(공무원단체과,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
- '11. 2. : 노사관계 안정화로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폐지, 업무를 '공무원단체담당관실'로 이관
- '14.11. : 행안부 지방행정실 공무원단체과로 소속 변경
- '17. 7. ~ 계속 :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공무원단체과로 소속 변경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3~계속
- 사업규모 : 195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사 업 명
17. 행정·현장 종사자 지원(28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04
명칭	재난안전	국민생활현장체계구축	행정·현장종사자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행정·현장 종사자 지원	391	371	371	352	352	△19	△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경찰 등 열악한 일선현장 치안업무 종사자 지원 및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등 민간기여자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 사업 수혜자 : 현장종사자, 일반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8. 지방분권·균형발전 홍보지원(7011-2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명칭	행정안전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홍보지원	-	-	-	-	-	1,000	1,0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핵심 국정과제(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필요성 인식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100대 국정과제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홍보지원에 필요한 경상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지방자치분권실 – 지역발전정책관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새마을운동지원 ····· 269
2.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 271
3. 지역발전활성화 ····· 274
4. 고향희망심기 사업 ····· 278
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 280
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 282
7. 지역공동체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 284
8.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건전성 제고 ····· 287
9.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 289
10. 서민금융복지사업 ····· 291

사 업 명
1. 새마을운동지원(114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2	304
명칭	지방자치분권	새마을운동지원	새마을운동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새마을운동지원	14,289	6,170	6,170	480	480	2,040	△4,130	△6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체계적 유지·보존과 활용을 위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노후화된 새마을연수원 보수를 통해 양질의 교육시설 및 숙박공간 제공, 교육효과 증대 및 글로벌 초청연수를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 등
-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가·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의 날 기념식 등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의2(새마을의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09년 : DB 구축사업 추진(~'13년까지 기존 새마을기록물 DB화)
- '16~'18년 : 새마을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 '17년 : 새마을연수원 노후 교육시설 확충·보수 추진(계속 사업)
- '11~'17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9 ~ 계속
- 사업규모 : 새마을운동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새마을연수원 노후 교육시설 확충·보수 추진,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 중앙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국내외 새마을지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새마을운동중앙회	100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2.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114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2	305
명칭	지방자치분권	새마을운동지원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맞춤형 마을운동 지원사업 (ODA)	2,532	3,548	3,548	3,200	3,018	3,018	△530	△1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 사례인 우리의 새마을 개발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개도국 빈곤퇴치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선진국의 단순 물적지원 중심 ODA방식에서 탈피, 주민 참여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수원국의 자립역량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등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②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새마을금고법」 제3조(국가등의 협력 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7. 1월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아프리카 순방시 말씀(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워볼 것을 권유)
- '08. 6월 : 대통령의 제8차 ASEM 재무장관 회의시 말씀(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과 같은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
- '10. 10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새마을운동 ODA 사업 모델 발굴
- '11. 5월 : 국무총리 주재 새마을운동 ODA T/F 구성, 중점 협력국 지정 및 기관 간 사업협업

- '14. 3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계획」마련, 행자부·외교부를 사업 주관부서로 의결
- '15. 9월 : UN개발총회, 대통령 '새마을 고위급 특별행사' 말씀(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겠음)
- '15. 11월 : 캄보디아, 우간다 정부와 새마을금고 지역개발협력을 위한 MOU 체결
- '16. 5월 :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 의결(제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새마을운동 ODA 사업수행 기관 간 체계적 역할 분담체계 마련
- '16. 5월 :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시 우간다와 새마을금고 이행협약 체결
- '17. 6월 : 행안부는 새마을 ODA를 수원국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토록 결정(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사업규모
  · (초청연수) 개도국 49개국 공무원 및 현지 마을주민 등 430여명 대상 국내 초청교육을 통하여 새마을지도자 육성
  · (시범마을) '17년 10개국 39개 마을 대상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 자립기반 구축 지원
  · (마스터플랜) 새마을운동 확산도 제고를 위한 국가별 맞춤형 새마을운동 확산전략 수립(10개국)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사)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세계화재단
- 사업 수혜자 : 개도국 주민 등(초청교육생, 시범사업 대상지역 주민 등)이 직접 수혜자이며, 현지사업 파급효과 확산시 인근지역 마을주민 또는 수원국 정부관계자 등 포함 가능. 또한 간접적으로는 새마을운동 확산을 통한 국격향상 및 국가브랜드 제고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볼 수 있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새마을운동중앙회	100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새마을세계화재단	100	

사 업 명
3.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 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3
명칭	지역발전	지역발전지원	지역발전활성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역발전활성화	2,694	2,015	2,015	1,635	1,060	1,060	△955	△4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응,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기반 구축 및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추진
- 옥외광고 산업 진흥 기반 마련 및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도모
- 온천자원 관측·정보체계 구축·운영, 온천산업 활성화 및 온천제도 운영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중화장실법」 제4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구 등의 책무)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온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추진경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 ‘04.1.29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제7129호)
- ‘04.7.29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
- ‘05. 1 :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시작
- ‘04 ~’10 :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추진
- ‘08 ~’10 : 저개발국 화장실 개선 보급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지원(세화협)
- ‘11.4. 4 :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및 중수도시범사업지원(16개소)
- ‘12.1 :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및 중수도시범사업지원(50개소)
- ‘13.1 :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 ‘14.1 :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간판문화 선진화>

- ‘07년 아름다운 간판 원년 선포(‘07.1.5)
  ※ 5개 기관(행정안전부 희망제작소·SBS·농협중앙회·새마을금고) 단체협약 체결
- ‘07년~’08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35개 지역)
- ‘09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결과 총 526만개 중 53% 281만개 불법
- ‘10년 ‘지역 공공디자인 선진화 추진 기본계획‘ 마련

- ‘11년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10개소)
- ‘12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선정(16개소)
- ‘13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선정(26개소)
- ‘14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선정(22개소)
- ‘15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선정(24개소)
- ‘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선정(20개소)
- ‘17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선정(18개소)

<자전거인프라 구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95. 1)
- ‘녹색뉴딜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선정(’09.1)
-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추진(’10.6)
-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정비방안 마련(’13.12)
  * (당초) ’14～’19 1,147km, 2,092억원 → (변경) ’14～’15 603km, 500억원

<살기좋은 생활공간 여건 조성>

- ‘15. 7. : 살기좋은 생활공간 사업 추진계획 보고
- ‘15. 9. 7 : 대상자 선정(306단체/18,352명 참여)
- ‘15.10.30 : 대상자 추가 선정(378단체/26,142명)
- ‘16.10.30 : 대상자 추가 선정(4,600단체/190,000명)

<온천산업 활성화>

- ’81. 6. : 온천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81.6.1.시행)
- ’96. 7. : 보양온천 지정 근거 마련(’96.7.1.시행)
  ※ 보양온천 지정현황 : 총 9개소(조건부 승인 : 3개소, 2016.6.30.현재)
- ’07.~ : 온천 관련기관 설립 및 등록
  ※ 온천협회(’07.7.), 온천학회(’08.12.), 온천전문검사기관(’00년～, 총10개소)
- ’07.~ :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07년~계속, ’17년 개최지: 부산 동래)
- ’10. 8. : 온천도시 지정 근거 마련 및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10.8.5.시행)
  ※ 2013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지방자치단체 계획 포함)
- ’11.~ : 온천자원관측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11년~계속)
  ※ 총 47개소(’11년: 3, ’12년: 10, ’13년: 15, ’14년: 10, ’15년: 7, ’16년: 2)
- ’16.~ : 온천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표 개발(’16년)
  ※ 성과 측정지표 변경(온천이용자 증가율 → 온천이용자 만족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 고향희망심기 사업(1231-3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 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23
명칭	지역발전	지역발전지원	고향희망심기사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고향희망심기 사업	-	700	700	800	500	500	△200	△2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정서상 특별한 애착이 있는 '고향'을 매개로 고향방문·봉사·기부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

2) 사업내용

□ 추진경위

- 고향희망심기 사업 추진 제안(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행자부) : '15.10월
- 대통령 연두업무 보고 : '16.1월
- 제20차 지역발전위원회 안건보고 : '16.3월
- 고향희망심기사업 추진계획 및 매뉴얼 지자체 배포 : '16.4월
- 고향희망심기사업 업무 협약 체결(행자부, 지역위, KBS등) : '16.5월
- 지자체별 시범사업 추진 : '16.5월~10월
- 고향희망심기 중점추진 10개 지자체 선정 : '16.12월
- 고향희망심기 홍보 용역 : '17.3월~9월
- 청년 지역활동 컨설팅 용역 : '17.3월~11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7년~
- 사업규모 : 고향희망심기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 홍보, 교육 등 연 1,5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기초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사 업 명
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12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0
명칭	지역발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41,000	56,028	56,028	51,052	47,963	47,963	△8,065	△1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 촉진 및 이전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적근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② 추진경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04.12.3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05.4.1.)
- 평택지역개발계획 확정('05.12.8.)
- 문화·복지시설 등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1차 변경('15.1.5.)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6～'20년
- 사업규모 : 11건, 6,447억원(국비 5,538, 지방비 722, 공공 187)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보조율 100%)
- 사업시행주체 : 평택시
- 사업 수혜자 :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평택시	10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사 업 명
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12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0
명칭	지역발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토지) 평균 68% (도로) 평균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43,300	130,214	130,214	83,200	83,200	94,425	△35,789	△2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원
-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주민 등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촉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적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② 추진경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06.3.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06.9.4.)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확정('08.1.15.)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1차 수정('09.2.2.)

※ 행안부 지원규모 확정 : 주변지역 도로사업 9,007억원, 반환공여구역 토지 매입비 1조 3,442억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22년
- 사업규모 :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216건, 반환기지 개발 지원 18개 기지
  12조 5,331억원(국비 2조 6,751, 지방비 3조 5,436, 민자등 6조 3,144)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도 및 시·군·구	50%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및 제34조의2
	평균 68% (반환기지 부지매입비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

사 업 명
7. 지역공동체기반조성 및 역량강화(12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300
명칭	지역발전	지역공동체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지역공동체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역공동체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230	730	730	1,346	1,346	1,346	616	8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의 편중, 사회양극화, 주민 갈등 심화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필요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의사결정으로 성숙한 자치 실현 및 국민행복 구현
- 공동체를 매개로 신뢰·연대를 통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국가발전의 신동력 창출
- 읍면동 주민자치회 성공모델의 전국 확산·지원, 행정구역 경계조정 제도의 합리적·효율적 개선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 및 주민 불편 해소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4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 최근 지방자치가 생활자치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지역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움직임이 활발
- 각 부처 및 지자체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방향성과 목적의식이 미흡한 사례가 많은 실정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공론의 장과 제도 개선 등 필요
- 읍면동 행정의 의사결정 및 집행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생활자치 구현

○ 경과

- '13년 국정과제로 "풀뿌리 운동방식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제도적 정착 추진" 선정
- 마을발전사업 추진매뉴얼 지자체 의견 수렴 : '13. 4 ~ 5
- 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 정립 및 지자체 배포 : '13. 6 ~ 8
- 공동체길라잡이 책자 발간·배포 : '15. 12
-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개발, 설문조사 및 세부진단실시 : '15.12~
- 공동체 지역네트워크 포럼 개최('16. 4월, 6월)
- 마을공동체 가이드라인(안) 마련 : '16. 6월
-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역 선정 및 추진 : '13. 7. ~
-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역 공모 및 선정·추진 : '13. 5 ~
- 행정안전부, 지방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공동으로 지방자치 미래비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선포 : '15. 10. 29
- 복지허브화 30개 선도 시군구(33개 읍면동) 선정 : '16. 2.25
- '16년 복지허브화 확산을 위한 624개 읍면동 최종 선정 :'16. 6.1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주민(지역공동체 활동 주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8.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건전성 제고(12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 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236	300
명칭	지방재정경제	새마을금고 지원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건전성 제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건전성 제고	63	100	100	95	95	95	△5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새마을금고 및 지방행정공제회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실시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새마을금고법 제3조(국가 등의 협력의무), 67조, 74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7조

② 추진경위

- 국회, 여론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리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요구에 따라 새마을금고지원단에서 지역금융지원과('15.10.15)로 직제 개편 및 인력 확충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관리·감독 업무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지역금융지원과로 이관('15.10.15)됨에 따라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해 우리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하여 건전성 제고 도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새마을금고, 행정공제회 회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9.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238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8	지방자치분권실	-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382	300
명칭	재난안전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6,429	5,775	5,775	5,938	5,893	7,621	1,846	3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북한의 군사도발에 노출되어 있는 서해 5도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8조 : 국가는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가능

② 추진경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정('10.12.2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11.1.28)

-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심의·확정('01.6.22)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1～'20년
- 사업규모 : 4개 사업, 1,449억원(국비 1,021, 지방비 255, 공공 173)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보조율 80%)
- 사업시행주체 : 옹진군
- 사업 수혜자 :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옹진군	80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 8조

사 업 명
10. 서민금융복지센터(1236-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6	303
명칭	지역발전	새마을금고지원	서민금융복지센터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서민금융복지센터	-	-	-	599	599	300	3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불법 사금융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서민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담 서비스의 지자체 확산으로 서민의 재무건전성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2항

② 추진배경

○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불법사금융 등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필요

- 특히, 인구과소지역·중소도시 등은 금융상담에서 소외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지역단위 서민금융 상담사업의 전국 확산 필요

*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2개소), 경기도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7개소)

⇨ 가계부채에 따른 한계가구를 보호하고 소상공인 등 서민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서민금융 컨설팅의 지자체 확산 체계 마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방법 : 지역형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 사업기간 : '18년부터 3년간 1차사업 시행 ※ 1차 사업후 평가를 통한 추가 지원여부 검토
- 사업규모 : 2개 광역 도(道)단위
- 상담인력 : 도(道)단위별 상담사 10명 내외 배치
- 사업기능 : 채무조정, 재무설계, 복지연계 등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광역 도(道)
- 사업 수혜자 : 신용등급 중·하위 등급자 등 금융취약계층
- 보조 지원 비율 : 국비 50% : 지방비 50%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광역 도(道)	50	

지방재정경제실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 246
2.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249
3.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 253
4.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 256
5.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 ····· 259
6. 지방공기업경영평가 ····· 261
7.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 ····· 264
8.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 267
9. 지역경제활성화 ····· 272

사 업 명
1.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13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0
명칭	지방재정경제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615	630	630	830	620	620	△10	△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자치단체별 재정상태와 건전재정 운용노력을 분석·평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 지방재정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 자치단체별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의 분석·연구를 통한 지방재정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 검토·추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 활성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 및 낭비 방지 등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재정법 제54조～제57조, 동법시행령 제64조～제66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

② 추진경위

< 지방재정 분석 및 지방재정 위기관리 >

- '03. 7. 재정분석제도 혁신계획 재정세제로드맵에 포함(정부혁신위)
- '04. 5. 지방재정분석제도 혁신계획 도입방침 결정
- '04. 7. 지방재정분석 평가단 구성 및 '04년 시범평가 실시
- '04.12. '05 지방재정분석 전면실시계획 수립·확정

※ 10개의 분석지표를 30개 분석지표로 확대

※ 지방재정분석은 '98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사업예산 배정은 '05년부터임

- '10. 7. 자치단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운영계획 확정

※ '10. 7.20 국무회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보고

- '11. 9. 재정위기단체 지정 관련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 ’16. 6.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관련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체계적 관리 >

- ’14.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14. 7. 조직·인사, 예산·회계 등 운영 공통 지침 마련
- ’15. 2. 공통지침 및 표준모델(안) 지자체 통보
- ’16.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제정·통보
- ’16. 5. 무분별한 추가 출자 및 출연 방지 방안 마련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

- ’05.8. 법적 근거 마련(지방재정법)
- ’10.10. 표준조례안 지자체 통보
- ’11.9.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의무화
- ’13.8. 운영상황 공개(매년 8월 재정공시)
- ’14.11. 의견수렴 결과 지방의회 제출 의무화
- ‘15.5. 지자체별 제도운영에 대해 평가하도록 규정(행정자치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전 지방자치단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13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회계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2	500
명칭	지방재정경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2,029	2,725	2,725	3,470	3,470	3,470	745	2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예산, 계약, 지출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 업무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등 지방재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개방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고도화 작업 및 유지보수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방재정법」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제60조의2(통합공시)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지방출자출연법」제33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지방출자출연법>>
제33조(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75조의2,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통합공시), 제64조, 제66조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직영기업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지방직영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직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② 추진경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03. 8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전자정부로드맵』의 중점관리과제
- '03.12~'04. 9 지방재정정보화를 위한 BPR/ISP 수립
- '05. 5~'06.12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발
- '06. 7~'07. 7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확산·보급사업
- '07. 7~'08.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기능추가
- '07. 5~'11.10 지방재정통합DB구축 1~4단계사업
- '08. 1~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14.11~'15. 3 지방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BPR/ISP
- '15. 7~'15.12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 '06. 9월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 '06.11~'07.10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개발
- '07.12월~ 시스템 대국민 공개
- '08. 3~5월 시스템 고도화 추진
- '08. 1~현재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 '17. 2~12월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사업규모 :

(단위 : 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2,449	2,717	2,132	2,030	2,725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행정안전부

사 업 명
3.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1333-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	010	013
명칭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500
명칭	지방재정경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4,477	4,002	4,002	3,645	3,568	3,568	△434	△1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전국 공통의 대국민 납세편의 서비스 (전자신고·납부, 전자송달, 제증명 발급 등) 제공

  * 위택스, 과세자료 통합관리, 종합부동산세, 지자체 표준지방세 등 지방세 관계 정보시스템

- 또한, 중앙-지방간 과세자료의 공유로 조세 부과·징수, 공공기관의 복지급여 자격심사, 각종 통계제공 등 해당 기관 핵심 사무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 략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23조(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 ‘04. 6 지방세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 ‘05. 1~ ’07. 1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급
- ▪ ‘06. 4~ ’09. 12 위택스 구축 및 자치단체 보급
- ▪ ‘12. 1 지방세 온라인 전면수납 시행

- ▪ ’13. 7 ~ ‘14. 12 간단e 납부시스템 구축
- ▪ ’14. 7 모바일 지방세납부앱 “스마트 위택스” 오픈
- ▪ ’14. 12 지방소득세 독립과세 기능개발
- ▪ ’14. 1 ~ ‘16. 12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1·2·3차 구축
- ▪ ’17. 3 ~ ‘17. 11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수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16개 시·도 및 201개 시군구(서울시는 별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위택스(‘17. 5월말회원 - 655만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4.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13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 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4	300
명칭	지방재정경제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3,899	3,534	3,534	3,350	3,330	3,330	△204	△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및 국민 활용률 제고
- 물류, 금융, 통신 등 민간부문 도로명주소 활용 적극 지원, 자연스럽게 국민 실생활 조기 안착 유도
- 기초구역·지점번호·상세주소 등 위치 서비스 인프라 구축, 위치체계 표준화로 생활 속 안전하고 편리한 길찾기 지원
- 정확한 주소・기초구역・지점번호 정보 등을 반영한 도로명주소 기본도 구축・유지관리 및 안내도 보급 서비스 제공
- 우리나라 주소 체계를 국제표준에 반영, 주소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의 간편한 주소 변경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도로명주소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명주소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② 추진경위

- 도로명주소 사업 도입 결정 ('96. 7,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 도로명주소법 제정 ('06.10), 시행 ('07. 4)
- 도로명주소 시설사업 추진 ('97～'10.10)
  - ・전국 도로명판 300천개, 건물번호판 5,623천개, 지역안내판 1.8천개
-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실시 ('10.10.27～11.30)
  - ・건물 등의 점유자 2,600만명 대상, 주민의견 수렴·보완
-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 완료
  - ・'11.3.26.～6.30. (34.7백만명) / 전국 시군구(230개)에서 일제고지
  - ・방문고지 (3.26.～5.20.) → 서면고지 (5.21.～6.12.) → 공시송달 (6.13.～6.30.)
- 도로명주소 사용 대비, 단계적·전략적 홍보 및 교육 강화
  - ・지상파 TV・라디오, 전광판, 홈페이지 등 전방위 홍보 지속 실시
- 도로명주소 대국민 안내 및 전국 동시고시('11.7.29)하여 법정주소로 확정
  - ・대국민 예비안내 ('10.10～11월) 및 일제고지 ('11.3～6월) 실시

- 병행사용기간 연장 ('11년 말 → '13년 말) 등「도로명주소법」개정 ('11.8.4)
- 도로명 변경기한 연장(12.31) 등「도로명주소법」시행령 개정 ('11.9.29)
- 국가기초구역, 지점번호의 설정·부여 관리와 상세주소 부여 관리 근거 기준 마련 등 「도로명주소법」시행령 개정 ('11.12.30)
- 공적장부 및 민간 고객정보 도로명주소 전환 추진
  - (공공) 주민등록 등 주요 공적장부(1,093종) 주소전환 완료
  - (민간) 분야별 간담회, 현장방문, MOU체결 등을 통한 주소전환 추진
- '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대비 중앙·지방단위 적극 홍보 추진
- 위치찾기 선진화(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상세주소 부여)사업 본격 추진 ('13년~)
  ※ '12.12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고시 및 시도 지점번호 표기지역 고시
- 상세주소 신청 간소화, 등기촉탁제도 도입 등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5년 말)

○ **(김영삼정부)** 도로명주소 도입 결정('96.7월,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 **(김대중정부)** 자치단체별 시범추진으로 생활주소로 활용
○ **(노무현정부)** 도로명주소법 제정·시행('07.4월)
○ **(이명박정부)**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11.7.29~)
※ 지번주소와 병행사용(~'13.12.31)
○ **(박근혜정부)** '14년부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의무사용
※ 민간부문은 자율 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7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전 국민, 국내·외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5.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13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0
명칭	지방재정경제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	197	450	450	768	377	377	△73	△16.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전문가 참여에 의한 지방회계제도 개선으로 회계제도 운영의 객관성·타당성 제고 및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회계법 제11조(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 지방계약법 제3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35조(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지방회계법 제13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등

② 추진경위

<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운영>

- '14.10.21, 제1기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구성

< 지방계약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2007년부터 개최

< 지방회계전문기관(지방회계통계센터) 및 지방계약민원센터 설치·운영>

- '14.11.29.,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회계 업무 위탁근거 마련
  * 현재 근거법령 : 지방회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15. 3. 4., 지방회계통계센터 설립계획 수립 보고
- '15. 12월, 지방회계통계센터 인력 일부채용
- '16. 2. 16., 지방회계통계센터 및 지방계약민원센터 개소
- '17. 2. 1., 지방회계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계속
- 사업규모 : 전 지방자치단체(243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방회계전문기관 지원		지방회계법 제13조제2항

사 업 명
6. 지방공기업경영평가(13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6	301
명칭	지방재정경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추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852	3,020	3,020	3,020	2,920	2,920	△100	△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한 건전한 지방공기업 육성 및 주민서비스 제고
-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을 통한 부실공기업 경영개선 등 경영합리화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공기업법 】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지방공기업법 개정('02.3.25)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05년부터 경영평가 비용을 국비로 부담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진단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소요비용의 예산지원이 절대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계속
- 사업규모 : 161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지방공사·공단 146개, 직영기업 15개), 6개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예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공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7.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133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0
명칭	지방재정경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조사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조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	932	1,425	1,425	1,425	1,151	1,151	△274	△1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는「지방세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법정사무로서,

- 국민의 세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시가조사와 정밀한 가격검증이 반드시 필요

  * 부동산을 제외한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82,639종

  ※ 토지(표준필지), 주택(표준·공동주택) 가격조사 : 국토교통부

○ 시가조사의 정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11년부터 시가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수행 중이며,

- '16년부터는 지방세 전문기관(지방세연구원)이 사업수행에 필수적으로 참여토록하여 사업의 연속성 확보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0항 신설('16.1.1. 시행)

○ 누수 없이 과세대상 물건을 조사하고, 전 지자체가 이를 수용·활용하여 지역 간, 과세물건 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

- 매년 단계적인 현실화 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결산기준 '14년 3,953억('13년 사업), '15년 5,541억('14년 사업) 세수 추가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세법」제4조 및 「지방세법시행령」제4조

(지방세법 제4조)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 추진경위

○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해 과표의 현실화율이 낮은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전문조사를 실시하되, 경제정책기조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입증대 및 조세 공평성을 확보하는 사업 실시

○ 기타물건의 다종다양한 현황 및 특성을 감안한 전문 가격조사·산정 필요성에 따라 그 동안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해 왔던 시가조사를 '11년부터 가격조사·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용역사업으로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사업규모 : 지방세 과세대상 기타물건* 8만2천여종에 대한 시가조사 및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마련

  * 과세대상 물건 중 토지와 주택(국토교통부 소관)을 제외한 시설물, 선박, 항공기, 어업·광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회원권, 지하자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중앙부처,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8.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1338-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8	300
명칭	지방재정경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136	500	500	818	614	649	149	2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내실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국내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 보다 많은 현장 소통을 통해 납세편의, 조세형평성 제고 등 제도개선 필요

○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사전·사후 평가체계 구축** 필요

-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신설 방지를 위한 사전 예비타당성조사('17년 도입) 외에도 기존 감면 제도의 연장에 대한 객관적 사후 성과평가 필요

※ (필요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효과, 감면존치 여부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의 감면연장을 위한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 결여

※ (국세) '15년부터 신규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 도입('15년 기준, 20건 실시, 예산 17억원)

○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자율 확충 지원** 필요

- 진단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현황파악 및 지방세입 확충 유도 → 국가 전체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

* 우수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미흡자치단체에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영세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지방세 관련 권익 침해·불편 사항 등 해결** 필요

- 전국 자치단체 등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하여, 영세자영업자 체납정지 등 생계가 어려운 서민 등에 대한 지방세 고충 등 해결

※ '06년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임의규정으로 활용 미흡

※ (국세) '99년 도입, 전국 지방청 및 세무서에 의무적 설치 → 권리보호요청제도 및 납세자 권리보호위원회 등 운영하여 국세 관련 납세자 권익 두텁게 보호

- '16년 성공적으로 정착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

※ (전국 총 상담건수) 14,188건('16.6~11월) → 17,681건('17.1~6월), 24.6% 증가
(전국 마을세무사 수) 632명('16.4.) → 1,223명('17.6.), 93% 증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지방세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제6항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2

>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4.5.21. 제정)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15.5.18.)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②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마을세무사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간 장관급 업무협약(MOU)

* 행정자치부 - 한국세무사회 - 자치단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6.2.22.체결

② 추진경위

<지방세 전문가 네트워크 개최>

- 제도개선 토론회·지방세 발전 포럼 개최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 (15년) 총 429개 중 89개 채택, (16년) 총 625개 중 최종 116개 채택, (17년) 총 930개 중 최종 334 채택

- 주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

  ※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위택스앱 개통('14.7월), 위택스 인터넷 납부시간 연장(22:00→23:30)('15.12월), 신용카드 모바일 앱카드 납부서비스 도입('16. 9월), 위택스 신용카드 자동결제 서비스 추진('17.6월), 담배소비세 전자 신고납부 서비스 도입('17.7월)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근거 마련(지특법 제181조, '15.12.29.)

-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시범사업 실시('16. 5~9월)

  ※ 대상 : 「LH 임대주택 사업 관련 모자(母子)형 리츠 및 토지지원 리츠」에 대한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마련 및 고시('17.1.2)

-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수요 조사('17.1월)

- '지방세 특례 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17.3월)

- 지방세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 체결('17.3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17.4.10) 및 연구용역 추진 완료(11월)

- 지방세 특례 사후 심층평가 도입근거마련('17.12.26. 공포), 사후심층평가 운용기준 고시('18.1.2. 시행)

<지방세외수입 분석 진단 운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13. 8. 6.)」 및 동법 시행령 ('14. 5.21.) 제정

- 행정자치부 內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지방세입정보과) 설치('14.4.2.)

- '16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공개 시행 계획 통보('16.6.16.)

- '16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종합보고서 게시('17.1.4.)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근거 마련(「지방세기본법('06.9.1.)」)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기획('15.11.~) 및 기본계획 자치단체 통보('16.2.)

- 마을세무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6.2.22) 및 마을세무사 지원자 모집('16.3.~5.)

- 전국 자치단체에서 마을세무사 대국민 서비스 개시('16.6.1.)

- '16년 마을세무사 운영실적 집계 및 평가('16.12.)

- '17년 마을세무사 운영계획 마련 및 자치단체 통보·시행 ('17.2.)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15년 ~ 계속
- 사업규모 : 지방세 전문가 네트워크 개최(20백),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400백), 지방세외수입 분석 진단 운영(116백),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78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국가 및 243개 지방자치단체 부과·징수부서

사 업 명
9. 지역경제활성화(1349-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 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9	301
명칭	지방재정경제	새마을금고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역경제활성화	0	477	477	784	462	634	△15	△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및 경영대전, 토론회 등을 통해 지자체별 특색있는 경제활성화 정책 발굴 공유 확산 추진, 지역경제 정책 데이터 및 통계 작성 추진
-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물가 모니터링 등 중앙-지방 물가관리 협조체계 구축
- 지자체 규제개혁 자율경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지역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

<지방물가 안정관리>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규제개혁 추진>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ㆍ제20조

② 추진경위

<지역경제 활성화>

- 2008.2월 : 국정과제(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공동 주관)
- 2010.12월 : '11년 업무보고(지역 우수자원의 권리화 지원)
- 2016.1.26 : '16년 업무보고(골목경제진흥 등 작은경제 육성)
- 2016.1.26 : '16년 업무보고(국민수요에 부응하는 지역통계 개발)
- 2017.1.15 : '17년 업무보고(지역경제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통계 산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정책 수립 기반 마련)

<지방물가 안정관리>

- 2011.11월 : 착한가격업소 선정(2,497개)
- 2012.06.14. : '12년도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7,123개)

<지방규제개혁 추진>

- '15년 : 시ㆍ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강원, 전남, 서울, 전북, 새만금)
- '16년 :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개최(지방공기업, 충북지역, 중소기업중앙회, 장관회의 대통령 보고,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지방재정경제실-교부세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보통교부세 ····· 276
2. 지역현안특별교부세 ····· 278
3.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 280
4. 부동산교부세 ····· 282
5.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 284
6. 소방안전교부세 ····· 286

사 업 명
1. 보통교부세 (16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0
명칭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B-A)/A
보통교부세	35,023,661	37,577,539	39,222,628	42,485,450	42,485,450	42,469,616	3,246,988	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자치단체 상호간 재정력 격차 완화 및 세원배분 불균형 보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4조

>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 2. ~ 6. (생략)
>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 3. 삭제
>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 제192호에 의거 "임시지방분여세법"의 제정으로 시행(1951.4.1.)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의 해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교부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사 업 명
2. 지역현안특별교부세(16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0
명칭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역현안특별교부세	433,282	464,877	485,228	525,593	525,593	525,397	40,169	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 6. (생략)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 제192호에 의거 "임시지방분여세법"의 제정으로 시행(1951.4.1.)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의 해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교부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사 업 명
3.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6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1
명칭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08,321	116,219	121,307	131,398	131,398	131,349	10,042	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역점 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 6. (생략)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 제192호에 의거 "임시지방분여세법"의 제정으로 시행(1951.4.1.)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의 해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교부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사 업 명
4. 부동산교부세(16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0
명칭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부동산교부세	1,445,711	1,532,835	1,532,835	1,780,100	1,780,100	1,780,100	247,265	1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 6. (생략)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운영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의 해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교부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사 업 명
5.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64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10	013
명칭			재난관리정책관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4	300
명칭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41,603	581,096	606,535	656,991	656,991	656,747	50,212	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보통교부세 산정 이후 예기치 못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특별 재정 수요에 교부하여 지자체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의 교부)

②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 1962년도
- 지방재정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일정수준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재정부족액을 특정 국세에 결부시켜 재원의 안정화·법정화 도모 필요
- 특히 '재난안전수요'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

< ※ 대통령공약사항 :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 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및 책임 강화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투자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지방자치단체 교부)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6. 소방안전교부세(164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10	013
명칭					일반 · 지방행정	지방행정 · 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45	300
명칭	지방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소방안전교부세	414,700	458,815	458,815	436,720	398,120	417,260	△41,555	△9.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자체 교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4조 2항 5호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② 추진경위

- 지방교부세법을 개정('15.1.1시행)에 따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계속
- 사업규모 :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및 정산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별 교부)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17개 광역자치단체에 교부)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중앙안전상황실 운영 ····· 289

사 업 명
1. 중앙안전상황실 운영(71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일반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0
명칭	재난안전행정지원	재난상황관리	중앙안전상황실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중앙안전상황실 운영	451	1,910	1,910	2,108	2,103	2,103	193	1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효율적 운영으로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피해 최소화

- 통합 상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상황관리시스템 연계
- 지속적인 상황관리시스템 효율적 유지 및 보강으로 대응역량 제고
- 재난관리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상황요원 전문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② 추진경위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구축 >

- '04.3.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 국가기반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 설치 · 운영
- '08.2월 (구)행자부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과 (구)비기위 정부종합상황실 통합
- '10.3월 행안부 · 방재청 통합상황실(중앙재난위기상황실) 구축 · 운영
- '13.3월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중앙안전상황실 설치
- '14.11.19 국가조직법 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출범
  · (구)안행부 및 (구)방재청 상황기능 통합,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설치 · 운영
- '16.9월 국민안전처 세종청사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이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 업 수혜자 :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포함)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특수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 292
2.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기반조성 및 활성화 ····· 295
3.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 · 대형복합재난 대비 ····· 298
4.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 기술개발(R&D)(행안부) ····· 301
5.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사업(R&D)(행안부) ····· 305
6.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R&D) ····· 308
7.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R&D) ····· 311
8.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R&D) ····· 313
9.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R&D) ····· 316

사 업 명
1. 특수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27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특수재난실	일반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5	300
명칭	재난관리	특수재난관리지원	특수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특수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183	2,084	2,084	990	750	750	△1,334	△6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특수재난 분야별 부처 및 민간전문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 대응·대비를 위한 재난정보공유 및 상황인지를 위한 협업체계 고도화 추진

2) 사업내용

○ 특수재난 아카데미 개최, 전문가기동단 운영
○ 권역별 순회교육 및 역량진단 고도화
○ 국가위험성평가 제도 운영 및 고도화
○ 민간 거버넌스 구축(논문공모전)
○ 유해위험물질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4조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부조직법 제34조

>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 제20조(특수재난협력관) ① 특수재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특수재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 1.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 전염병, 원자력안전 사고, 공동구 사고 등(이하 "특수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협업 업무 총괄
> 2. 지방자치단체 특수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지원 및 컨설팅
> 3. 특수재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역량 분석·진단 및 컨설팅
> 4. 특수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재난대응 교육·훈련 지원
> 5.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 6. 특수재난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7.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학회·협회·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8.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훈련·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 9.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수습·복구 활동 지원
> 10. 특수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 11. 지방자치단체 특수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12. 특수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13. 특수재난 관련 수습지원단 구성·운영 및 현장 지원
14. 특수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15. 특수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기술지원

② 추진경위

-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 15개단체 MOU 체결(2016.8.18.)
- 국토부(철도사고)·환경부(화학사고) 대상 특수재난 관리역량 시범진단
- 종사자용 e-러닝 콘텐츠 「특수재난 길라잡이」 개발(16차시) 및 서버 탑재
- 국민안전 동영상 콘텐츠(4편) 개발 및 안전한TV 등 대국민 온라인홍보
- 권역별 특수재난 순회교육 4회 추진(4개권역) 및 전문교육 2회 지원(교육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6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기반조성 및 활성화(2735-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특수재난협력관	일반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5	303
명칭	재난관리	특수재난관리지원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기반조성 및 활성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기반조성 및 활성화	318	527	527	866	418	418	△109	△2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민관협력 위원회 운영

-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시 정부의 힘만으로는 재난대응에 역부족, 민간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민관협력 필요
- 특히,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인명 구조, 이재민 구호 및 긴급 복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 지방의 정례적인 위원회, 전문가 재난현장 조사, 워크숍 개최, 재난긴급대응단 운영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 필요

○ 국내외 민간단체 역량 강화

- 매년 재난안전을 위한 컨퍼런스 및 워크숍을 통해 재난발생시 단체별 역할 분담, 상호지원 등 자원봉사 활동 참여 지원
- 재난 자원봉사 활동 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포상 및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 자원봉사 활동 방향 수립 등에 반영

○ 민간다중이용시설 매뉴얼작성 및 훈련관리

- 정부 재난관리 정책의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안전예방과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민간자원 활용 등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 동법 시행령 제43조의8, 9

② 추진경위

- ‘14.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
  ·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 운영, 재난긴급대응단 운영 등 규정
- ‘14. 1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
- ‘15. 5. 제2기「중앙민관협력위원회」구성 및 전체회의 개최
- ‘15.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15.6.30)
  · 재난긴급대응단 운영에 따른 필요 사항 국민안전처장관 정하도록 신설

- ‘15. 7.「중앙민관협력위원회」운영규정 개정,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정
- ‘15.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 ‘16.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및 기준(고시)제정
- ‘16. 3.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에 관한 권역별 순회교육
- ‘16. 7.~11. 17개 시·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시범훈련 실시
- ‘16. 12.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개선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7~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사 업 명
3.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 · 대형복합재난 대비(2735-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조사지원관	일반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5	304
명칭	재난관리	특수재난관리지원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 대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 대비	151	665	665	960	551	551	△114	△1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등 주요 재난·사고의 객관적인 조사 및 후속조치 점검 등을 통해 유사재난의 재발방지
- 미래 재난환경의 변화 예측, 재난의 복합발생 가능성 분석 및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추진 등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및 주요·재난사고 원인조사 실시 및 개선사항 발굴
- 각 기관에 권고한 개선사항의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유사재난 재발요인 제거
- 주요 재난·사고원인조사기관과의 협업 및 효율적인 원인조사체계 마련
- 미래 재난환경의 변화 예측, 재난의 복합발생 가능성 분석 및 이에 대한 대비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관계기관 협업 추진 및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추진 총괄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9조(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2,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체계적인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③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직원의 파견(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⑦ 재난원인조사단의 권한,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편성·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조사단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② ~ ⑥ 생략
제75조의3(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재난원인조사단은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사한 재난 및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 >
제3조(재난원인조사 대상) 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된 재난 및 사고
2. 재난관리 주관 또는 책임기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재난 및 사고
3.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별 법률에서 재난 및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2.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③ 법 제3조제1호 가 목의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013.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규정 신설
- 2014. 1.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관련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실시
- 2014.1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전담조직 및 미래·대형복합재난 대비를 위한 조직(조사분석관실) 신설
- 2014.12. 매뉴얼준수 여부 평가 및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결과보고 규정 신설
- 2015. 4. 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 관련 전문인력 채용(개방형임기제 4급 3, 5급 3)
- 2015. 6.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관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
- 2017. 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관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 2017. 7.「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제정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5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4.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 기술개발 (R&D)(행안부)(2931-4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조사지원관	일반계정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400
명칭	국민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공간정보기반 실감형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 기술개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공간정보기반 실감형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 기술개발	-	-	-	3,500	3,500	3,500	3,5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필요성) 건축 구조물의 대형화·초고층화 및 지상·지하연계의 복합화에 따른 실내외 공간정보와 안전정보를 결합한 재난관리기술개발 지원 필요
- (목적) 국토부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소방활동정보 생성·활용, 맞춤형 재난상황 모델의 시변정보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현장요원과 국민안전 확보 및 재난안전 신산업 창출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한 재난대비체계 마련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 마련 추진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
  *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의 현장활용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재난관리기술 마련 추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4.12.23. :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3개년 실천전략 수립
- '16. 3.11. :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 '16. 6. 9. : 2016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수립
- '16. 9.29. : 다부처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제12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 '16.12.22. : 다부처 공동기획관련 대국민 공청회 개최
- '17. 3.29. : 다부처공동사업 선정(제14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 '18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대상 선정에서 「공간정보 기반 실감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최종선정

- 협의체 운영실적

구분	일시/장소	주요 안건	참석자
1	'16. 10. 19.	○ 다부처공동사업기획관련 참여부처	국토부 : 방현하 과장, 유승경 사무관

구분	일시/장소	주요 안건	참석자
	(국토교통부 중회의실)	Kick회의 - 다부처 기획과제 목표 설정 논의 - 부처별(국토부, 안전처, 산업부, 문체부) 기획 방향 및 부처별 역할 논의 - 주요 기획 일정 논의	문체부 : 신효심 주무관 산업부 : 한형상 PD 안전처 : 이동호 과장, 김지은 사무관 국방부 : 오형섭 중령 ETRI : 김주완 부장 외 기획담당자 4명
2	'16. 12. 22. (국회 제1회의실)	○ 대국민 공청회 개최 - 다부처공동기획과제 부처별 세부연구내용 종합토론	국토부 : 방현하 과장, 유승경 사무관 산업부 : 한형상 PD 안전처 : 이동호 과장, 김지은 사무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 위원장 장경완 국회의원, 공간정보산업협회장 이명식 회장 등
3	'17. 3. 16 (양재 엘타워)	○ 다부처 공동기획 내용 발표 및 토론	다부처특별위원회 국토부 : 유승경 사무관 안전처 : 이동호 과장 산업부 : 한형상 PD
4	'17. 4. 5. (한강홍수 통제소)	○ 다부처 공동기획 내용 발표 - 공간정보 융복합 기획과제와 다부처 연계방안	국토부 : 김형석 과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최송욱PD, 노선준연구원 외부 자문단 10명
5	'17. 4. 7 (KEIT회의실)	○ 다부처 공동기획 내용 발표 및 토론 - 가상훈련 적용 방향성 검토	산업부 : 한형상PD 가상훈련사업단 자문단 10명
6	'17. 4. 17 (공간정보 산업협회)	○ 다부처 공동기획 내용 발표 및 토론 - 다부처과제 향후 추진 일정 논의	국토부 : 이성해 국장, 김형석 과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최송욱PD, 노선준연구원 민간 및 외부 자문단 5명
7	'17. 4. 26 (미래부 소회의실)	○ '18년도 다부처공동 신규사업 총괄 사업단 구성 협의	국토부 : 유승경 사무관 안전처 : 김지은 사무관 ETRI 김주완 부장
8	'17. 5. 11 (세종시 토즈회의실)	○ '18년도 다부처공동 신규사업 예산 및 사업단 운영방안 검토	국토부 : 유승경 사무관 산업부 : 방규철사무관 안전처 : 김지은 사무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최송욱PD, 노선준연구원 ETRI : 김주완 부장 외 기획담당자 3명

구분	일시/장소	주요 안건	참석자
9	'17. 7. 27 (세종시 토즈회의실)	○ '18년도 다부처공동 신규사업 추진 관련 사업단 운영방안 검토	국토부 : 유승경 사무관 산업부 : 방규철사무관 안전처 : 김지은 사무관 문체부 : 정지홍 PD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최송욱PD, 노선준연구원 ETRI : 김주완 부장 외 기획담당자 2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8년~2021년 (총4년)
- 사업규모 : 2개 연구과제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소방공무원·소방관련 산업체 및 산업단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지원 법적근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기업	5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중소기업	75% 이내	

사 업 명
5.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사업(R&D)(행안부)(2931-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특수재난협력관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401
명칭	국민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사업(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사업	-	-	-	700	700	700	7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필요성)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고도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방역현장의 수요반영, 직접활용을 목표로 한 기술개발 필요
- (목적) 기존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은 기초, 기전, 진단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방역현장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방역체계 향상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조」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조사·연구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수행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0. 8월 :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10.8월 구성)

- 협의체 운영실적

	일시/장소	주요 안건	참석자
1	'10. 12. 23. (달개비)	○제1차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 범부처 사업은 국가 단위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은 부처별 또는 공동사업단이 수행하는 체계로 추진 - 감염병 관련 R&D 추진실태 파악 및 주요 감염병(난치성결핵, 슈퍼박테리아, 원인불명감염질환)의 신규 사업 기획 보고	위원장 외 23인
2	'11. 10. 25. (팔레스호텔)	○제2차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 범부처 공동기획사업(인수공통 예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역할모델 설정필요(예산 및 성과관리방안 등)	위원장 외 17인
		- 제1차 범부처 감염병 국제 심포지움('11.11.1~11.3) 개최 보고	
3	'12. 06. 04. (팔레스호텔)	○제3차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안)('12~'16)" 심의	위원장 외 12인
4	'12. 07. 18. ~ '12. 07. 20. (서면심의)	○제4차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2~'16)" 최종심의 -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극복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착수('12.11월)	위원장 외 20인
5	'13. 07. 17. (한국프레스센터)	○제5차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 감염병 포럼 운영위원 구성 보고 및 '제2회 감염병연구포럼' 개최 계획 보고 - 감염병 재난 대비·관리 분과 신설 건의	위원장 외 16인
6	'14. 10. 15. ~ '14. 10. 21. (서면심의)	○제6차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 4차 사업실적 및 5차 계획(안)검토 - 감염병 재난 대비·관리 분과 신설 및 구성위원 보고	위원장 외 19인
7	'15. 12. 02. (서울가든호텔)	○제7차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 '제2차 국가 감염병 R&D 중장기 추진전략(안)' 추진계획 보고 - 제2기 포럼운영위원회 및 제3기 범부처 추진위원회 구성 보고	위원장 외 19인
8	'16. 03. 21. ~ '16. 03. 25. (서면심의)	○제8차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 "제 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연구개발 추진전략('17~21) 심의	위원장 외 14인
9	'17. 03. 09. ~ '16. 03. 25. (서면심의)	○제9차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 "제 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연구개발 추진전략('17~21) 2017년도 시행계획 심의	위원장 외 19인
10	'17. 04. 28. (프레지던트호텔)	○제10차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 - 국가 감염병 R&D 방역연계 실천방안(안) 심의 - One-health 항생제 내성균 관리 다부처 기획 - 사회문제해결형 R&D "감염병 조기감시 및 조기대응 기반 확보"	위원장 외 17인

- '16. 4. 11 :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17~'21)'수립(국과심,)
- '16. 4월 :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공동기획 사업 선정(국과심 다부처특위)
- '17. 3. 17 :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17년 시행계획 수립(국과심, 바이오특위)
- '17. 4. 28 : 방역연계 세부실천방안 수립 및 예산협의(범부처추진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22
- 사업규모 : 신규사업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6. 재난예측 및 저감연구개발(R&D)(2931-6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조사지원관	일반계정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01
명칭	국민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예측및저감연구개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재난예측및저감연구개발	15,236	10,980	10,980	9,792	9,354	9,354	△1,626	△1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기술의 선진화 및 통합화 기술 개발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 시책 마련 추진
-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자연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 ▪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산업을 육성
-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의3(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연재해저감기술사업을 실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지진·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 ▪ 지진에 관한 연구 및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사·기술개발·연구 수행

② 추진경위

- '03년 '자연재해방재기술개발사업'을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이관 및 「범부처적 수해방지대책(국무조정실, '03.4.8)」에 따라 '04년부터 수재해 분야는 「홍수재해방재기술개발사업」으로 분리
- 「홍수재해방지기술 개발사업」 추진방향 마련(과학기술부, '04.1월)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04.9.7)의 과기부 집행기능 이관 방안에 따라 '자연재해방재기술개발사업' 소방방재청으로 이관('04.10.18)
- '05. 7월 국과위 「'06년 R&D 예산 조정 추진 방향」 보고 시 '재난방지 및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충'을 골자로 하는 방재분야 R&D 투자 강화 보고
-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 추진방향 마련(소방방재청, '05.12월)
- 「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지진종합 기획단, '06.4.11)」 확정
  - ▪ 지진피해 저감기술개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국무회의시 확정
- 「신국가 방재시스템(신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 '07.5.15)」 확정
  - ▪ 방재 R&D 종합계획 관리체계 구축, 방재안전산업 육성과 연계한 전략계획 수립 및 투자규모 지속 확대 등을 국무회의시 확정
-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 계획」 50개 중점 육성기술에 '자연재해·재난예방 및 대응기술'과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기술' 반영

※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08.8.12)

- '14년 11월 소방방재청에서 舊 국민안전처로 조직개편
- '16년 일몰사업 지정으로 계속과제 종료 시 사업 종료
- '17년 사회재난기술개발사업과 통합 및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일몰사업 관리 일원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3년~2019년
- 사업규모 : 6개 과제(계속) 연구수행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사업단)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 (참여기관) 고려대, 한서대, 연세대, 인하대, 한국전자부품연구원 등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지자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지원 법적근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기업	5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중소기업	75% 이내	

사 업 명
7.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R&D)(2931-6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조사지원관	일반계정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13
명칭	국민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극한재난대응기반 기술개발	-	8,058	8,058	11,230	9,768	9,768	1,710	2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시 극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대응 및 상황관리 기술개발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0조(자원조사 등)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지원의 비축·관리)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② 추진경위

-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지원기술개발**' 사업 추진('17년)
- (사업명 변경) 「국민안전처 R&D 혁신방안('17.4.3.)」에 따라, '**극한재난 대응 기반기술 개발**'로 사업명 변경·추진('18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사업과 협업형 R&D 추진
  ※ 내역1)대형복합 재난대응 기반기술 개발 - 시나리오 기반 대형복합재난 확산예측 기술 개발
-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다부처공동 지진단층조사 R&D(행안부, 원안위, 과기정통부)"** 추진
  ※ 내역2)지진대비 안전인프라 기술개발 -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 ~ 2021년 (총5년)
- 사업규모 : 연간 10개 내외 연구과제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95%), 직접(5%, 사업운영) 등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행정안전부, (참여기관) 강원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대학, 출연연, 중소기업 등)
- 사업 수혜자 : 행정안전부, 지자체, 국민

사 업 명
8.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R&D)(2931-6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조사지원관	일반계정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17
명칭	국민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재난안전취약핵심 역량도약기술개발	-	-	-	3,628	2,322	2,322	2,322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재난관리단계별 최하위 수준 핵심기술(추격·후발그룹) 선별 선도그룹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취약기술 선택형 기술개발사업
  ※ 1단계 : 교육·훈련 / 긴급대피 수송 / 구호시설의 기술 선진화
  ※ 2단계는 본 사업 종료 전 "기술수준조사"를 통해 대상 분야 선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4조(훈련의 실시)
- 「민방위기본법」제33조(민방위경보)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1조(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21조(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
- 「재해구호법」제4조(구호의 종류 등), 제4조의2(임시구호시설의 사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구호의 방법 등)

② 추진경위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5대 전략 중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 「재난과학기술개발 10개년 로드맵」 '2-3 재난감시 정보 플랫폼 기술', '5-3 대국민 신속 정확 정보 전달 기술', '7-2 현장 요원 훈련 프로그램'
-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목표 '재난·재해 기술 혁신과 국민 체감 활용성 제고 -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80% 확보'
- 「국민안전처 R&D 중장기 로드맵 및 혁신방안」 마련 신규사업 추진전략 수립('17.4.3.)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년~2022년 (총5년)
- 사업규모 : 연간 5개 과제 연구과제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95%), 직접수행(5%, 사업운영) 등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지원 법적근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기업	5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중소기업	75% 이내	

사 업 명
9.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R&D)(2931-6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조사지원관	일반계정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19
명칭	국민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	-	-	-	4,654	4,654	4,654	4,654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수요지향형 재난안전 R&D를 통해 재난안전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실용화·제품화를 지원하여 재난안전 산업육성 견인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59조(방재기술의 실용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에 관한 법률」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추진경위

-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16년 일몰사업 지정(舊 미래부, '16.3.)
- 「우주개발중장기계획('13.11.)」에 따라 통신방송용 정지궤도위성의 국내 독자모델의 민관 공동개발 추진('16.6)

*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부처) 국토교통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 「R&D 혁신방안 및 추진전략」수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전략 수립('17.4.3.)
-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신규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년~2022년 (총5년)
- 사업규모 : 연간 평균 9개 연구과제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95%), 직접수행(5%, 사업운영) 등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관련 중소기업, 국민

안 전 정 책 실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 319
2. 재난안전산업활성화 ····· 324
3.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지원 ····· 327
4. 국민안전의식선진화 ····· 330
5. 지역안전개선컨설팅 ····· 333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개선 ····· 337
7.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 ····· 340
8. 재해위험지역정비 ····· 342
9. 우수저류시설설치 ····· 345
10.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구축・운영(정보화) ····· 347

사 업 명
1.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26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일반회계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1	301
명칭	안전정책	국가안전정책수립및시행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운영	1,239	764	764	1,357	993	993	229	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국가안전대진단 운영>

□ 매년 약 2개월(2~4월중)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등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개선

○ 안전점검(민관합동점검, 관리주체 자체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 등의 결함 및 위험요소,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에 기여

○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국민참여 현장점검단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및 안전의식 강화

○ 첨단 진단 장비 활용, 민간 전문가, 진단업체 참여 등을 통해 안전산업 육성 지원

<안전신문고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취약요인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정부 대표 '안전신고 포털' 구축·운영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 법·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 밀접 영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분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분석 및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메타점검 실시

* 다중이용 대규모 시설 등 사고확률이 높은 4개유형 20개 분야 선정

< 메타점검 대상 >

- (기반시설) 교량, 터널, 댐(저수지), 산업단지 등 4개
- (다중이용시설) 요양병원, 백화점, 영화관, 재래시장, 유원시설, 지하상가, 공연장, 복합건축물, 종합병원, 숙박시설 등 10개
- (운송수단) 여객선, 지하철, 버스 등 3개
- (주거 및 사무시설) 공동주택, 초등학교, 초고층빌딩 등 3개

□ 대형사고, 국가주요 행사 등 사회적 쟁점 대상에 대한 이슈 점검

<안전기준심의회 운영, 안전기준 조사·분석 연구>

□ (안전기준심의회 운영) 중앙행정기관이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안전기준의 체계적 등록 관리 추진

□ (안전기준 조사·분석 연구) 미비한 안전기준 발굴, 안전기준의 적정성 검증, 안전기준 세부 유형분석 및 안전기준 등록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등 연구 필요

2) 사업내용

<국가안전대진단 운영>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4.8.26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방안(산업연구원)」 보고
-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를 안전산업 육성의 계기로 활용

○ '15년부터 집중기간(2~4월 중)을 설정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15.2.16~4.30, 74일, 107만개소)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16.2.15~4.30, 76일, 49만개소)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17.2.6~3.31, 54일, 36만개소)

○ 국정과제(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17.7월)

- 국가안전대진단이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안전신문고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재난 신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② 추진경위

- 을지국무회의, 8.19

< 회의 결과 >

▪ "우리 생활주변에 안전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시설 이용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안전문제 신고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8.19, 을지국무회의)

- 경제현안회의 후속조치 회의(안전신고 포털 구축 관련, 9.2, 9.12)
- 예산 방문협의(10.1, 기재부), 일상감사(10.2～6), 사업계획 보고(10.6, 청장)
- 발주의뢰(10.7), 실공고(10.7～11.4), 기술평가(11.7), 계약(11.10)
- 안전신고 1차 서비스 개시('14.12.12), 앱 추가 등 2차 서비스 개시 및 안정화('15.2.6)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4~계속
- 사업규모 : 국민 생활주변의 안전 위해요소 종합 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

> **제32조(정부합동안전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설치배경) 부산사격장 화재사고('09. 11월)을 계기로 범정부적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선진화 종합대책」에 따라 출범

○ (설치경위)

-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정부합동점검단 창설 : '10. 1월
- 안전취약분야 발굴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상시적 안전점검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총리훈령으로 운영 : ~ 2013.7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활동근거(제32조) 마련 : 2013.8월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조직 이관(국무총리→국민안전처) : 2014.11월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조직 이관(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 : 2017.7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안전기준심의회 운영, 안전기준 조사·분석 연구>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4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11

② 추진경위

-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형태 및 범위·기준 등을 정하여 안전기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 사업기간 : 2016~
- 사업규모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등

사 업 명
2. 재난안전산업활성화(26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일반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1	303
명칭	안전정책	국가안전정책수립및시행	재난안전산업활성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재난안전산업활성화	617	654	654	687	687	687	33	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안전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IoT 등 첨단 융·복합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4차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우수한 안전기술의 판로확대 지원, 홍보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 중소기업 등에서 개발한 우수한 방재기술의 신뢰성, 공신력, 권위 확보 등을 위하여 방재기술 평가 지정제도 운영, 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한 안전산업 육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지원)
▪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자연재해저감 기술·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 자연재해저감 기술·산업에 대한 전시회, 학술회의의 개최
- 자연재해저감 기술·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 자연재해저감 기술·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 자연재해저감 기술·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 국정과제 56-1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② 추진경위

▪ 신 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 보고('07. 5. 15 국무회의시)
▪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방안 보고('14.8.26. 국민경제자문회의)
-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안전산업 육성의 계기로 적극활용
▪ 안전대진단 연계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15.3.19. 무역투자진흥회의)
- 제도개선 및 정책 지원을 통한 민간의 안전투자 유인
- 재난보험, 컨설팅 등 민간의 안전 서비스산업 활성화 유도
-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 ~ 계속
- 사업규모 :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방재신기술 평가·지정제도 운영,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기업의 안전기술개발 발굴·보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민간단체(공모로 선정)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시대행 전문기관(공모)	정액	
전문 평가대행기관(공모)	정액	

사 업 명
3.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지원(26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2	300
명칭	안전정책	국민생활안전체계구축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지원	423	502	502	622	502	502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부처별로 중복·산재되어 있는 안전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조율·점검
- 범정부차원의 소방·민간자원봉사자 등 안전 활동 강화·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및 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추진경위

- 안전사고대책

· ‘08. 4월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 작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08. 7월 국가안전정책자문회의 심의
· ‘08.10월 7대분야·100대 과제 선정
· ‘08.12월 국무차관회의 보고
· ‘09~’13년 세부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
· ‘14. 1월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중점추진과제로 변경
· ‘15. 3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 ’15. 6월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이행관리 체계 수립 등
· ‘15. 4월 제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16. 12월 부처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확정
· ’16. 안전정책조정회의(5회- 2월, 4월, 5월, 8월, 12월)
· ’17. 안전정책조정회의(3회- 4월, 9월, 11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범정부차원의 안전정책 조율 및 소방·해경·민간자원봉사자 등 안전 활동 강화·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 국민안전의식선진화(26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2	301
명칭	안전정책	국민생활안전체계구축	국민안전의식선진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국민안전의 날 추모행사비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국민안전의식선진화	2,948	4,060	4,060	5,263	3,405	3,555	△505	△1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안전의 날, 안전문화대상 시상 행사,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 및 유공자 시상 등 추진
- 국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정책 홍보 추진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안전교육체계 및 인프라 구축,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제14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재난 신고 등),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6조의3(국민안전의 날 등)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② 추진경위

- '09.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사고 이후, 국민 안전의식 제고 추진 (대통령 지시사항)
- '10. 12월, 국민의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근본적인 안전교육 대책 마련
- '13. 5월, '국민안전 종합대책」 보고대회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출범
- '14. 2월, 사례와 현장중심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대통령 지시사항)
- '14. 12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
- '15. 1. 10.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이후, 안전교육 지속 강화 요구 증대
- '16. 5. 29.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 증가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시행 : '17.5.30)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계속
- 사업규모 : 4,060백만원('17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사 업 명
5. 지역안전개선컨설팅(26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2	303
명칭	안전정책	국민생활안전체계구축	지역안전개선컨설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대변인실(총액)	340	368	368	400	368	368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역안전개선컨설팅)** 자치단체의 지역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통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및 지역안전지수 향상
- **(지역안전도 진단)** 시군구별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취약요인을 진단·도출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방재역량 제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강화)** 어린이 놀이시설 담당자 교육, 안전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등을 통한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 **(생활안전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 위해요인 발굴・개선안 마련
- **(도로교통사고예방여건조성)** 도로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문화 여건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역안전개선컨설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에 따라 243개 지자체(시도 17, 시군구 226) 지역안전지수 공개('15.11.4 / '16.12.8)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취약계층 생활안전전문가 자문)**「안전혁신마스터플랜」3-12-1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위해요소 진단・개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2조 제8항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포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강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도로교통예방여건조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안전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제66조의5(대국민안전교육)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지역안전개선컨설팅)**

· 안전혁신마스터플랜「Ⅱ-5-4, 지역위험요인분석을 위한 안전진단역량 강화」('15.3월)
· 지역안전진단 중・하위 4개 지자체 선정 컨설팅 실시('15.8~11월)
· '15년 지역안전지수 산출・공개('15.11월)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지역 공모('16.1월) 및 선정('16.4월)
· '16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지역(17개) 대상 컨설팅 실시('16.5~12월)
· '16년 지역안전지수 산출・공개('16.12월)
· '16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지역(17개) 대상 컨설팅 실시('17.5월~)

- **(취약계층 생활안전 전문가 자문)**

· '15년 정부업무보고(취약계층 위해요소 선제적 점검)
· '16년 정부업무보고(어린이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관계부처 합동「어린이 안전 종합대책」국무회의 보고('16.4월)
· 관계부처 합동「노인 안전 종합대책」차관회의 보고('16.8월)
· 장애인・여성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16.11월)
· '17년 정부업무보고(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강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공포('07.1월)
· 지식경제부에서 재난안전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업무이관('08.1월)
·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11.2월)
· 관계부처 협업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율 제고('13.10월/안전정책조정회의)
·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대책 확정('13.11월/안전정책조정회의)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전국 놀이시설 검사 완료('15.1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 시 시스템을 통한 신고 의무화('15.7월)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마련('15.12월)
· 공공도서관 놀이시설 등 7개소 법 적용대상 시설 확대('16.7월)

- **(도로교통예방여건조성)**

· 국정과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선정('08.7월)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 국무회의 보고('10.5월)
· 국정과제 87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선정('13.3월)

* 세부 이행과제 : '17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의 도로교통 안전 확보

□ 주요내용

구 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규모	시행방법	수혜자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
지역안전개선컨설팅	-	'15~계속	17개 지자체 (시군구)	직접수행	일반국민	-
지역안전도진단	-	'07～계속	-	직접수행	일반국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강화	-	'09～계속	-	직접수행	일반국민	-
취약계층 생활안전전문가자문	-	'15～'계속	-	직접수행	일반국민	-
도로교통예방여건조성	-	'04～'계속	-	직접수행	일반국민	-

* 17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시범사업지역

사 업 명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개선(26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3	300
명칭	안전정책	승강기안전관리	승강기시설안전관리개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승강기시설 안전관리개선	1,636	1,838	1,838	1,918	1,841	1,841	3	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승강기 중대사고 및 고장발생 시 신속한 이용객 안전구조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승강기 갇힘 승객구조훈련』추진

· 관리주체 및 유관기관 간 실제대응훈련을 통해 초기대응능력 제고 등 긴급대응 체계 구축을 위함

- 승강기 안전사고 조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4에 따라 승강기 중대사고의 조사와 사고조사 판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고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추진

· 또한'한국승강기안전공단'출범('16.7.1)에 따라 중대사고 이외의 언론보도, 잦은 민원 발생 승강기의 고장·사고 등에 대한 별도 안전실태 긴급조사반 신규운영

-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 검사 불합격, 검사 미신청 등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내재 승강기에 대한 이용객 안전확보 필요

· 승강기 신규 설치대수(매년 약 3만대) 및 장기사용(15년이상) 승강기의 증가와 비상통화장치·도어이탈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의무화('15.7월)로 불법운행승강기 증가 전망

-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0조의3에 따라 구축된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승강기 안전관리 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함

- 승강기 안전의 날 행사 및 국제교류·협력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승강기 안전에 관한 홍보 및 공모전을 위한 승강기 안전의 날 행사 추진

·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엑스포 한국관 운영 및 국내 승강기 산업 홍보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 기타 승강기 제도개선 및 운영비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 제4항, 제13조의2 제3항, 제15조의3 등에 따른 필요사항 규정을 위한 제도개선과 제21조 제3항 등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점검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0조의 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4 제4항, 제21조의3 등의 규정에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구축·운영, 검사, 승강기 실태조사, 승강기 안전사고조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승강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추진경위

- 사고조사 및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구)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04.12.)
- (구)산업자원부에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설치('05.7.)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사고조사팀 설치('05.7.)
  * 안행부 승강기안전과로 통합('14.4.)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법 명칭 변경 및 행정안전부로 소관부처 변경('09.3.)
- 법령, 검사기준 개선 등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 선진화 계획 수립('10.5.)
-「승강기종합정보망 구축계획」수립('11.2.) 및 종합정보망·승강기 실태조사 등 근거 마련(법 개정, '12.2.22.)
-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로 소관부처 변경('14.11.)
- 검사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16.7.1)
-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로 소관부처 변경('17.7.)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법정대행민간사업비, 보조금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7.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2635 - 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5	300
명칭	안전정책	국민재난안전의식개선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여름철물놀이인명 피해경감	305	290	290	290	290	29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매년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여 안전시설 설치예산 지원 등 정부차원의 총력 대응 결과 인명피해 크게 감소('08년 155명 → '16년 35명)
- 하천, 산간계곡 등 물놀이 취약지역에 위험표지판, 구명환 등 안전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② 추진경위

◇ '09년 이후「물놀이 인명피해 줄이기」추진으로 사망자 대폭 경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사망자수	143	155	68	57	52	25	37	24	36	35

- 총리실 주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관계부처 합동 회의개최(´08.9.26)
- '0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 사전대비(4.15~5.31) 및 대응기간(6.1~8.31) 설정, 중앙·지자체 총력 대응
- 과거 인명피해 발생장소 등 물놀이 취약지역 집중관리
- 물놀이 안전시설 확충(국비 지원)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지자체 예산)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 다양화(TV광고, 전광판, SNS 등)
- 자치단체장의 물놀이안전 활동 강화(캠페인,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국비 5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업 명
8. 재해위험지역정비(27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2	300
명칭	재난관리	재해위험·취약지역정비	재해위험지역정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재해위험지역정비	362,322	352,377	383,253	370,330	370,330	372,685	△10,568	△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재해취약요인 해소를 위한 재해위험지역·시설 정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재해위험지구>

① 법령상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12조, 제70조

② 추진경위

▪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함에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적시에 정비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98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① 법령상 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 추진경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08.7.28)에 따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관리

▪ '12년 예산에 인명피해 우려 급경사지 위험 해소를 위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신규 반영

<재해예방사업 효율적 관리>

① 법령상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제70조,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고시)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재해위험저수지 관리지침」
- 「소하천정비법」 제6조 내지 제8조
- 「'15년 소하천정비 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지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② 추진경위

▪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소하천, 급경사지 정비 등에 약 1조원(지방비 포함)을 투자하고 있어 실시설계시 투자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로 예산절감 효과 발휘

* **최근 5년간 재해위험지구 사전설계검토 제도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 평균 227억원 사업예산 절감효과 발휘(총 1,137억원 절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 ~ 계속(서민밀집위험지역은 '15년까지 한시적 사업)
- 사업규모 : 재해위험지역 4,149개소('17년까지 2,509개소 해소)
  ·재해위험지구 2,367개소('17년까지 1,654개소 해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372개소('17년까지 445개소 해소)
  ·서민밀집위험지역 410개소('15년까지 410개소 해소, '15년 종료)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5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지역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자치단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사 업 명
9. 우수저류시설설치(27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2	301
명칭	재난관리	재해위험·취약지역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우수저류시설설치	71,839	71,046	71,046	71,046	69,546	69,546	△1,500	△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첨두홍수량을 일시 저류하여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여 기상이변과 물 부족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19조, 제70조

② 추진경위

- ’08.12.17『녹색 뉴딜 사업(안)』추진과제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 사업」1차 핵심사업으로 선정
- ’09. 1. 6『녹색 뉴딜 사업』추진방안, 국무회의 시 대통령 보고 및 확정
- ’09. 2. 4 『녹색 뉴딜 사업』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사업명 변경
  - *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09. 3. 27『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추경예산 정부안 국회제출
  - * 5개시도 9개소 국비 14,800백만원
- ’09. 4. 22『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관련 지자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 ’09. 4. 29『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추경예산 확정, 사업추진
- ’09년~’17년『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추진
  - * 192개소 중 82개소 완료, 총사업비 9,491억원(국비 5,131, 지방비 4,360)
- ’18년『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추진 중
  - * 22개소(신규 6, 계속·마무리 16), 총사업비 1,390억원(국비 695, 지방비 695)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9년~계속
- 사업규모 : 우수저류시설 192개소, 20,233억원(국 10,502, 지 9,731)
- 사업시행방법 : 국고 50%, 지방비 50% Matching Fund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10.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구축·운영(정보화)(3037-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7	500
명칭	재난안전정보화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운영(정보화)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긴급신고통합체계 구축·운영(정보화)	-	2,257	2,257	7,848	5,365	5,365	3,108	13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동관리센터 안정적 운영기반으로 긴급구조기관의 신속한 공동대응체계 마련
- 긴급신고 골든타임확보로 국민안전 확보

□ 추진목적

- 기존 신고전화를 재난(119), 범죄(112), 민원·전문상담(110) 신고로 단순화 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처리와 관계기관 통합 대응을 위한 신고전화 연계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좌우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신고전화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 정확한 신고 접수,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골든타임 확보와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
- 긴급신고전화 통합에 따른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시설장비 관리, 기타 운영비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제3항(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 소방기본법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동법 시행령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 수난구호법 제8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규칙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2017
- 추진배경 : 국민안전 관련 범죄, 재난, 민원Ē상담 신고전화 난립으로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혼란 유발로 골든타임 허비

> ▸세월호 침몰시 122를 모르는 학생이 119로 최초신고, 119에서 122로 재연결 및 반복설명 과정에서 2분의 골든타임 허비

- 구축방안 : 현행 20여개 이상 신고번호를 긴급·비긴급으로 분류, 긴급 재난(119), 범죄(112), 비긴급 민원·상담(110)으로 통합 하고 ICT 기술을 활용, 어떤 번호로 걸어도 동일한 신고접수 처리가 가능한 통합·연계 신고접수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 ~ 계속
- 사업규모 : 긴급신고 통합체계 3단계 구축,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긴급신고 이용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재 난 관 리 실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 351
2.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 353
3. 재난관리국제협력 ····· 357
4. 국가기반체계관리 ····· 361
5. 지진대비인프라구축 ····· 363
6. 재난경감대책협의회운영 ····· 365
7. 재난관리평가지원 ····· 369
8.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 372
9. 재난대책비 ····· 375
10. 재난구호지원 ····· 377
11. 풍수해보험 ····· 380
12. 재난심리회복지원 ····· 383
13.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정보화) ····· 387
1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390
15. 재난안전통신망구축(정보화) ····· 397

사 업 명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27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00
명칭	재난관리	방재인프라조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안전정책실기본경비 (총액)	332	426	426	426	348	348	△78	△1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해대책유공자 표창, 재해예방 포스터·사진 공모전, 여름철 겨울철 등 자연재해 대비 홍보,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중대본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제18조
- (지역자율방재단)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66조의2
- (홍보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제6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② 추진경위

< 지역자율방재단 >

- 지역자율방재단은 '03년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을 근거로 '04년 용역을 완료, '06년 시범사업 실시 후 '07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구성 완료하여 재난발생시 활발히 활동 중임

【제26회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사항(2003.6.11)】
- "지역에 오래 살아 지형과 수리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가진 사람을 재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중대본 운영, 재해대책유공 표창, 재난재해 대비 홍보 등은 기본업무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미작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중 중대본의 운영, 여름철·겨울철 재해예방 홍보(2회), 재해대책유공 표창(약 700점), 지역자율방재단 대상 직무교육, 전문교육 및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9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2항

사 업 명
2.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27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04
명칭	재난관리	방재인프라조성	재나관리전문인력양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600	2,100	2,100	1,900	1,600	2,600	500	2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재난관리 분야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종합적 전문가 양성
  · 대학 內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운영 지원 (재난관리 분야, 지진 분야)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른 방재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1.7월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이후 대통령 지시('11.8.2.)
  · 정부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 확충
  ·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 필요 강조
-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고시)」 제정('14.5.16)
  ·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14.10.30)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4년)
- 舊국민안전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이행
  ·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등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이행 참여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존 방재안전 교육과정 운영 대학 등과 연계, 방재교육 체계화로 예비 방재인력 육성(전략 : 국민안전 역량강화 및 지원, 중과제: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강화, 세부과제 : 방재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
- 재난의 다양화 및 대형화 등으로 국민요구 수준 증가
  · 사회구조의 복잡 다변화에 따른 국민 안전요구 수준 상승 및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재난관리 수요확대
  · 재난전문가 부족에 따른 '세월호'와 같은 사고 지속 반복
- 잠재적 위험으로 여겨졌던 지진이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16.9.12)
  ·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 발생, 부상자·재산피해 발생(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 '78년 관측 이후 최대규모, 체계적 지진 대처를 위한 기관별 전문인력 필요성 절감
- 새정부 국정과제(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에 포함('17.8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4년~계속
- 사업시행방법
  · 전문인력 양성사업(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지원) : 민간보조(정부 70%, 민간 30%)
  · 인증시험 위탁지원 : 민간위탁(정부 100%)
- 사업시행주체 : 민간
- 사업 수혜자 : 재난관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교육기관(대학)	70	
기업재해경감협회	100	

사 업 명
3. 재난관리국제협력(27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05
명칭	재난관리	방재인프라조성	재난관리국제협력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재난관리국제협력	1,956	1,856	1,856	1,785	1,755	1,755	△101	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사업목적 : 국내에 유치한 UNISDR 국제기구의 교육운영과 UN방재연수원 및 UNISDR 동북아사무소의 재해경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각종 활동 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 및 재난관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여비 및 개최비용

- 사업목표
  · 재난위험경감 분야 국제 교육 훈련에의 기여 및 한국의 주도권(이니셔티브) 확보
  · 해외 우수 재난위험경감 프로그램의 국내 전파
  · 한국이 UN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역할 상승
  ·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관계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1. UN방재연수원 및 UNISDR 동북아사무소 부담금

- 대한민국 정부와 UN간의 양자협정(조약 제2029호) : '10.11.5

협정 주요내용

○ UNISDR 동북아사무소 및 재난경감국제교육훈련연수원을 대한민국에 설치(제1조)
○ 정부는 관련된 적합한 법과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제5조)
○ 최초 5년간('10. 11. 5~'15. 11. 4) 유효(제20조)
○ 협정 만료 1년 전부터 6개월 이전에 당사자는 연수원과 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계획의 개발과 책임을 도출할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공동검토를 수행, 검토의 권고에 따라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로 연장(제20조)

- 소방방재청·인천광역시·UNISDR 간 보충약정 : '11.8.17

보충약정 제2조 (재정지원)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방방재청은 150만달러, 인천시는 100만달러를 UNISDR에 기여(제1조)

- 대한민국 정부와 UN간의 양자협정(조약 제2257호) 개정: '15.11

연장 및 개정 주요내용

○ 협정 유효기간(5년) 만료로 유효기간을 2020.11.18.까지 5년 연장
○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국제연합 재난경감 국제전략 사무국'은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 사무소'로 명칭변경 등

- 국민안전처·인천광역시·UNISDR 간 보충약정 개정 : '16.7.21

연장 및 개정 주요내용

○ 환율상승에 따른 분담금 부족분 발생시 협의 조항 신설
○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간 연장(5년 연장)

2. 아시아방재센터(ADRC) 부담금

- ADRC 정관 제3조(경비)

ADRC 정관 제3조(경비)

부담금 = 기본경비 $5,000 + GDP 기준 추가경비 $13,300
<고정> <5년마다 재산정, 現 부담금은 '13년~'17년 적용>
* 근거 : ADRC 정관 제3조(경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1. UN방재연수원 및 UNISDR동북아사무소 부담금(2008년~)
   ▪ '09.8.11 : UN방재연수원 및 UNISDR동북아사무소 개소
   ▪ '13.1.11 : UNISDR과 소방방재청 간 업무협력 강화 협정 체결
   ▪ '14.3.26~28: 한·중 일 방재전문가 회의 개최
   ▪ '15.3.14~18: 『제3차 재난경감 UN 세계회의』 참석(장관)
   ▪ '15.11. : 대한민국 정부와 UN 간의 협정 개정
   ▪ '16.7.21. : 국민안전처·인천광역시·UN ISDR 간 보충약정 개정
2. 아시아방재센터(ADRC) 국제 부담금(1998년~)
   ▪ 1998.7.30. : 아시아방재센터(ADRC)설립
   ▪ 1998년 이후 매년 아시아재난경감회의(ACDR) 회의 참여
3. 한·일 방재회의(1999~)
   ▪ 1998.10.8. : 한 일 정상회담에서 재해경감방안 협력 합의
   ▪ 1999.7.12 : 한·일 자연재해관련 방재회의 신설 합의
   ▪ 한·일 양국, 1년마다 교차 개최
4.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 (2009~)
   ▪ '08.12.12. : 한·중·일 정상회담 시「재난관리 협력 공동발표문」채택
   ▪ 한·중·일 협력증진을 위해 재난관리에 관한 3국 정부 기관장 및 전문가 회의를 순번으로 개최키로 합의 (2009 제1회한중일 재난관리기관장 회의, 일본)
   ▪ '13.10.30. : 제3회 한중일 재난관리기관장 회의 개최(서울)
   ▪ 한·중·일 3국, 2년마다 교차 개최
5. 한·중 재난관리기관 정례회의

- 중국민정부와 재난안전 관련 업무협의 및 MOU 체결에 따른 세부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 제1회 한·중 재난관리기관 정례회의 개최('16.11)

6. 러시아 비상사태부와 정례회의
   - 러시아 비상사태부와 재난안전 관련 업무협의 및 MOU 체결에 따른 세부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 제1회 러시아 비상사태부와 정례회의 예정
7. 미국 재난관리기관 국제교류 협력회의
   - 미국 국토안보부 실무자간 협력(정례회의 추진)
   - 미국 국토안보부 테러 대응 및 지원 관련 업무 협력 관계 구축
   - 주한미국대사관 美국토안보부 주재관과의 실무회의 (6.24)
     - '17년 실무회의 추진 의사 전달 및 의견 수렴 등 협의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8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전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4. 국가기반체계관리(27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일반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06
명칭	재난관리	방재인프라조성	국가기반체계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국가기반체계관리	111	141	141	221	201	201	60	4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한 객관적·효율적 평가업무를 수행, 평가 결과의 환류 및 컨설팅을 통해 업무 전문성 제고와 자율·책임행정 강화
- 현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에서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 등 9개 전문분야에 대해서 일부 사례를 들어 위험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각 분야별 표준 지침 개발·보급
  * 미국(NIPP)의 경우 18개 분야별 위험분석 방법 각각 별도로 제시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② 추진경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04.3.11) : 국가기반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을 설치·운영, 국가기반 재난관리체계 구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07.1.26) : 재난관리체계의 평가, 교육, 훈련, 재난관리 표준화 등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5. 지진대비인프라구축(27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2	305
명칭	재난관리	재해위험·취약지역정비	지진대비인프라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진대비인프라구축	-	2,023	2,023	2,070	2,030	2,530	507	2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지진관련 교육·홍보, 전문성 확보, 제도 마련 등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3(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 제11조(지진·화산방재 교육·훈련 및 홍보),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최근 국내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9.12지진('16.9.12, 경주, 규모 5.8)을 계기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 대피요령 및 지진방재 국가 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및 전문성확보, 내진보강사업 제도화 등 전방위적인 **"지진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필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지진방재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1식, 지진방재 국제교류 1식, 지진 관련 교육·홍보 실시 1식, 내진성능 적정성 검토 및 지원 1식, 내진성능 평가 대가기준 마련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6. 재난경감대책협의회운영(27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3	300
명칭	재난관리	재해경감활성화	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본예산	2017년 예산 추경(A)	2018년 예산 요구안	2018년 예산 조정안	2018년 예산 국회확정(B)	증감 (B-A)	증감 (B-A)/A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245	266	266	336	284	284	18	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재해 원인의 조사, 분석, 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

- 중앙본부장은 제9조에 따른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시행령 제6조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시행령 제13조·제14조

▪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홍보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근거 마련) : '05. 1.27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06. 3. 8

▪ '06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시범운영 : '06.7～8월

- 태풍 "에위니아", 집중호우로 재난상황관리 분야 등 7개 분야 49명 참여

▪ '07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 '07.7～9월

- 태풍 "나리", 집중호우로 재난상황관리 분야 등 9개 분야 97명 참여

▪ '08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 '08. 2～7월

- 너울성파랑, 강풍 피해발생으로 해일분야 등 7개 분야 78명 참여

▪ '09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 '09. 7～10월

- 7월 집중호우로 재해위험지구 등 4개 분야 40명 참여

▪ '10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 '10. 4～10월

- 9.21 수도권 집중호우피해로 7개 분야 80명 참여

▪ '11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 '11. 7～11월

- 7월 집중호우로 급경사지 등 4개 분야 74명 참여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11.12.5

※ 국립방재연구소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됨에 따른 업무범위 개정.

▪ '12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 '12. 4～11월

- 태풍 "볼라벤", 8월 집중호우로 급경사지 등 9개 분야 85명 참여

▪ '13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 '13. 3～10월

- 7월 집중호우로 댐·저수지, 기후변화대응 등 7개 분야 83명 참여

▪ '14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 '14. 2~10월

- 태풍 "너구리", "나크리", 집중호우로 우수유출 등 8개 분야 75명 참여

▪ '15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 '15. 2~12월

- 태풍 "할롤라", "고니", 집중호우로 재난상황관리 등 5개 분야 106명 참여

▪ '16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 '16. 2~10월

- 태풍 "차바" 집중호우로 재난상황관리 등 5개 분야 99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행정계획·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여 재해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도입('05.8.17.)

  * 운영실적 : 1,172건('05～'10년 582, '11년 59, '12년 82, '13년 89, '14년 102, '15년 137,'16년 181)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14.3.11.)

  * 재협의 대상 확대(저류시설 용량 10% 이상 변경), 의제사업 규모 변경(15만㎡→5천㎡)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현행화 및 조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15.11.30.)

  *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 단일화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16.1.27.)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확대 등 제도 강화를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17.1.26.)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 개정('16.06.30)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복구에서 예방위주의 방재형 국토체질 강화를 위해 제도 도입('05.7.27)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 반영 의무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12.2.6)

- 특별·광역시 자치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 일괄수립('자연재해대책법」 시행, '12.8.23)

- 광역단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도 계획 세부수립 제정('12.8.23) 및 도 계획 수립 방재표준품셈 개정('13.6.27)

<우수저류시설 사전설계 검토회의 등 운영>

- '09년~'15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추진

  * 163개소 중 56개소 완료, 총사업비 6,634억원(국비 3,702, 지방비 2,932)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16.4.7)

- '16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추진 중

  * 39개소(신규 8, 계속 31), 총사업비 1,436억원(국비 718, 지방비 718)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사업규모
  · 회의개최, 보고서 발간, 전문가기술료, 운영수당, 출장여비, 홍보비 등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7. 재난관리평가지원(27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3	302
명칭	재난관리	재해경감활성화	재난관리평가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관리평가지원	1,000	955	955	1,241	697	697	△258	△2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핵심수단으로서 동법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역량 진단 및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견인하는 사업임.

- 중앙·공공기관, 지자체평가 등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수당·여비 지급을 통한 운영
- 우수 평가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기관 간 선의의 경쟁 유도
-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포괄하는 지표개발, 중앙 및 공공기관의 소관 재난유형 및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지표 연구 등 추진
- 평가결과 미흡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단 운영 및 컨설팅 교재 개발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2, 「시행령」제42조

② 추진경위

구분	재난관리평가 연혁	대상기관
2005년	· 재난관리 실태점검(지방자치단체) 도입	지자체(일부)
2006년	· 중앙행정기관 6개 기관 평가 실시 *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해수부	지자체(일부) 중앙(6)
2008년	**· 중앙행정기관 10개, 공공기관 10개 기관 평가**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지자체(일부) 중앙(10), 공공(10)
2010년	· 중앙행정기관 14개, 공공기관 15개 기관 평가 * 한국시설안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지자체(일부), 중앙(14), 공공(15)
2012년	· 중앙행정기관 13개, 공공기관 22개 기관 평가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공항철도(주) 등	지자체(일부), 중앙(13), 공공(22)
2015년	· 사회· 안전분야 등 포함 평가지표 개발	지자체(일부), 중앙(13), 공공(23)
2016년	· 중앙행정기관 13개, 공공기관 23개 기관 평가 **· 재난관리평가체계개선 T/F 추진** * 평가대상 확대, 지표 보완, 타 부처 평가 연계 등	지자체(일부), 중앙(13), 공공(23)
2017년	**· 중앙행정기관 19개, 공공기관 55개 기관 평가** * 철도, 도로·항공·항만, 에너지, 안전관리 4개 그룹 평가 **· 재난관리평가 웹기반 시스템 도입('18년 평가적용)**	**지자체(전체), 중앙(19), 공공(55)**

③ 평가대상기관

구 분	계	지자체	중앙부처	공공기관
기관수	317	243 (시도 17, 시군구 226)	19	55 (철도 11, 도로·항공·항만 17, 에너지 13, 안전관리 11)

④ 평가내용

-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 및 대응 복구과정, 재난 대응 조직 구성 및 정비실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등 41개 지표로 평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계속
- 사업규모 : 326개 기관에 대한 재난관리평가 실시
- 사업시행방법 : 포상금, 일반 운영비, 연구용역 등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및 해당 지역 주민 등
-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포상금	100%	포상금(인센티브적 성격으로 해당없음)

※ '17년 지자체 보조(100%) → '18년 포상금(100%)으로 비목변경('16년 국회 안행위 결산시 지적사항)

-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예산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자체경상보조

사 업 명
8.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27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3	303
명칭	재난관리	재해경감활성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166	2,276	2,276	2,715	2,147	2,147	△129	△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훈련기관 컨설팅 강화, 현장훈련 확대, 재난대비 연중 상시훈련 등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 각 부처·기관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위기관리 활동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기능강화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연·사회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의무화 신설('14.2.7시행)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공동 활용하기 위한 교육인프라 확보·보급
- 재난, 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실무/행동)은 행정안전부가 조정·승인·협의를 총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7.>

1) ② 추진경위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기본계획 대통령 재가 및 국무회의 보고('04. 9)

○ 2005년부터 매년 1회(4~5월) 3일간 실시 (※ 2015년부터 5일간 실시)

○ 2007년부터 재난대비 민방위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의식 및 참여 제고

○ **'박근혜정부'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실천사항으로 안전한국훈련 강화**

- '안전과 통합의 사회'의 국정목표와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의 국정과제*(86-1,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강화) 실천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훈련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 세부과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훈련 강화

※ 관련공약 : 98.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기간 중 제4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강조 말씀(2013. 5. 6)

· '평상시에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 항상 확인·점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 월별(상시)훈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경상보조(국비 50%)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자체
- 사 업 수 혜 자 : 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17개 시도)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

사 업 명
9. 재난대책비(27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4	300
명칭	재난관리	재난복구지원	재난대책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7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B-A)	(B-A)/A
재난대책비	32,293	50,000	50,000	45,000	45,000	45,000	△5,000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자연재난 피해자 주택, 농어업시설 등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및 사회재난 피해자 긴급생활안정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국고보조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자연재난 발생시마다 자치단체 자체조사, 중앙합동조사, 중대본 심의 등을 거쳐 사유재산 피해복구비를 재난지원금으로 통합하여 지원 : '06이후
-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나, 예비비 지출시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원시기가 지연되기에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조속히 지원('11년부터 도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1~
- 사업규모 : 주택, 농어업시설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사회재난 피해자 긴급생활안정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50~70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 업 명
10. 재난구호지원(27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4	301
명칭	재난관리	재난복구지원	재난구호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B-A)	(B-A)/A
재난구호지원	480	480	480	480	480	48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재난 시 구호활동 봉사자 급·간식비와 재해구호물품 및 재해구호장비 임대료 및 유류대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구호**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 도모**

《 사업 필요성 》

○ 관련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발생 등으로 구호기관의 신속한 구호활동 및 이재민의 조기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필요**

* 「재해구호법 제6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이재민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성금) 등의 지원제도는 갖추고 있으나, **이재민의 구호활동 및 봉사자에 대한 구호지원 사각지대 상존**

※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① 임시주거시설 제공 ②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③ 의료서비스의 제공 ④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①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가 부족하면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이하 생략)

① 법령상 근거 : 재해구호법 제4조, 제6조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② 추진경위

- '05. 1월 재난업무 일원화 방침에 따라 재해구호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

- '05년~'13년(9년간)까지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재원으로「재해·재난대비긴급구호사업」을 추진
- '14년부터「이재민 구호활동 지원」을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운영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위원회 검토결과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 방침 결정

- 일반회계로 편성된 예산 활용을 위해, "14년 재해·재난대비긴급구호사업 집행계획" 수립
- 예산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15년 사업명칭 변경(재해・재난긴급구호→재난구호지원)

☞ 재난발생 양상과 재난현장 특성 등을 감안한 「재난구호지원사업」 집행계획을 2015년도부터 수립·시행(계속)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 ~ 계속 ※ '05~'13년까지는 복권기금으로 지원
- 사업규모 : 응급구호장비 임대료 및 유류대, 응급구호 종사자 경비 및 소모품 등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방자치단체	1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사 업 명
11. 풍수해보험(27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관명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4	302
명칭	재난관리	재난복구지원	풍수해보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47~6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풍수해보험	12,727	19,287	19,287	18,323	17,357	17,357	△1,930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민 누구나 스스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사유재산 피해지원 제도를 보완·대체하고 자율방재의식 고취를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 실시
-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그동안 의무보험에서 제외되었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국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보험료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97～‘03년
-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민·관 TF팀 운영 : ‘04. 7～12월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복구체계혁신기획단」 운영 : ‘05. 1～6월
- 풍수해보험법 제정·공포 : ‘06. 3. 3
-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 ‘06. 5.16~’08. 3.31
- 풍수해보험법 개정·공포(모든 건축물로 보험대상물 확대) : ‘08. 3.28
- 풍수해보험 전국으로 확대 : ‘08. 4. 1
- 풍수해보험 대상재해 ‘지진’ 추가 : ’12. 10.22
- 재난안전법 개정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도입 : ’16. 1. 7

  *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대상시설 등 규정 의무보험 시행 : ’17. 1. 8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계속사업('16년까지 기투자액 1,153억원)
- 사업기간 : (풍수해보험) 2006 ~ 계속 (재난배상책임보험) 2017 ~ 계속
- 사업규모 :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재난배상책임보험 총괄 관리
  · 풍수해보험료 지원(계속) : 주택, 온실
  · 대상/지역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전국 시·군·구
  · 재난취약 대상시설(19종, 18여만개)에 대한 재난의무보험 제도 총괄관리
- 사업시행방법 : (풍수해보험)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재난배상책임보험)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포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영보험사	위험보험료 28%~59.5% 부가보험료 90%	-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 )는 지방비 포함 정부지원 비율임

사 업 명
12. 재난심리회복지원(2734-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4	303
명칭	재난관리	재난복구지원	재난심리회복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B-A)	(B-A)/A
재난심리회복지원	216	216	216	400	308	308	92	4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재난경험자*(재난심리회복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재난으로 인해 심리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재난 경험자를 방치할 경우 심리적 병리현상으로 악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므로 재난 발생 초기 심리회복 지원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

>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연락체계 구축
> 3.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 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해구호법」 제3조, 제4조

>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1. 이재민
> 2. 일시대피자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7. 심리회복의 지원

② 추진경위

- 소방방재청·서울내러티브연구소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06.6.)
- 소방방재청 연두업무계획「중점과제」및 혁신관리평가「부처자율과제」선정('07.2.)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정보시스템 구축」('07.12~'08.9.)
- 재난피해자심리지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초조사·연구용역 착수('08.10.)
- 심리상담정보센터(http://www.dmhs.go.kr) 서비스 개시('08.12.)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사례 모음집」발간·배포('09.1.)
- 재난심리지원 매뉴얼 발간·보급('11.9.)
- 불산유출, 태풍볼라벤, 덴빈 등 풍수해 재난경험자 심리지원('12. 총 1,661명)
- 울산·포항 산불, 전남여수 폭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탑승객 등 심리상담 활동('13. 총2,902명)
- 경주마우나리조트, 세월호, 부산·울산·경남 집중호우, 판교환풍구 붕괴 등 심리지원('14. 총 4,350명)
- 메르스 격리 해제자,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 등 심리지원('15. 총 4,550명)
- 국민안전처, 대한적십자사 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16.2.)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주체를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
-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 매뉴얼 개정 발간('16.7.)
- 경주지진피해자대상 및 태풍 차바 등 자연재난 대상자 심리회복지원('16 총 4,292명)
- 대구서문시장 화재 등 사회재난 대상자 심리회복지원('16 총 3443명)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사업규모 : 17개 광역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상담활동)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지자체 경상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광역 시·도)
- 사업 수혜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재난으로 인해 심리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13.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정보화)(3031-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일반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500
명칭	재난안전정보화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정보화)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	2,553	2,754	2,754	2,828	2,479	2,479	△275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서울·경기지역에 구축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 서울·경기지역에 구축하여 경찰, 소방, 군 등 재난관련기관에서 사용 중인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

- 2003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기본계획 심의ㆍ확정(중앙안전대책위원회)
- 2004년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기획예산처)
  * 편익/비용 : 17.72, 종합평가결과 : 0.789
- 2005년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세부추진계획 수립(소방방재청)
- 2005년~2006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05년 10월 ~ 2006년 7월 시범사업 추진(서울.경기 12개 시.구)
  * 교환기 2식, 기지국 31식, 보조중계기 51식, 단말기 1,703대 등
- 2006년 11월 ~ 2007년 12월 확장1차사업 추진(서울.경기 전역 및 신설고속도로)
  * 교환기 3식, 기지국 100식, 보조중계기 110식, 단말기 30대 등
- 2007년 4월 ~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전국확장사업 중단
  * 특정업체 독점해소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 등

- 2008년 5월 ~ 2009년 5월 구축사업 타당성재조사 실시(기획재정부)
  * 편익/비용 : 0.75, 종합평가결과 : 0.288
- 2009년 5월 ~ 안전행정부에서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추진(BH 지시)
- 2011년 12월 국무총리실「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단위과제로 "재난관리 긴급통신체계 강화" 과제 확정
- 2012년 긴급통신 계획 마련 및 지원체계 정립 연구용역 수행
- 2013년 8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조항 신설
  * 법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시행령 제43조의3
- 2014년 5월 ~ '재난안전무선통신망(PS-LTE)' 추진 본격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서울·경기 지역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운영(중앙망관리센터, 교환기 4식, 기지국 131식, 단말기 6만여대), 긴급통신지원 시스템(464대) 운영관리

※ 최근 5년 간 예산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비	8,774	4,483	3,431	2,836	2,553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경찰, 소방, 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련 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3032-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일반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501
명칭	재난안전정보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4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	국회확정(B)	(B-A)	(B-A)/A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3,959	7,060	7,060	5,017	5,017	5,017	△2,043	△2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업무수행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공동대응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
- 중앙,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재난정보 연계 및 공동 활용체계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연계 운영되거나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되는 재난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정보의 처리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또는 재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유 대상 재난관리정보의 범위,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련 보험·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83조의4(보험등의 가입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등 가입 의무의 안내
2. 가입대상시설의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3. 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등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측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신속한 지진정보 및 화산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피해지역과 피해정도 등을 예측하고, 응급구조 및 구호, 화재진압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이하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협의회는 지진·화산활동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과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운영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4(소하천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5. 8월 : 21C 정보화 사회에 대비 세계화추진위원회 과제로 선정
- ’96. 2월 : 국무총리실에서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확정
  ※ 16개 부처 안전관리부서가 합동으로 기본계획 작성 ⇒ 행자부과제로 채택
- ’99. 3월 :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 ’03. 5월 : 국무조정실, 참여정부「핵심공약」추진사업으로 선정
- ’03. 6월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전자정부로드맵 중점관리과제」선정
- ‘08. 2월 :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반복적 수해피해 및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대책 마련’이 국정과제로 선정
- ‘08. 5월 : 중국 쓰촨성 지진을 계기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상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대통령 지시
- ’08.12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5대 분야 추진과제」선정
- ‘10.12월 : 안전 대한민국 세부추진과제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수립」이 선정
- ‘13. 5월 : 「모바일기반 스마트형 재난관리체계 구축」및「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 ‘13.12월 : 제3차 재난안전관리 BPR/ISP 구축
- ‘14. 2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구축
- ‘14.12월 :「안전신고 포털」구축
- ‘15.10월 : 정부3.0 7대 핵심과제로 선정(통합적 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 ‘16. 1월 : 대통령지시로 안전디딤돌 앱 홍보 강화(지시번호 : 0007870)

- ‘16. 4월 :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 ‘17. 4월 :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확대·고도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자체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재난업무담당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사 업 명
15. 재난안전통신망구축(정보화)(3033-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3	500
명칭	재난안전정보화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재난안전통신망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안전통신망구축	24,268	1,760	1,760	121,794	121,794	121,794	120,034	682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경찰, 소방, 군 등 재난관련 핵심기관 8대분야 333개 재난대응기관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자가망을 구축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와 통합대응체계 구축 지원

  * PS-LTE(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 : 음성, 문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등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70호)

② 추진경위

- 세월호 사고 관련"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의 조속한 구축 약속('14.5.19.)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 확정('14.5.27., 국무회의)
- 재난안전통신망 PS-LTE 기술방식 선정('14.7.31., 국가정책조정회의)

  * PS-LTE(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 : 음성, 문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

-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 선정 통보('14.9월)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LG CNS 컨소시엄, '14.10.14.~'15.3.31.)
- 국무총리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700Mhz 주파수 확정('14.12월)
- 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안) 발표 및 공청회 개최('15.2.24.)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 확정('15.3.31, 국무회의)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강릉·평창·정선, '15.11.19.~'16.6.16.)
- 시범사업 검증 및 본사업 추진을 위한 검증협의회 구성·운영('16.7~10월)
- 시범사업 검증결과 및 본사업 추진방안 기재부 제출(1차:'16.10.31., 2차:'16.11.21)
- 기재부(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 중('16.11월~)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지원 사업 계획 수립('17.5월) 및 추진('17.7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기재부 검토 중
- 사업기간 : '15년~'20년

- 사업규모 : 재난관련기관을 통합・지휘할 수 있는 전국 단일무선통신망 구축・운영

  ※ '18년은 1단계 본 사업 지역 5개 시·도(강원·대전·세종·충남·충북)에 대한 통신망 구축 및 기 구축망에 대한 운영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행정 및 공공기관,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비상대비정책국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비상대비훈련 ····· 401

2. 동원자원관리 ····· 403

3. B-1정부노후시설정비 ····· 407

4. 비상대비담당자 선발 ····· 409

5.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 412

6.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 416

사 업 명
1. 비상대비훈련(26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4	300
명칭	안전정책	비상시동원능력강화	비상대비훈련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비상대비훈련	805	826	826	1,589	906	906	80	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충무훈련) 실시를 통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시대비계획의 시행가능성을 검증하고, 시행절차를 숙달하여 국민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 (훈련의 실시)

② 추진경위

《을지연습》

- 1968. 1.21 사태 계기로 "태극연습" 최초 실시
- 1969. "을지연습"으로 개칭
- 1976.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연습" 통합 실시
- 2008. "UFL연습"을 "UFG연습"으로 개칭

《충무훈련》

- 1981. 국방부 주관 동원훈련으로 사업추진
- 1992. "향토방위훈련"은 합참주관 "화랑훈련"에 통합하고, "충무훈련" 명칭으로 비상기획위원회로 동 업무 이관
- 1993. 비상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충무훈련" 실시
- 2008.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로 동 업무 이관
- 2014.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로 동 업무 이관
- 2017.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동 업무 이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8 ~ 계속
- 사업규모

(을지연습) 매년 전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지정업체가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비상대비훈련

(충무훈련) 매년 시·도를 대상으로 동원훈련(기술인력·차량 건설기계) 및 복합피해훈련 실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점관리지정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 동원자원관리(26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 정책국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4	301
명칭	안전관리	비상시동원능력강화	동원자원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동원자원관리	664	645	645	817	662	662	17	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시에 소요되는 동원자원 관련 임무(생산, 관리 등)를 수행할 업체(7,003개)에 대한 동원능력을 파악하고자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국가비상대비계획(동원계획) 수립
- 유사시 군사작전 지원, 정부기능 유지 등을 위해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시·도 주관으로 실시(매년 1,900명 대상)함으로써 전시대비 동원계획의 실행력을 제고
- 공직자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정부의 전시 대비업무 및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여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자원조사 등)

> 제10조 (자원조사 등)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소속 공무원: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 2.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 필요한 사항의 신고
>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를 부여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그 자격과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 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의 대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훈련의 실시), 제22조(실비변상)

> 제14조 (훈련의 실시)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주무부장관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은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민방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2조 (실비변상)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여비 등)

> 제39조 (여비 등) ①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법 제22조에 따라 식비·숙박료·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 2.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 4. 제1호의 기관 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동원자원관리)

- 1974년 처음 전국적인 자원조사 실시
- 1984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주무부·처의 부령 정비
  ※ 정부는 유사시를 대비한 자원동원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훈련 참가자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도록 명문화
- 1987년 전 동원업체에 대한 국가단위의 총체적인 자원조사 실시
  ※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및 자원 주무부·처 합동으로 조사반 편성
- 2001~2003년까지 전체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해 현지방문조사 실시
- 2004~ 현재 : 서면신고조사(변동율이 적은 업체)와 현지방문조사(신규업체, 군수물자 생산업체 등) 병행
  ※ 조사결과 자료는 비상대비자원관리시스템 D/B화, 자원관리 부처 및 시·도 등 관련 기관간 공유
- 1989~ 현재 : 매년 기술인력 동원훈련 실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2001년 이후 : 미국 9.11테러를 계기로 정부의 테러대책과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2006년 이후 : 초·중·고교에 비상대비 교육홍보물 배포 등
- 2007년 이후: 어린이·청소년 대상 비상대비 체험교육을 위해 비상대비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비상대비체험관 운영
- 2008년 ~ 2017년 : 국민 안보의식 조사 실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1~계속 * 기술인력동원훈련('89~계속)
- 사업규모 : 지자체 보조사업/기술인력동원 훈련보상금(1,900명*7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공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 제22조

※ 지자체 보조의 경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에 '지자체 보조'로 기재

사 업 명
3. B-1정부노후시설정비(2634-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4	303
명칭	안전정책	비상시동원능력강화	B-1정부노후시설정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1정부노후시설정비	197	211	211	1,411	611	611	400	1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비상시 국가역량을 조직적으로 통할하고 정부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종합상황실 등 B-1정부소산시설 운영·관리
- B-1 정부지역 노후시설·운영환경 개선('11～'12)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 및 시설관리 및 관계기관 상호협조체계 유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시 행정조직에 관한 임시특례법(긴급명령)
- 전시 행정조직에 관한 임시조치령
-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훈령)
-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② 추진경위

정부 및 국방시설 구축	⇨	국방부 시설개선 공사 (2007~2009년)	⇨	정부시설 개선공사 (2011~2012년)
• (72년) 터널 암반굴착 공사 • (77년) 정부종합상황실, 국무회의실 등 준공 • (84년) 화생방 보호시설 공사		• (07~08년) 국방시설 확장 및 기반공사 • (08~09년)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사무환경 개선(OA)		• (10년) B-1정부노후시설 개선 기본계획 수립·보고(장관) • (11년) B-1정부노후시설 1차 개선공사('11.1~7월) • (12년) B-1정부노후시설 2차 개선공사('12.1~7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1년~계속
- 사업규모 : 전시 B-1정부종합상황실, 국가회의실 등 37개 호실 유지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정부기관

사 업 명
4. 비상대비담당자 선발(17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1	305
명칭	안전관리	비상시동원능력강화	비상대비담당자 선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비상대비담당자선발	143	151	151	151	151	151	0	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 비상대비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과 민간의 중점관리 지정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임용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정기, 연2회)을 위한 시험출제 및 집행(서류전형, 법령, 논술, 면접시험) 등 절차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지원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 예규)

② 추진경위

- 정부기관 및 민간 주요업체의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해 '70년대초부터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선발 및 임용하여 왔음
- '14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舊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던 시험을 업무소관 변경에 따라 국민안전처로 이관
- '17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舊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던 시험을 업무소관 변경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이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연간 2회(5월, 12월)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비상대비담당공무원 95명, 민간인 479명
· 선발시험 응시자 연간 500여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5.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26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6	301
명칭	안전정책	민방위사태대응능력강화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 50, 8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12,090	12,137	12,137	13,906	10,014	13,114	977	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민방위 교육 및 훈련으로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 주민대피시설 등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으로 유사 시 국민 피해 최소화
- 경보장비 유지 보수 등 경보시설 운영을 통한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및 제23조, 제25조, 제30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령 제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 제55조

② 추진경위

<민방위교육훈련>

- ‘77년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 시작
- ‘04년 서울시 태릉 민방위교육장을 재난체험장으로 시설보강
- ‘05.12 민방위 혁신대책에 민방위교육장을 체험교육장 활용 포함
- ‘06. 3 당정협의 및 국회행자위에서 체험실습장 설치 합의
- ‘07~‘14년 체험실습장(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리모델링사업 26개소 지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

- ‘76년부터 적의 공중공격이나 화생방전에 대비한 주민대피시설 설치
- ‘82년부터 소규모시설 설치 지양, 200평 이상 대형규모 시설 설치
- ‘87년 유지관리지침 작성, 1평당 대피인원 조정(평당 10명→4명)
- ‘92년부터 시·군·구청사 화생방 대피시설 설치
- ‘10년 연평도 포격사태 발생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추진
  - ‘11년 서해5도 42개소 확충 완료
  - 접경지역 총 사업량(483개소) 중 ‘11~’16년 190개소 확충완료, ‘17년 13개소 추진
- ‘15년 연천포격사태 발생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대 확충필요
  - 대북확성기 인근, 전단지 살포지역 등 추가 수요 발생(61개소)
  - ‘16년 기 계획된 12개소(38.4억) 외, 국회심의과정에서 10개소 확충예산(27.6억) 추가반영되어 22개소(66억) 확충

<비상급수시설 확충>

- 초창기(‘76～‘81) : 6대도시에 10톤 정도의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 2~4차 5개년계획(‘82～‘96) : 1일 200톤 규모로 수도권 확대설치

▪ 5차 5개년계획('97～'01) : 1일 1인 급수량 기준 변경(80 → 25ℓ)
▪ 6~7차 5개년계획('02～'11) : 시설 상시개방, 수질검사 강화(연 4회)
▪ '11~'16년 6개소(117백만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 '86년부터 민방위대원 일반방독면 보급
· ('86~'96) 1차, 2차 5개년 보급계획, ('98~'07) 10개년 계획
* 2004년 국민방독면 불량사건으로 10개년 계획 중단
▪ 지하철역 국민방독면 보급('04~'05)
▪ 민방위대원 일반방독면 보급('06년, '12년 이후) * '07～'11년 미보급
· '06년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방독면 중 일부 성능미달 확인, 사업 중단
· '12~'13년 19만개(2,055백만원), '14~'16년 10만개(1,110백만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 경보현대화사업('97～'01) : 중앙 및 16개 시·도 경보장비 설치
▪ 경보시설 확충사업('02～'04) : 사이렌 82개소 확충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11～'16) : 16개 시·도 191개소 설치
▪ 연평도 포격사태 발생으로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추진
·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사업('11～'16) : 3개 시·도 189개소 설치

<민방위경보시설운영>
▪ '51. 1 민방공총본부 설치(민방위경보 운영)
▪ '87～92 경보시설 자동화사업 추진(중앙 및 시·도 무선 자동화장비 설치)
▪ '97～'98 경보시설 현대화 용역사업 추진(경보 SW 및 시험장비 개발)
▪ '98～'99 경보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중앙통제소 현대화장비 설치)
▪ '99～'01 경보시설 현대화 확장사업 추진(시·도 현대화장비 설치)
▪ '06～'07 동·남해안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7개 시·도, 157개소)
▪ '10~'13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일제지령 교체 및 고도화 사업 추진
▪ '11~'13 대구 공군 남부전투사령부 내 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구축
▪ '13~'15 정부주요기관 및 중앙방송사 연결장비 교체(25개소 / 방송사8, 주요기관 17)
▪ '14~'16 제1·2경보통제소 다중채널 위성 송출장비 보강 및 노후 위성장비 교체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7~계속(교육훈련), '76~계속(시설장비확충), '02~계속(경보시설운영)
- 사업규모 : 민방위교육훈련 경비 지원, 주민대피시설(13개소), 비상급수시설(6개소),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10만개 보급,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63개소),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591개소),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통제대1, 단말3), 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 등 제1·2경보통제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민방위대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3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1의 3호]
지자체 보조(접경지역)	5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1의 3호]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국고보조율)

사 업 명
6.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3034-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4	500
명칭	재난안전정보화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비상대비정보화	1,925	4,991	4,991	5,451	5,451	5,451	460	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 및 국가주요자원과 비축물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즉각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 전쟁지휘본부의 종합적 상황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
- 비밀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비밀문서 생산·관리·유통의 전자적 보호체계 확립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훈령 제344호)
- 보안업무규정 제21조(국가정보원)

② 추진경위
- ‘05년 : 비상대비업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06~’08년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개발 추진
- ’09년 : 비상대비 자원관리체계 개선방안(BPR/ISP) 수립
- ’10년 :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비상대비자원관리시스템 구축
- ‘15년 : 통합비밀관리시스템(자료관리 공동이용) 구축
  *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국가정보원, ‘13.7월) “국가기밀 보호대책 강구”
- ‘16년 : 비상대비정보(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 ‘17년~ : 단독형 비밀관리시스템·통합비밀관리시스템·비밀유통시스템 통합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 통합비밀관리시스템 보안장비 증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사업규모 :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밀문서업무담당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 419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 421

3. 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 ····· 423

4. 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 427

5.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 ····· 430

6.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 432

사 업 명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14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0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0
명칭	지방자치인재개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운영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환경개선유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환경개선유지	3,849	3,935	3,935	3,970	3,970	3,424	△511	△1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및 교체를 통한 쾌적한 교육시설환경 지원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와 안전성 확보
- 시설에 대한 전문업체 용역 관리를 통한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② 추진경위

- 노후·낙후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및 교체계획 수립('04.3)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본관 리모델링 추진('06)
- 교육부대시설(건강증진센터, 국제교육협력센터 등) 개선공사('07~'08)
- 시설물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옥상방수 등 내·외부 시설개선('09~'11)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행정연수원 전주·완주 혁신도시 이전('13.8)
- 이전 후 직원·교육생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시설 유지관리('14~)
- 전문적·체계적 시설관리 및 연수원 부지에 대한 상생의 숲 조성 등 조경 개선 공사('16)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건물 49,368㎡ 부지 180,383㎡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외국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14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0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1
명칭	지방자치인재개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운영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465	500	500	475	325	325	△175	△3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필요
-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및 지자체의 문제해결능력 향상과 성과창출을 리드하는 지방행정 문야별 전문가 양성을 통해 지역간 인재 불균형 해소

○ 국제교육협력 확대로 한국 지방행정의 국제화 기반 마련
-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 국제교육의 수출효과 기대

○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재 및 안내서 제작 등 자치인재원 교육운영 지원
- 연보, 소식지,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홍보책자(한・영・중), 지방행정지식나눔 e-뉴스레터 제작・발송,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교육훈련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 및 국제교육협력 지원 경비
- 1978. 1. 지방행정연수원 신축 이전(경기 수원시 파장동)
- 2006. 1.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출범
- 2008. 3. 지방행정연수원 개편
- 2013. 8.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전북 완주군)
- 2017. 7.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편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 및 국제교육협력 지원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생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 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14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0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2
명칭	지방자치인재개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운영	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외국지방공무원 교육운영(ODA)	210	252	252	247	247	247	△5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한국의 지방행정발전 및 개발경험 전수를 통해 개도국의 행정·경제 발전에 기여
- 개도국의 지방 및 중앙 고위공무원 역량강화 도모를 통한 지방거버넌스 발전 지원
- 개도국 인적자원개발 및 조직역량 강화, 제도구축 등에 효과적으로 기여
- 친한·지한 인사 확대 및 국가 간 외교·협력관계 증진

① 개도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

○ **몽골 NAOG 교수단 양성과정**

- 배 경 : 주한몽골대사의 요청으로 '02년 몽골 최고의 교육기관인 NAOG와의 교류협력 약정체결이후 매년 과정 운영
- 내 용 : 한국의 지방행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경험공유 등 몽골 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수단 교육(Training of Trainers)을 통해 몽골공무원 및 사회 지도층에 교육효과 파급
- 필요성 : 교육훈련기관간 상호협력, 지방행정 선진국으로서 국가위상 제고 및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조성
- 비용분담 : (수원국) 항공료, (자치인재원) 교육비 및 숙박비 등

○ **몽골 군수역량강화과정**

- 배 경 : '11년 몽골 현지방문교육 시 몽골 부총리 및 내각사무처 장관의 몽골 군수 대상 교육 요청

  ※ '11. 8월 이명박 전대통령 몽골 방문시 몽골 부총리 요청

- 내 용 : 몽골 347개 군의 군수를 대상으로 지방행정·지역개발 관련 연수, 지자체 방문·지방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지방행정특화교육 추진
- 필요성 : 몽골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 대상 연수를 통해 몽골 지역발전에 기여 친한·지한인사 양성 및 우호협력관계 형성으로 우리 정부 자원외교 간접지원
- 비용분담 : (수원국) 항공료, (자치인재원) 교육비 및 숙박비 등

  ※ KOICA의 ODA 초청연수사업이 전액 공여국 부담인 것에 비해 자치인재원 초청연수는 양국 협의에 의해 비용분담

○ **개도국 지방행정과정**

- 배 경 : '00년~'11년 KOICA위탁으로 동 과정 운영(12과정 194명), 기재부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행정교육 분야 전문성을 인정하여 '12년부터 예산편성, 행안부-외교부 업무협약('11. 8.)으로 업무 이관
- 내 용 : 지방행정·재정, 지역개발, 지방 거버넌스, 행정 투명성 등 지방행정 특화교육 및 상호간 행정체제 비교를 통한 수원국 지방행정 발전방안 모색
- 필요성 :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중인 개도국 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을 각 지자체에서 추천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와 연수생 소속기관과의 우호관계 증진지원 및 지자체 국제화 역량강화

② 현지방문교육

- 배 경 : '10년 정부기관 최초로 찾아가는 이집트 현지방문교육 시작, '11년 몽골, '12년 탄자니아, '13년 인도네시아, '14년 몽골, '15년 태국, '17년 몽골 현지 방문교육 실시('17. 9월 페루 현지방문교육 예정)

  ※ 현지정부에서 자국 방문교육 및 교류협력 요청

- 내 용 : 한국의 지방행정, 사회경제 발전경험 공유, 수원국 정책현안 컨설팅 및 워크숍
- 필요성 : 강사수당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원국에서 100명 이상의 공무원을 교육함으로써 대규모 교육실현, 사후관리,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비용분담 : (수원국) 숙박비 등 현지체류비, (자치인재원) 항공료, 강사수당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몽골 NAOG와 교류협력 약정 재개정('17.6월)
- 행안부-외교부 업무협약('11.8월)

② 추진경위

- ‘02. 7. 몽골 NOOG와 MOU 체결 및 교육과정 운영 시작
- ‘03~’17. 몽골 NAOG 교수단 양성과정 17회 219명 연수
- ‘10~’15. 이집트, 몽골,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현지방문교육 1,532명
- ‘13~’17. 몽골군수역량강화과정 4회 53명 연수
- ‘96~’17. 87개국 161개 과정 4,171명 교육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약 1,500명(‘17 ~ ’21)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개도국 지방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 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14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0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2	500
명칭	지방자치인재개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정보화(정보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센터운영(정보화)	192	210	210	210	210	21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사이버교육을 통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및 상시학습체제 지원

- 민원업무, 현장행정이 많은 지방공무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통한 상시학습체제 지원**

○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다양한 학습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무분야별 **다양한 교육기법을 활용한 시의성 있는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 **사이버교육 콘텐츠의 공동활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사이버교육 활성화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8호(2017.1.23)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운영지침(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예규 제1호(2017.8.17.))

② 추진경위

- **「사이버교육센터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04. 9.)**
  - · 지식기반사회의 교육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이버교육센터 수립 추진
  - · 사용자위주의 환경 구축, Blended Learning 지속적 확대,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6개 추진방향, 7개 중점추진과제 선정
-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중·장기 발전전략('07. 6.)**
  - · 사이버 종합학습센터 구축
  - · U-learning(유비쿼터스 러닝) 학습환경 구축
-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구축 및 확충**
  - ·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구축(2005년)
  - ·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보강(2006년)
  - · 공동활용에 따른 시스템 활용률을 극대화와 예산절감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시스템과 통합 ('09. 12.)
-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 콘텐츠개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09. 9.)**
  - · 사이버교육용 콘텐츠 개발방안 수립 및 우선개발 과목 도출
    ※ 지방행정관련 92개 세부업무에 대한 장·단기 개발방안 도출
- **사이버교육용 코스웨어(80개) 개발('05~'16)**
-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개편 및 온라인공개강의(MOOC)서비스 신설('17.1.)**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이용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5.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1432-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0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2	501
명칭	지방자치인재개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정보화(정보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산운영(정보화)	319	886	886	382	286	286	△600	△6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온라인 교육환경 제공으로 효율성 제고 및 교육편의 제공
- 자치인재원 내 전산시스템 개선·유지관리 및 보안체계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② 추진경위

- 1999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개원 이후 최신 정보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원내 행정정보화 사업 계속 추진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전문 교육훈련 기관으로서의 정보화 교육 인프라 구축・유지

▪ 자치인재원 대표 홈페이지 및 도서관 홈페이지 개설 : 1998년
▪ 학사운영을 위한 교육운영시스템 구축 : 1999년
▪ 홈페이지와 교육운영시스템 기능 보강, 노후시스템 교체 및 보안시스템 도입, 자치인재원 전산시설 유지보수 : 2009년~2013년
▪ 자치인재원 업무망·인터넷망 망분리 구축 : 2013년
▪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운영시스템 WEB과 DB서버 분리 : 2014년
▪ 홈페이지 및 역량진단시스템 클라우드시스템으로 전환 : 2015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6.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1433-6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0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원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3	650
명칭	지방자치인재개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7,611	6,080	6,080	6,500	6,500	6,500	420	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운영 지원
- 유료 교육운영을 통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6조,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② 추진경위

- '99년 공무원교육기관에 경영개념과 경쟁시스템 도입을 위해 수입대체경비 운영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유료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장기·기본·전문교육과정 등 총 65과정 90회* 운영

  * 2017년도 교육훈련계획상 교육비를 납입하는 집합교육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무원 및 외국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국 가 기 록 원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국가기록물정리 ····· 435
2. 기록물보존복원 ····· 438
3.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 ····· 440
4.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 443
5.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 ····· 446
6. 기록관리정책 및 교육 ····· 448
7. 기록정보서비스 ····· 451
8. 기록관보존시설관리 ····· 453
9.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연구(R&D) ····· 455
10. 대통령기록관리 ····· 458

사 업 명
1. 국가기록물정리(23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3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물효율적관리	국가기록물정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국가기록물정리	6,681	7,077	7,077	7,495	7,260	8,275	1,198	1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각급 공공기관, 민간·해외분야 중요기록물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양질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 기록정보의 전자적 관리로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체계 확립 및 기록정보 자원화를 통한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동법」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호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제4호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 「동법」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98년 8월 : 정부시책(실업대책)으로 국가기록물관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 1999년 1월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정('00. 1월 시행)
- 2003년 1월 : 일반사업인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으로 전환 추진
- 2008년 1월 : 중앙행정기관 보유 미이관기록물「수집종합계획」수립
- 2008년 10월 : 기록물 정리사업을 국가기록물정리 외주 위탁사업으로 추진
- 2008년~계속 : 중요 정부기록물(보존기간 30년 이상) 258만권 등 수집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공공 및 민간 기관, 국민(취업취약계층 포함)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 기록물보존복원(23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6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물효율적관리	기록물보존복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기록물보존복원	2,757	3,355	3,355	3,358	3,220	3,220	△135	△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수집된 국가 중요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효율적 관리로 기록유산의 온전한 전승 및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 중요 원본 기록물의 훼손에 대한 복원 및 보존처리를 수행하여 원본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대국민 정보 자산 활용을 원활히 지원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1969년 8월 :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 1998년 2월 : 행정자치부로 소속 변경
- 1999년 1월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00. 1월 시행)
- 2004년 5월 : 국가기록원으로 명칭 변경
- 2004년 7월 : 기록물 관리체계 전면적 검토 지시(대통령)
- 2004년 9월 : 기록물관리혁신기획단 행정자치부내 구성 지시(대통령)
- 2004년 10월 : 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단 발족
- 2005년 10월 :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 2006년 2월 :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 국무회의 보고
- 2006년 10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 2007년 4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 2009년 6월 :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수립
- 2012년 8월 : 대전기록관 준공
- 2013년 9월 : 대전기록관 개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공공 및 민간 기관, 학계, 언론,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23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500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관리정보화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국가기록서비스 정보화추진(정보화)	652	702	702	694	552	552	△150	△2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민들이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정보 온라인서비스 기반 및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 장애인 정보접근성 개선 및 IT 신기술 적용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 제고

⇒ 국민중심의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투명한 정부 실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제4조(공무원의 의무) 제2항
  ·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되도록 적극적 노력
-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제1항 제2호
  ·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활용에 관한 사항
-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기술·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제10호 : 웹기록물 관리 조항 신설

< 국가정보화기본법 >

-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 국가기관 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 >

-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활용) 제1항
  ·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교통·복지·환경·재난안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② 추진경위

- 1996년 : 국가기록물관리 전산화·광화일화 기본계획 수립
- 1997년 : 문서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1998년 : 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청각기록물관리 및 정부간행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1999년 : 기록물분류기준표 전산시스템 구축
- 2000년 : 전산장비 증설 및 각종 기록물 S/W개발
- 2001년 : 간행물 전자출판파일 등록관리 S/W 개발 등 시스템 확대 구축
- 2002년 : 기록물관리법 체제로의 S/W 개발
- 2003년 : 대통령 통치사료 통합관리 S/W 개발
- 2004년 : 기록물열람 민원처리 S/W 개발
- 2005년 : 기록물열람민원 인터넷연계 및 문서보안시스템 구축
- 2006년 :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 및「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
- 2007년 : 나라기록포털 서비스 개시 및 기록정보 콘텐츠 추가 개발
- 2008년 : 국민참여형, 교육용 콘텐츠 추가 개발 및 기록정보통합검색 서비스 개시
- 2009년 : 경제위기극복, 교육용 콘텐츠 추가 개발 및 웹접근성 강화
- 2010년 : 모바일서비스 방안 마련, 민간기록 콘텐츠 추가 구축 및 MDR시스템 등 고도화
- 2011년 : 고객친화형 콘텐츠 추가 구축, 스마트폰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개시,
  민간포털과 검색연계 제휴, 웹기록물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 2012년 :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및 스마트폰용 기록정보콘텐츠 추가 구축,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개선 등
- 2013년 : 온라인·모바일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구축, 대표 홈페이지 및
  나라기록포털 등 홈페이지 통합 개편
- 2014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7편, '일제 강제 피해자 명부' 등
  전문콘텐츠 DB 확대 및 서비스
- 2015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6편 구축, 콘텐츠 2편 웹접근성 개선,
  기록정보포털 리뉴얼 및 장비보강
- 2016년 :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신규·확대 6편 구축, 콘텐츠 4편 웹접근성 개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용자 검색 서비스 편의성 증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6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2332-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501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관리정보화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정보화)	3,246	3,862	3,862	4,236	4,036	4,036	174	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으로 기록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적 수행과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 ·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 기능 고도화
  - ·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S/W 기능보강 및 공공기관 확산
  - · 전자기록물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구축을 추진하고
-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보존포맷 변환, 전자서명 장기검증 등 보존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구축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재난대비 복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에 대한 수집·활용방안과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중인 전자기록물의 행정전자서명을 장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존중인 기록물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4년 이후 전자정부, 지식정부로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록관리 패러다임도 전자기록 중심, 활용 위주, 적극적 공개 지향으로의 변화를 요구 받음
- 2005.9 ~ 2006.2월까지 기록관리 전 과정 프로세스·시스템 혁신 ISP 수립
- 2006년 10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면 개정을 법·제도적 기반 마련
- ISP 결과를 반영한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구축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추진 필요
- 2005년부터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과 온-나라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이 구축·확산되어, 이들 포괄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 보급·확산 필요
- 상기 필요성에 따라 2006년부터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사업을 추진함
  - ▪ 기록물관리 S/W 고도화 (2006. 5-12)
  - ▪ 전자기록물 장기검증 시스템 구축 (2007. 4-10)
  - ▪ 전자기록물 분배·통합 및 시스템 기능개발사업(2008. 9-12)
  -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확대사업(2009. 8-12)
  - ▪ 2010년도 기록정보화사업(2010. 6-12)
  -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정보화 사업(2011-2012년)
  -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개편사업(2013-2014년)
  - ▪ 기록물관리시스템 고도화 통합사업(2015-2016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사업규모 : 790여개 기관에 기록물관리시스템 보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기록물관리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5.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2332-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502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관리정보화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구축	2,650	3,339	3,339	2,409	2,161	2,161	△1,178	△3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현 및 기록물 관리의 효율화
- 대통령기록물의 온라인 콘텐츠를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추진
-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활용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 대통령기록물 전직대통령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생산·관리원칙) 및 제8조(전자적 생산·관리)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관) 및 제16조(공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② 추진경위

- ’07.04.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 ’07.11. :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구축 사업 완료
- ’07.11.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설치
- ’08.12. :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웹서비스시스템(대통령기록포털) 운영 시작
- ‘09.~계속 : 연차별 대통령기록포털 콘텐츠 구축 및 유지보수사업 진행
- ’10.08.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4) 및 시행령(8.5) 개정
- ’12.12. : 전직대통령 온라인 열람시스템 구축
- ’13.06. : 제17대 대통령 웹기록 보존 및 서비스시스템 구축
- ’14.12. : 제17대 행정정보데이트세트 구축
- ’14.12. :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재난복구체계 구축
- ’15.12. : 세종 신청사 전산실 및 관제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6. 기록관리정책 및 교육(23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3	300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물효율적관리	기록관리정책및교육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기록관리정책및교육	4,174	970	970	1,031	1,021	1,021	51	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정책홍보 추진으로 국가기록관리 체계 구축 및 내실화
- 기록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기록관리 평가 및 국내외 교류협력
- 기록관리 교육훈련 실시로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 및 기록문화 의식 함양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1969년 8월 :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 1998년 2월 : 행정자치부로 소속 변경
- 1999년 1월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00. 1월 시행)
- 2004년 5월 : 국가기록원으로 명칭 변경
- 2004년 7월 : 기록물 관리체계 전면적 검토 지시(대통령)
- 2004년 9월 : 기록물관리혁신기획단 행정자치부내 구성 지시(대통령)
- 2004년 10월 : 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단 발족
- 2005년 10월 :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 2006년 2월 :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 국무회의 보고
- 2006년 10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 2007년 4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 2007년 7월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년 9월 : 기록관리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행안부 인력개발기획과)
- 2009년 6월 :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수립
- 2011년 2,5월 :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에 따른 전문요원 시험제도 도입
- 2011년 11월 : ICA 본회의(스페인)에서 2016년 ICA 개최지(서울) 확정
- 2013년 6월 : 국가기록관리 3.0 계획 수립
- 2016년 9월 : ICA 서울총회 개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9년 ~ 계속
- 사업규모 : 기록관리 정책기획, 표준·평가·교류협력, 기록관리교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공공 및 민간기관, 학계, 언론,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7. 기록정보서비스(23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10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0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기록정보서비스	1,506	1,441	1,441	1,429	1,369	1,369	△72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소장기록물을 활용한 편찬·콘텐츠 구축 및 기록물 열람·공개 재분류 등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1969년 8월 :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설치
- 1998년 2월 : 행정자치부로 소속 변경
- 1999년 1월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00. 1월 시행)
- 2004년 5월 : 국가기록원으로 명칭 변경
- 2004년 10월 : 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단 발족
- 2005년 10월 :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 2006년 2월 :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 국무회의 보고
- 2006년 10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 2007년 4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 2009년 6월 :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수립
- 2013년 6월 : 국가기록관리 3.0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9 ~ 계속
- 사업규모 : 소장기록물을 활용한 편찬·콘텐츠 구축 및 열람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공공 및 민간 기관, 학계, 언론,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8. 기록관보존시설관리(233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5	302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물보전시설관리	기록관보전시설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록관보존시설관리	7,642	7,857	7,857	8,299	7,464	7,535	△322	△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기록관 청사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운용 및 보안체계 확립을 통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환경 제공
- 기록물의 소독·탈산처리 및 보존서고 종합점검 등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보존환경 유지
- 소관권역 기록물의 수집·정리·등록 및 체계적 관리
- 신속한 대국민 기록열람서비스 제공과 기록문화 확산
- 지역민에게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록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역친화형 기록문화사업 및 전시관 운영, 기록물 대국민 열람서비스 제공
- 기획전시실 구축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 전시를 통해 일반, 학생, 기관·단체, 기록관리 학계 및 연구자들에게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를 목표로 하는 개방형 기록정보 문화서비스 제공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통합방위법 및 관련법령, 경비업법 및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 국가보안목표시설(국정원) 및 국가중요시설(국방부) 관련 지침 등

② 추진경위

- '84. 11. :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개소
- '05. 9. : 국가기록 보존분담체계 및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 '07. 12. : 나라기록관(현 서울기록관) 준공
- '10. 4. : 부산기록관 리모델링
- '13. 9. : 대전기록관 준공, 개관 운영
- '15. 1. :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으로 직제 개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공공 및 민간 기관, 국민(취업취약계층 포함)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9.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연구(R&D)(23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6	301
명칭	기록물관리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연구(R&D)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연구(R&D)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국가기록관리·활용 기술연구(R&D)	-	-	-	800	800	800	8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가 중요기록물*(대통령기록물, 국무회의록 등)의 안전한 후대전승을 위한 과학적 기반의 기록관리기술 연구개발

  * (기록원 소장기록물) 조선왕조실록, 공공기록 9천만건(국무회의록, 총독부문서, 세계기록유산, 지적원도, 판결문 등), 대통령기록 2천만건 등 총 1억 1천만건

- 전자정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기록관리를 위해 전자기록물 생산-이관-장기보존 및 디지털 콘텐츠 활용·개방 등 관련 기술 연구개발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0조의2(보존·복원기술의 연구개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

② 추진경위

- ‘07. 05. :「기록물 보존기술 R&D사업」기본계획 수립
- ’07. 08.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R&D사업 심의 및 타당성 인정
- ’08 ~ ‘17 :「기록물 보존기술 R&D사업」5대 분야*, 87개 연구과제 수행

  * 5대 분야 : 종이기록, 전자기록, 시청각물, 행정박물, 보존환경

- ‘16. 12. ~ ‘17. 04. :「기록보존기술 R&D사업」일몰 적용에 따른 재기획 추진
- ‘17. 04.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R&D사업」기본계획 수립
- ‘17. 05. ~ ‘17. 07.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R&D사업 심의 및 타당성 인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전문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대통령기록관리(2337-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7	304
명칭	기록물관리	기록물효율적관리	대통령기록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대통령기록관리	5,818	7,030	7,030	7,123	7,094	7,094	64	0.9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대통령 기록관리 제도의 정착 및 국정 핵심기록물의 철저한 보호·관리
-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정리·기술·보존·분류체계 확립으로 국민 친화적인 대통령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 대통령기록물 전문 전시관 운영을 통한 양질의 전시서비스 제공
- 대통령기록관의 세종 단독청사 개관에 따른 관련 시설·장비의 안정적인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04. 10월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단’ 구성・운영
- ’06. 2월 :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 수립 국무회의 보고
- ’05. 10월 : ‘대통령기록관리 혁신TF’ 운영(총 13차례, 제정안 등 협의)
- ’06. 12월 : 국가기록원 조직 개편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팀 신설
- ’07. 4월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07.7 시행)
- ’07. 11월 : 대통령기록관 직제 신설(11.30)
- ’07. 12월 : 나라기록관(성남) 준공, 대통령기록관 설치
- ’10. 7월 : 대통령기록관 건립 재개 요청(행복도시건설청)
- ’11. 6월 ~ ’12. 8월 : 대통령기록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3년 4월: 세종시 문화시설지구 내 대통령기록관 건립공사 착공
- ’15년 5월: 대통령기록관 건립공사 준공
- ’15년 11월: 대통령기록관 신청사 이전
- ’16년 1월: 대통령기록관 신청사 개관식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정부청사관리본부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청사시설유지보수 ····· 461

2. 정부청사노후시설 등 정비 ····· 463

3. 청사시설관리 등 위탁 ····· 465

4.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 468

5.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 470

사 업 명
1. 청사시설유지보수(22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0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0
명칭	청사관리	정부청사시설관리	청사시설유지보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청사시설유지보수	24,372	24,376	24,376	46,748	46,748	46,748	22,372	91.8

* 세종청사유지관리 사업 폐지·이관에 따른 증액 : 20,714백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정부청사의 상시적 유지·관리로 시설의 안전성과 내구성 제고
-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및 고객편의 도모
  * 기계, 전기, 건축, 통신장비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후생·공용시설 관리
  * 전기·수도 등 청사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부담금·보험 등 각종 제세 소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② 추진경위 : 정부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개청 이래 계속 추진

※ 청사 준공 : 서울('70년), 과천('82년), 대전('97년), 춘천('03년), 제주('06년), 광주('08년), 대구('12년), 경남('13년), 고양('13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사업규모
  · 서울, 과천, 대전, 광주, 제주, 대구, 경남, 고양, 춘천청사의 상시적인 유지·관리
  · 청사시설 유지와 운영을 위한 전기, 수도, 냉난방 등 공공요금
  · 기계, 전기, 건축, 통신장비의 안정적인 유지 보수
  · 의무실, 회의실, 주차장, 편의시설 등 후생·공용시설 관리, 조경관리 등
  · 임차청사 임차료, 관리·운영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사업 수혜자 : 청사방문고객(민원인), 정부청사 입주공무원

사 업 명
2. 정부청사노후시설 등 정비(2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0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1
명칭	청사관리	정부청사시설관리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정부청사 노후시설등정비	6,535	23,955	26,816	6,186	6,186	6,186	△20,630	△7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과 안전이 저하된 시설물을 교체 및 개·보수하여 성능과 효율, 내구연한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
- 고효율 시설 및 신·재생 에너지 이용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7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 및 제8조
-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및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30호)」

② 추진경위

-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노후된 청사 시설물의 보수 및 연차적 교체
-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에너지 설비) 도입
- 업무 지원시설 확충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사업규모
  - 서울, 과천, 대전, 광주, 제주, 대구, 경남, 춘천, 고양청사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진단 등 법정 수요
  - 정부청사 통신시설 확충 및 에너지 시설 확충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사업 수혜자 : 청사방문고객(민원인), 정부청사 입주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3. 청사시설관리 등 위탁(22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2
명칭	청사관리	정부청사시설관리	청사시설관리등위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청사시설관리등위탁	53,506	103,625	103,625	114,104	111,877	115,755	12,130	11.7

* 세종청사유지관리사업 폐지·이관에 따른 증액 : 10,479백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정부청사의 시설 관리, 청소, 통신, 안내, 조경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전문기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입주기관 및 인근청사 공무원에게 최적의 보육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19호)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06.8.2)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② 추진경위

- 시설, 청소, 통신관리 위탁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개청 이래 계속 추진
- 안내서비스 위탁은 공무원 인력감축 및 정부청사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98.7월부터 중앙청사 시범시행 후 전 청사로 확대
- 조경관리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민간위탁 결정에 따라 '00년부터 시행
- 청사 어린이집 운영은 '9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던 것을 '06년부터 정부청사관리소로 업무 이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사업규모
  - ·세종, 서울, 과천, 대전, 광주, 제주, 대구, 경남, 고양, 춘천청사의 시설관리, 청소, 통신, 안내, 조경 용역
  - ·정부청사 직장보육시설 운영 보조금(서울, 과천, 대전청사 어린이집 등 13개 기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어린이집 운영 및 설치)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사업 수혜자 : 청사방문고객(민원인), 정부청사 입주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어린이집 운영자 (서울여대, 덕성여대, 중앙대, 푸른보육경영, 명희복지재단, 한남대, 광주대, 제주어린이집, 대구과학대, 마산대, 덕성여대, 선정원, 영상대, 대덕대, 건양대, 침신대, 모아맘, 서원대, 남서울대)	50% 이상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사 업 명
4.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22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0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3
명칭	청사관리	정부청사시설관리	창성동별관 재건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	-	-	687	-	687	687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1960년 준공되어 노후가 심하고 내진성능이 미비한 창성동별관(어린이집 입주시설)을 철거 후 재건축하여 정부청사 시설의 안전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 내진보강계획 수립대상)

② 추진경위

- 관련법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계획 수립 및 추진
  ※ 정부서울청사 본관 및 과천청사(3,4동)에 대하여는 기 추진('13~'16년)
- 경주지진('16.9.), 포항지진('17.11.) 등 내진성능 미비시설에 대하여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대두
- 창성동별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17.4.~6.)결과 안전성은 'D등급*', 내진성능은 '붕괴위험**'으로 평가
  * 안전등급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 성능수준(4단계) : 거주가능(IO), 인명안전(LS), 붕괴방지(CP), **붕괴위험(CO)**
- 건물 노후화가 심하여 개보수 보다는 철거 후 신축이 경제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35,979백만원
- 사업기간 : 장기계속사업
- 사업규모(안)
  · 기존 시설 철거
  · 창성동별관 신축: 연면적(10,720㎡) / 지하1층, 지상 3~4층
  · 임시어린이집 설치: 연면적(3,000㎡) / 1~2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사업 수혜자 : 청사어린이집 입소아동, 정부청사 입주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5.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22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0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5
명칭	청사관리	공무원통근버스운행	공무원통근버스운행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공무원통근버스운행	11,729	11,562	11,562	10,561	9,822	9,822	△1,740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대중교통이 불편한 수도권거주 공무원에게 교통편의 제공으로 업무능률 향상
- 자가용 이용 자제를 통한 교통난 및 주차난 완화
- 대기오염 방지 및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
- 정부세종청사 단계별 이전('12~'14)에 따른 출퇴근 편의 제공 등 단계별 정착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추진경위

- 1972년 11월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공무원 사기진작 차원)로 1973년부터 운행
- 1997년 7월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자동차 1,000만대 시대의 교통수요 대처 방안으로 자가용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 2008년 7월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2008-5호)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사업규모
  - ▪ 서울·과천·대전청사 : 총 130대 운행(서울 67대, 과천 30, 대전 28대)
  - ▪ 세종청사 : 총 114대(수도권 43대, 세종권 62대, 기타 9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 사업 수혜자 : 청사 입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이북5도위원회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북한이탈주민지원 ····· 473

2. 이북5도청사시설 개보수 ····· 476

3. 이북도민관련단체 및 행사지원 ····· 478

사 업 명
1. 북한이탈주민지원(15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0
명칭	이북5도	이북도민관련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북한이탈주민지원	545	526	526	530	530	530	4	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고 있으나 남한의 경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사회 부적응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 정착여부가 범국가적 현안으로 대두
-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의 유대강화를 통해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남한사회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 분석
   나.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 이북도민의 실태 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5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2003. 12.: 청와대 이북도민 초청시 대통령 지시사항
  ※ 탈북자의 한국 적응을 위해 도민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 2004. 12.: 이북도민과 가족결연식 개최(69쌍)
- **2005. 3.: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북한이탈주민업무 추가)**
- 2005. 5.: 북한이탈주민 통일학교 개교
- 2006. 2.: 북한이탈주민 전문과정 운영('06년 2과정→'10년 10과정→'17년 14과정)
- 2011. 3.: 북한이탈주민 기업체 연수교육 실시(40명)
- **2012. 4.: 북한이탈주민지원 전담조직(북한이탈주민지원단) 신설**

※ 행안부가 **이북5도청을 중심**으로 고향출신의 탈북자를 **상담**하고 **자주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 1. 31.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

- 2013. 6.: 통일학교 교육관 설치 및 이북무형문화교육과정 신설
- 2015. 3.: 북한사투리 언어교정반 신규 개설

- 2016. 9.: 라인댄스 및 통소연주반 신규 개설
- 2017. 4.: 실생활과정(생활법률, 생활경제, 한자), 국선도, 수지침반 신설 (총 14개 과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840	681	605	578	526

- 기타 : '17년 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 : 30,805명 ※ 자료출처 : 통일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이북5도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북한이탈주민

사 업 명
2. 이북5도청사시설 개보수(15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010	013
명칭					일반 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1
명칭	이북5도	이북도민관련지원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이북5도청사 시설개보수	114	111	111	227	111	111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이북5도 노후 청사('93년 준공)에 대한 유지·보수로 시설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이북5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1993. 9월 준공(지하 1, 지상5층, 대지 8,515㎡, 건축연면적 13,861㎡)
- 2005년 : 청사 정밀안전진단, 승강기 보수공사(80백만원)
- 2006년 : 옥상 방수공사(70백만원)
- 2007년 : 대강당 냉난방공사(205백만원)
- 2008년 : 청사시설물 보수, 지하 다목적 시설, 화장실 개선(378백만원)
- 2009년 : 지하변전실 보수, 노후 위생설비 교체, 열원장비 정비(192백만원)
- 2010년 : 노후 위생 및 냉난방 시설교체, 열원장비 세관, 방충망설치 등(176백만원)
- 2011년 : 냉온수기 교체, 열원장비 세관, 외벽 방수공사 등(176백만원)
- 2012년 : 열원장비 세관 및 노후 냉반방 시설 설비 교체공사(254백만원)
- 2013년 : 열원장비 세관 및 노후된 전원설비 교체공사(189백만원)
- 2014년 : 고효율 변압기 교체 및 노후된 정문 경비실 보수공사(153백만원)
- 2015년 : 고효율 조명등 교체, 소강당 및 노후 팬코일 유니트 교체공사(137백만원)
- 2016년 : 옥상방수공사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 장비교체(114백만원)
- 2017년 : 노후 소방설비, 공기조화기 및 고효율 조명등 교체(111백만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규모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규모	189	153	137	123	111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이북5도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이북5도청사 상주 직원 및 방문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 이북도민관련단체 및 행사지원(15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010	013
명칭					일반 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2
명칭	이북5도	이북도민관련지원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이북도민관련단체 및행사지원	951	860	860	1,022	917	917	57	6.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850만 이북도민의 최대행사인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최 등 도민행사를 지원하여 이북도민의 화합과 단결 도모
- (사)이북도민중앙연합회 등 이북도민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한 통일세력 육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등
  - · 1983년 : 제1회 대통령기쟁탈 이북5도 청년체육대회 개최
    ※ 1999~2001 : 대통령 참석 (그 외 국무총리 참석)
  - · 2008년 : 제1회 통일 미술·서예대전, 통일 백일장·사생대회 개최
  - · 2015년 : 제33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예정(10월 중)
  - · 2015년 : 제8회 통일 미술대전 개최 예정, 제8회 통일 백일장·사생대회 개최(7.18)
-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등 도민단체 지원
  - · 2001년 ~ 현재 :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지원('00. 6월 사단법인 설립)
  - · 2005년 ~ 현재 :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존사업 지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83년 ~ 현재
- 사업규모(최근 5개년도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규모	1,228	1,105	1,050	956	86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이북5도위원회,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 사업 수혜자 : 이북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국비 100%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국비 100%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재난안전교육원운영 ····· 481

사 업 명
1. 재난안전교육원운영(263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7	300
명칭	안전정책	민방위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원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안전교육원운영	1,424	1,725	1,725	2,473	1,725	1,725	0	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재난안전 및 민방위·비상대비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관련 직무능력과 재난대응 역량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 국정과제「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

② 추진경위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안전·안보의식 실천과 전문인력 양성 및 재난대비 전문 연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개원('06. 3. 6)
- 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으로 명칭 변경('11.10.25)
- 국민안전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으로 명칭 변경('14.11.19)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으로 명칭 변경('17.7.26)

※ 재난안전, 민방위, 비상대비분야 교육훈련 확대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교육실적	88개 과정 21,043명	92개 과정 21,628명	96개 과정 28,406명	105개 과정 28,495명	120개 과정 31,334명	122개 과정 57,597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계속
- 사업규모 : '16년 재난안전·민방위·비상대비 교육 122개 과정 57,597명 교육생 수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과학수사감정지원 ····· 484
2.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 487
3.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 ····· 489
4.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 492

사 업 명
1. 과학수사감정지원(25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0	020	023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1	303
명칭	과학수사	과학수사활동지원	과학수사감정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과학수사감정지원	6,679	8,406	8,406	8,245	7,902	7,902	△504	△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범죄수사상 필요한 사체 부검업무의 신속·정확한 수행을 통한 대국민 편의제공 및 시험연구를 통한 감정기술을 개발하고 신뢰성 있는 감정업무 수행
-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과학수사 감정업무 수행을 위한 감정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을 통한 감정의 신뢰성 확립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
-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감정의 신속·정확성 확보를 통한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수사 체계 확립
- 청사 시설물의 보강 및 유지관리를 통한 감정지원 체계 확립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직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별표 1 : 연구형기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동법시행령」제16조 (시험·검사기관의 인정)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 KS A ISO/IEC 17025:2006(ISO/IEC 17025:200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 ISO/IEC 17011 : 적합성평가 - 인정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② 추진경위

- ‘55. 03.25.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족
- ‘93. 03.16. : 국과수 남부분소 개소(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소재)
- ‘97. 06.27. : 국과수 서부분소 개소(전남 장성군 서삼면 소재)
- ‘00. 09.05. : 국과수 중부분소 개소(대전 유성구 화암동 소재)
- ‘05. 11.22. : 국과수 동부분소 개소(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소재)
- ’06. 01.01. :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 ‘10. 08.13.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격
- ‘13. 12.1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원주 이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55 ~ 계속
- 사업규모 : 1 본원, 5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정원 418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25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0	020	023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1	304
명칭	과학수사	과학수사활동지원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6,376	6,847	6,847	5,767	5,140	5,140	△1,707	△2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점차 지능화·흉포화되는 범죄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 감정장비 도입 및 노후 감정장비 교'체로 과학수사 감정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직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별표 1 : 연구형기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동법시행령」제16조 (시험·검사기관의 인정)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② 추진경위

- '55. 03.25.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족
- '93. 03.16. : 국과수 남부분소 개소(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소재)
- '97. 06.27. : 국과수 서부분소 개소(전남 장성군 서삼면 소재)
- '00. 09.05. : 국과수 중부분소 개소(대전 유성구 화암동 소재)
- '05. 11.22. : 국과수 동부분소 개소(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소재)
- '06. 01.01. :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 '10. 08.13.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격
- '13. 12.1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원주 이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55 ~ 계속
- 사업규모 : 1 본원, 5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정원 418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25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0	020	023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2	500
명칭	과학수사	과학수사정보화(정보화)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과학수사정보화 시스템구축	542	754	754	704	704	704	△50	△6.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범죄사건·사고의 국제화·지능화·다양화 추세에 능동적·적극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과학수사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통합유지보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과 지방연구소의 기반정보화 장비구입·운영 및 사이버침입 차단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청사 정보보안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직무)
-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행정형 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의2(연구기획과)제2항제8호
- 전자정부법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3조(업무관리 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운영)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55. 3. 25.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족
- ‘93. 3. 16. : 국과수 남부분소 개소(現 부산과학수사연구소)
- ‘97. 6. 27. : 국과수 서부분소 개소(現 광주과학수사연구소)
- ‘00. 9. 5. : 국과수 중부분소 개소(現 대전과학수사연구소)
- ‘05. 11. 22. : 국과수 동부분소 개소
- ’08. 11. 24. : 기초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09. 12. 26. : 마약류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10. 1. 4. : 감정정보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선사업 완료
- ’10. 8. 13.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
- ’10. 11. 9. : 디지털문서영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10. 11. 16. : 국과수 네트워크 분리사업 완료(現 서울과학수사연구소)
- ’11. 10. 19. : 약독물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11. 10. 20. : 남부분원 이전(부산→양산)
- ’12. 12. 31. : 대량재해희생자신원확인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13. 11. 18.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전(서울→원주, 동부분원 폐지)
- ’13. 12. 15. : 화학물질DB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14. 1. 16. :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개소
- ’14. 11. 17. : 감정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완료
- ’15. 12. 15. : 감정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부검사진관리) 완료
- ’16. 12. 19. :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시범운영 개시(본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계속
- 사업규모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없음

사 업 명
4.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25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0	020	023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3	300
명칭	과학수사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중장기과학수사 감정기법연구개발	5,265	5,943	5,943	5,943	5,943	5,943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법과학 연구 분야를 선도하는 최첨단 과학수사 기술 개발 및 연구를 통한 한국 법과학 감정기술의 고도화 및 선진화 실현
- 감정 결과의 법정 증거채택 확대 및 초기 범죄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인권보호 및 대형재해시의 재산권 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선진국 수준의 법과학 선도국가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직무)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기술표준법 및 ISO/IEC 17025 등 시험검사기관 국제 표준
-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8년 기존 연구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편성 추진 개시
- '10년 차세대 핵심 과학수사 감정기법 개발 과제 선정 및 추진
- '12년 행안부 4대 중점 재정투자 사업관련 연구개발 사업
  ※ ① 안전 대한민국 성공적 정착 (방재기술연구개발 등), ④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 구현(과학수사감정지원 등) 관련
- '13년 법과학연구개발사업,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내역사업 개편
- '16년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공동사업 종료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
  ※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 56. 통합적 재난 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 496

2.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 499

3.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 503

4.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신축(정보화) ····· 507

사 업 명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2036-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57	4		010	015
명칭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6	500
명칭	전자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188,479	203,150	203,150	203,056	203,056	203,056	△94	△0.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범정부 정보자원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이버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
  - ·45개 기관 4만 5천여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24시간×365일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프라의 무중단 서비스 제공(UN평가 1위 목표)
  - ·DDoS 등 사이버 침해 대비, 완벽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이용하는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전자정부법 (법률 제13459호, '15.08.11. 일부개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수립하여 시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11호, '17.7.26.)

제55조(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관리원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구축관리와 보호·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2.10 : 범정부적 전산환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신방안(BPR)수립
- '03. 8 :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로 선정·추진

  ※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인력 등 전산자원의 통합운영을 통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효율성 제고
- '04. 9 :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기본계획 수립·시행
- '05. 2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추진단 발족
- '05.11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출범
- '06.10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4개 국가기관 전산장비 이전사업 완료
- '06.12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추진단 발족
- '07.11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출범
- '07.12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24개 국가기관 전산장비 이전사업 완료
- '08. 2 :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1차 개편(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16. 3 :「책임운영기관(시설관리형)」전환
- '16. 5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 설치
- '16.10 : 국가융합망실무추진단 설치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2036-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6	503
명칭	전자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19,062	20,056	20,056	20,056	16,005	16,005	△4,051	△2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각 기관별, 업무별로 도입·구축되던 전산장비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일괄구매 및 통합구축하여 개별구축 대비 예산절감
- 4차산업의 핵심 동력인 클라우드 기술에 기반한 범정부적 장비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자원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안정성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다

- 국회 예결위 지적사항('07)

· 정부통합전산센터내의 HW 자원 활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등 통합운영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여 기관간 정보자원의 중복 또는 과대 구축이 우려되고 있는 바, 전산장비 수요 부처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제출하도록 하여 동 센터 관련 예산을 통합·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예산편성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정보자원, 전산장비 통합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08년)

· 중앙 간, 중앙-지자체 간, 지자체 간 동일한 정보시스템 사용 및 정보자원 등의 통합으로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할 것('08.3)
· 전산장비 구축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전산장비 통합 등은 조속히 추진('08.7)

- 2017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16. 4 기획재정부)

□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이전된(될)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신규 구축, 기존 정보시스템의 증설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예산 중 HW 및 시스템 SW 구입 예산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신규 HW에 탑재되는 개발 SW를 이관하기 위한 예산, 기타 SW 구입 및 AP개발 예산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

○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예산 요구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기존 장비 활용 가능성, 클라우드 기술의 우선 적용 가능성, 각 중앙관서의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등에 따른 장비 증설 소요 등을 종합 고려

* 노후장비 :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장비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W 및 시스템 SW 구입예산과 기타 SW 구입 및 AP 개발 예산을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 가능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정보화사업
2.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관서가 HW구축과 AP 개발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부통합전산센터장과 중앙관서의 장이 협의한 경우

○ 시스템 SW : DBMS, Web서버, WAS, 서버보안, DB 보안, DB 접근제어, DB 모니터링, 백업 SW, 관제 SW, WAS모니터링, HA용 SW

○ 기타 SW : 시스템 SW이외의 모든 SW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8.8)'09년도 전산자원 구축예산 429억원 센터로 일괄 편성
- ('09.10.7)"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 국무회의 보고
- ('08.10.13)"전산자원의 통합원칙과 기준" 정보화추진실무위 보고
- ('08.12)"범정부 정보자원 연도별 통합계획" 차관회의 보고
- ('09.1)「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국무회의 보고
- ('09. 1 ~ 12)'09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35개 기관, 79개 사업) 추진
- ('09. 8)'10년 전산자원 구축예산 299억원 센터로 일괄 편성
- ('09.11)기관 자원 수요조사 및 통합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
- ('10. 5)중앙부처 정보자원의 통합 관련 근거 법 마련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 ('10. 5)중앙부처 정보화예산 편성·집행지침 개정
  「전 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HW 및 시스템SW의 구입예산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일괄편성·집행」
- ('10.8.31) "범정부 전산자원 통합 사업 추진현황" 장관 보고
- '10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추진(20개 기관 52개 정보화 사업)
- '11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추진(21개 기관 56개 정보화 사업)
- '12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추진(23개 기관 56개 정보화 사업)
- '13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추진(19개 기관 50개 정보화 사업)
- 통합센터 內 클라우드 환경 구축 및 클라우드 전환 본격 추진('13년 이후~)

- ’14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추진(24개 기관 44개 정보화 사업)
- ‘15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추진(22개 기관 46개 정보화 사업)
- ‘16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추진(23개 기관 49개 정보화 사업)
- ‘17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추진 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45개 기관,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2036-5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010	015
명칭					일반공공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6	507
명칭	전자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71,823	83,497	83,497	77,055	77,055	77,055	△6,442	△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4차 산업의 원동력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을 노후장비 통합·교체시 활용하여 기관 간 정보시스템 공동활용 공유기반 마련
  - · 클라우드 및 고성능 서버로의 통합 추진으로 정보자원 사용률 극대화하고, 공개 SW 도입 등 표준화된 제품 도입을 통한 운영비용 및 도입비 절감
  - · 기관 개별 구축·운영 대비 예산절감 및 자원 운영 효율성 제고
- 빅데이터 공통기반 인프라 고도화
  -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범정부 차원의 빅데이터 플랫폼 공동 활용 및 시스템 간 연계 확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 ·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30조의3(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활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관리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수집·관리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정보자원, 전산장비 통합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08년)

> · 중앙 간, 중앙-지자체 간, 지자체 간 동일한 정보시스템 사용 및 정보자원 등의 통합으로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할 것('08.3)
> · 전산장비 구축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전산장비 통합 등은 조속히 추진('08.7)

- 2017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16. 4 기획재정부)

> □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이전된(될)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신규 구축, 기존 정보시스템의 증설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예산 중 HW 및 시스템 SW 구입 예산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신규 HW에 탑재되는 개발SW를 이관하기 위한 예산, 기타 SW 구입 및 AP개발 예산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
> ㅇ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예산 요구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기존 장비 활용 가능성, 클라우드 기술의 우선 적용 가능성, 각 중앙관서의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등에 따른 장비 증설 소요 등을 종합 고려
> * 노후장비 :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장비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W 및 시스템 SW 구입예산과 기타 SW 구입 및 AP 개발 예산을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 가능
>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정보화사업
> 2.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관서가 HW구축과 AP 개발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부통합전산센터장과 중앙관서의 장이 협의한 경우
> ㅇ 시스템 SW : DBMS, Web서버, WAS, 서버보안, DB 보안, DB 접근제어, DB 모니터링, 백업 SW, 관제 SW, WAS모니터링, HA용 SW
> ㅇ 기타 SW : 시스템 SW이외의 모든 SW

② 추진경위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 국무회의 보고('08.10.7)
- "전산자원의 통합원칙과 기준" 정보화추진실무위 보고('08.10.13)
- "범정부 정보자원 연도별 통합계획" 차관회의 보고('08.12)
-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 국무회의 보고('09.1)
- '10년 노후서버 367대 및 관련장비 통합 구축 예산 806억원 편성('09.8)
-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 행안부, 지경부, 방통위 공동수립('09.12)
- '10년 노후장비 통합구축 사업 추진('10.1~12)
- 클라우드 컴퓨팅 시범센터 구축 및 개소('11.1)
- '11년 노후서버 306대 및 관련장비 통합 구축 예산 644억원 편성('10.8)
- '11년 노후장비 통합구축 사업 추진('11.1~12)
- 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추진계획 수립('11.3)
-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 ('11.5, 경제정책조정회의)
-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환경 및 긴급자원 풀 환경 구축('11.3~12)
- '12년 22개 부처 70개 업무 전산자원 통합구축 추진(예산 638억원)
- '13년 20개 부처 67개 업무 전산자원 통합구축(예산 628억원)
- '14년 28개 부처 93개 업무 관련장비 통합구축(예산 727억원)
- '15년 38개 부처 153개 업무 관련 전산자원 통합구축(예산 757억원)

- ‘16년 39개 부처 159개 업무 관련 전산자원 통합구축(예산 762억원)
- ‘17년 39개 부처 178개 업무 관련 전산자원 통합구축 중(예산 835억원)

[빅데이터 공통기반 인프라 고도화]
- 데이터활용기반공통기반시스템(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13)
-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빅데이터 전담조직 신설 및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이관(행자부 → 통합센터)(‘15. 5)
- 빅데이터 분석기반의 공동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고도화 추진(‘15.12)
- 빅데이터 분석기반을 활용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분석 실시(‘16~)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45개 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신축(정보화)(204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2	500
명칭	전자정부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신축	3,422	107,088	107,088	25,920	25,920	25,920	△81,168	△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개별기관에서 운영되는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정보 품질향상, 유관기관·민간기관의 활용성 증대

○ 정보자원 운영 효율성·보안성 극대화 및 신규 투자여력 확보에 기여

※ 경제적 편익 약 9,210억원, 취업유발효과 5,775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4,058억원 등 예상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5.11.)**

○ 제1·2센터(대전·광주) 전산장비 증가(연8.6%, 약2,000대)에 따른 공간부족 해소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② 추진경위

- '10. 9. 감사원 특정감사(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
- '12.06.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운영 계획 보고(국가정보화전략위)
  ※ 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05.11.),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07.11.) 출범
- '13.07.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추진방안 수립(장관 보고)
- '13.12. 제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제3센터 구축계획 반영
- '15.03.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부지로 대구광역시 선정
- '15.11.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예비타당성 조사
  ※ 조사결과 : B/C 1.13, AHP 0.508, 총사업비 4,609억원
- '16.05.17.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 발족(대통령령 제27169호)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4,347억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사업규모 : 연면적 37,710㎡(11,407평) * 대전(31,758㎡), 광주(33,695㎡)
  ※ 전산동(지하 3층) 24,295㎡, 행정동(지상 4층, 지하 1층) 13,415㎡
  ※ 입주장비 : 행정·공공기관 전산장비 초기입주 9,855대(최대 5만여대 입주)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추진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ODA) ····· 510
2. 재난안전연구원운영 ····· 513
3.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 515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운영(정보화) ····· 518

사 업 명
1.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ODA)(27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6	300
명칭	재난관리	재난안전연구지원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ODA)	747	830	830	1,921	1,242	1,242	412	△49.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분야 기술의 이전, 교육을 통하여 협력대상국의 실질적인 재난위험 경감을 도모
-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ODA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의 1(기본정신 및 목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의 2(국가등의 책무)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의 1(기본정신 및 목표)**
> :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의 2(국가등의 책무)**
> : 국가 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② 추진경위

- '05년 이후 우리나라는 총1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의장직(의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수행
- '12년 2월 제44차 태풍위원회 연례총회에서 태풍 와시('11.12.)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장조사를 방재분과에 요청
- '13~'15년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오로시 돌발홍수 예·경보시스템 및 자동 우량경보시설 구축
- '13년 11월, 베트남 및 라오스대상 전문가 파견 재난안전분야 교육
- '14년,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연례회의(5월) 및 통합워크숍(11월)에서 베트남, 라오스 대표단 ODA 사업 요청
- '15년, 베트남, 라오스대상 ODA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 '16년, 베트남, 라오스대상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예·경보시스템 시범구축 사업 완료
- '17년, 베트남, 라오스 대상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예·경보시스템 확대구축 사업 추진중
- '17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ODA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계속
- 사업규모 : 베트남, 라오스 대상 돌발홍수 예·경보시스템 및 자동우량경보시설 구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베트남, 라오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 재난안전연구원운영(27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6	301
명칭	재난관리	재난안전연구지원	재난안전연구원 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안전연구원 운영	2,345	2,915	2,915	3,565	1,957	1,957	△958	△3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연구원 청사·실험시설의 상시적인 유지관리와 근무환경 및 후생·편의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한 청사관리와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제4항(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7조(직무)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1조제2항제10호(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② 추진경위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울산이전 확정('09. 6.)
-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15. 12. 23., 국토교통부)
- 청사 및 방재실험시설 준공('15. 12. 16.)
- 울산 신청사 이전('15. 12. 21.)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사업규모 : 2개 부지 內 3개 건물 관리·운용
  - 부 지: 청사동 부지(19,931.9㎡), 실험시설부지(13,871.5㎡) ※ 부지 간 이격 거리 1.5km정도
  - 건 물: 청사동(4,240㎡), 정보동(2,372㎡), 도시홍수실험동(5,466㎡)
  - 내 용: 관리위탁용역사업, 건물 유지·보수사업, 시설·장비 구매 등 확충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 및 관련업무 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2931-610) (前)재난관리핵심기술개발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610
명칭	국민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재난안전관리업무 지원기술개발(R&D)	-	11,169	11,169	13,869	13,386	13,386	2,217	1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행정안전부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

- (문제해결형) 재난 발생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 책무인 재난안전 분야 문제해결 연구
- (현업적용형) 연구개발 성과활용 주체가 부처·지자체로 재난안전관리 현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활용되는 실용화 기술 연구
- (제도보완형) 연구원 보유 대형 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증실험과 재난원인 조사·분석, 위험도 평가 등 각종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연구
- (재난안전 협업형) 다부처 공동기획 및 부처협업을 통한 효율적 연구로 대형화 복합화 되는 재난 대응을 위한 협업형 재난대응체계 확립 분야 기술개발 연구
- (이슈대응형) 재난안전 국가적 이슈에 대응한 대책 수립과 범부처 재난안전R&D 기술력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연구
- (자연재해대응영향예보생산) 기상현상이 재난에 미치는 예보의 영역을 넓히는 경보기준 및 영향분석을 위한 기술 연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자연재해대책법」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운영 등)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자연재해대책법」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자연재해대책법」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재해구호법」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 사업 추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2조(지진・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② 추진경위

- ‘국공립연구소 R&D 지원사업 정비 방침(미래부)’에 따른 ‘재난관리핵심기술개발’ 신규 개편 실시(‘17, 부처 직접수행사업)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포함(‘17)
- ‘국정과제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포함(‘17)
-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재난재해과학기술 역할강화 3개년 실천전략, 재난과학기술 10개년 로드맵, 물관리협의회, 지진방재 종합대책, 다부처공동사업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계속(기관지원형 주요사업 성격)
- 사업규모 : 6개 내역 10개 세부내역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정부, 지자체 등

사 업 명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운영(정보화)(3036-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6	500
명칭	재난안전정보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운영	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국립재난안전 연구원전산운영	549	481	481	1,700	1,634	1,634	1,153	23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연구원 청사('15.12.21.이전) 전산실의 유지관리로 행정 및 연구 업무를 위한 안정적인 전산기반 확보
- 국정과제 추진 및 재난안전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전산지원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용 관련 기능개선 및 DB 현행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운영 및 유지관리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관리)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8(안전지수의 조사·공표)

② 추진경위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운영 및 유지관리 >

- 2015.12.: 연구원 울산 이전 및 전산실 구축
- 2016. 1.: 신청사 전산실,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운영 유지관리 시작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 2013. 5.: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지도구축 기본계획 수립
- 2013. 7.~12.: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1단계 구축
- 2014. 상·하반기: 안전지도 확대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공개
  * 4대 분야(재난안전, 교통안전, 치안안전, 맞춤안전) 15개 시군구 대국민 서비스 공개('14.9.30)
  * 4대 분야(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사고안전) 115개 시군구, 추가(4대분야) 시범 시군구(15개) 공개('15.1.26~)
- 2014. : 안전지수 지자체 1단계 운영·검증('14년 5월), 14년 개발 시스템 운영 및 검증('14년 11월)
- 2015.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본격운영 및 안전지도서비스 확대·시행

- 2015. 3.: 안전모니터봉사단'생활안전지도 기반 신고서비스'공개
- 2015. 7.: 지역안전지수 2개 분야 및 안전신고정보 서비스 대국민 공개
- 2015.11.4.: 지역안전지수 7개 전 분야 대국민 공개
  * 지역안전지수 7개분야 :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 2016. 1.: 생활안전지도 4대 분야 전국 공개 및 추가 4대분야 현행화
- 2016.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신규서비스 확대 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사업 수혜자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민주화지원 및 과거사정리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운영>

1.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 522
2. 과거사관련사업지원 ····· 528
3. 제주4·3평화재단 지원 ····· 533
4.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 536

<강제동원 진상규명>

5.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 ····· 539
6.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보상금) ····· 541

<민주화관련자 명예회복>

7.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 54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 545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 547

사 업 명
1.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24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0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운영	1,001	805	805	1,291	1,291	1,291	486	60.4

※ 대일항쟁기 부서운영비(507백만원) 이관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의 원활한 마무리와 과거사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

○ 지원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정부는 제주4 · 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0. 1. 12 : 제주4·3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6117호)
- ‘00. 3. 3 :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설치(행정자치부 산하)
- ‘00. 8. 28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발족
- ‘00. 9. 7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발족
- ‘01. 1. 17～ ’03. 10. 31 : 제주4·3진상보고서 기획단 운영
- ‘01. 7 : 희생자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및 심의기준 제정
- ‘03. 3. 29 : 제주4·3관련사업 등 대정부 건의 (7개항)
- ‘07. 1. 24 :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 제8264호)
- ‘14. 3. 2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공포
  - “4·3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매년 4.3.) 지정

-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 접수('00.6.8(1차신고시작)~'14.5.23(5차신고종료)) : 76,513명(희생자 15,483, 유족 61,030)
  • 결정('02.11.10(제5차전체위)~'14.5.23(제18차전체위) : 73,456명(희생자 14,231, 유족 59,225)
  ※ 5차 추가신고 희생자 중 일부 건에 대하여 추가자료조사 및 심의 중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

○ 지원근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4. 3. 5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 '04. 6.29 : 노근리사건 특별법 시행령 제정
- '04. 8.25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중앙위) 구성
- '05. 5.23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2차 중앙위)
  ※ 희생자 218명(사망150, 행불13, 후유장애55), 유족 2,170명
- '07. 3.22 : 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 확정(제4차 중앙위)
- '08. 6.11 : 노근리 평화공원 착공
- '08.12.12 : 노근리사건 추가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6차 중앙위)
  ※ 희생자(후유장애) 8명, 유족 70명
- '11.10.27 : 노근리 평화공원 준공
- '11.~현재 :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희생자 위령사업 실시

<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위원회 >

○ 지원근거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 관리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96. 1. 5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 '96. 4.19 : 거창사건등 처리지원단(위원회 간사조직) 설치

- '96. 5.11~7. 4 : 유족등록 신청・접수
- '98. 2.17 :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개최(사망자 934명, 유족 1,517명)
- '98. 8. ~'04. 4. 2 : 거창 합동묘역 조성(162,140㎡, 193억원)
- '99. 2. ~'04.10.12 : 산청・함양 합동묘역 조성(84,780㎡, 136억원)
- '05 ~ 현재 : 조성된 합동묘역 관리 운영, 희생자 위령사업 실시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 >

○ 지원근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조(목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추진경위

- '00.1.1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 '00.4.22 사무지원기구「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설치
- '00. 8. 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구성(9인)
- '04.3.27 동법 개정
- '05.4.15 동법 시행령 개정(생활지원금 지급 근거규정 등 신설)
- '07.1.26 동법 개정(민주화운동의 시기변경, 기지급치료비 등 신설)
- '07.10.31 동법 시행령 개정
  ・생활지원금, 기지급 치료비 신청접수 : '07.10.31 ~ '08.4.30
- '15. 12. 민주공원 조성사업 완료
- '16. 6.30 접수 13,369건에 대한 심의완료
- '16. ~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관리·운영

< 진실화해지원과 운영 >

○ 지원근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7542호)

○ 추진경위

- '05. 5.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정
- '05. 12. 1 : 위원장・위원 임명 및 위원회 업무 개시
- '06. 4. 25 : 진실규명 신청사건 최초 조사개시

- ‘10. 6. 30 : 진실규명 사건조사 종료

※ 진실규명 사건처리 결과(조사대상 11,175건 처리 완료)

총계	진실규명	진실규명불능	각하	취하	이송	중지
11,175	8,450	528	1,729	351	97	20

- ‘10. 12.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발간
- ‘10. 12.31 : 위원회 활동 종료
- ‘11. 4. 1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내 ’진실화해지원과‘ 신설, 행안부 소관 후속조치 (임시유해안치시설 관리,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등)

< 이행·송무관리과 운영 >

○ 지원근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11494호)

▪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추진경위

- ‘04. 3.22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 ’05. 5.31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및 업무 개시
- ‘06.12. 6 : 제1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해당자 106명 발표
- ‘07. 8.27 : 과거사관련위원회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 ‘07. 8.27 :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처리기획단 출범
- ‘07.12. 7 : 제2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해당자 195명 발표
- ‘08. 1. 8 :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 ‘08. 5.29 :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정부이행 기본계획 조정
- ‘09.11.27 : 제3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해당자 705명 발표
- ‘09.11.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발간
- ‘09.11.30 : 일제강점하 관련 위원회 활동 종료
- ‘10. 3. 1 : 과거사권고사항처리기획단 내 ’송무관리과‘ 신설, 행안부로 이관된 쟁송 업무 계속 수행
- ‘16. 3. 7 : 송무관리과+이행관리과→이행·송무관리과로 통합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8년~계속
- 사업규모 : 제주4.3위원회,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등 과거사관련위원회 운영지원, 진화위 권고사항 이행관리, 위원회 결정 관련 소송사건 처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제주4.3사건, 민주화운동 등 희생자 및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10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2조제5항, 제34조 및 제36조제1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항 등

사 업 명
2. 과거사관련사업지원(24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1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과거사관련사업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과거사관련 사업지원	3,043	2,958	2,958	3,038	2,970	3,654	696	2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 및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 “4·3사건희생자추념식”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화합에 이바지
- 노근리사건, 거창사건등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으로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
- 노근리 평화공원, 거창사건등 추모공원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적극 지원으로 역사적 진실규명의 차질 없는 수행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천시에 조성된 민주공원(묘역)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

① 법령상 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

>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9조

>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0. 1. 12 : 제주4·3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6117호)
- ‘00. 3. 3 :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설치(행정안전부 산하)

- ‘00. 8. 28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발족
- ‘00. 9. 7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발족
- ‘01. 1. 17～ ’03. 10. 31 : 제주4·3진상보고서 기획단 운영
- ‘01. 7 : 희생자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및 심의기준 제정
- ‘03. 3. 29 : 제주4·3관련사업 등 대정부 건의 (7개항)
- ‘07. 1. 24 :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 제8264호)
- ‘14. 3.2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공포
  - “4·3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매년 4.3.) 지정
-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 접수(‘00.6.8(1차신고시작)~’14.5.23(5차신고종료)) : 76,513명(희생자 15,483, 유족 61,030)
  - 결정(‘02.11.10(제5차전체위)~’17.25(제21차전체위) : 73,658명(희생자 14,232, 유족 59,426)

<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

① 법령상 근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정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4. 3. 5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 ’04. 6.29 : 노근리사건특별법시행령 제정
- ’04. 8.25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중앙위) 구성
- ’05. 5.23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 결정(제2차 중앙위)
  ※ 희생자 218명(사망150, 행불13, 후유장애55), 유족 2,170명
- ’07. 3.22 : 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 확정(제4차 중앙위)
- ’08. 6.11 : 노근리 평화공원 착공
- ’08.12.12 : 노근리사건 추가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6차 중앙위)
  ※ 희생자(후유장애) 8명, 유족 70명
- ’11.10.27 : 노근리 평화공원 준공
- ‘11.～현재 :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희생자 위령사업 실시

< 거창사건등 추모공원 관리운영 >

① 법령상 근거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 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6. 1. 5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공포
- ’96. 4.19 : 거창사건등처리지원단(위원회 간사조직) 설치
- ‘96. 5.11～7. 4 : 유족등록 신청・접수
- ‘98. 2.17 :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개최(사망자 934명, 유족 1,517명)
- ’98. 8.～ ’04. 4. 2 : 거창 합동묘역 조성(162,140㎡ 193억원)
- ’99. 2.～ ’04.10.12 : 산청・함양 합동묘역 조성(84,780㎡ 136억원)
- ‘05.～ 현재 : 합동묘역 관리 운영, 희생자 위령사업 실시

< 민주공원 운영 >

① 법령상 근거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1.7 : 민주공원(묘역) 조성사업 결정(제24차 민주화본위원회)
- ‘07.12 : 민주공원(묘역) 조성사업 부지확정
- ‘11.10 : 민주공원 기공식
- ‘15. 12. : 민주공원 완공
- ‘16. ~ : 민주공원 관리 · 운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사업규모 :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 및 희생자·유족 관리, 노근리 평화공원(132,240㎡) 관리운영, 거창사건 추모공원(162,140㎡) 관리운영, 산청·

함양사건 추모공원(84,780㎡) 관리 운영, 민주공원(150,128㎡) 관리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영동군), 경상남도(거창군, 산청군), 경기도(이천시)
- 사업 수혜자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거창사건등(거창사건,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및 유족,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3조

사 업 명
3. 제주4·3평화재단 지원(24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3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제주4·3평화재단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제주4·3평화재단 지원	5,810	3,000	3,000	5,380	5,380	5,560	2,560	8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추모사업, 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화해와 상생의 제주4 3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추가 진상조사 및 각종 문화학술사업, 평화교류사업, 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4·3평화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지원
- 제주4·3 7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기념행사 추진
- 4·3희생자 발굴 유해('06~'10)의 장시간 경과에 따른 산화·부식 등 훼손 우려,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해원하여 화해와 상생, 미래지향적 국민통합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제주4.3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 5. 그 밖의 위령 관련 사업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해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부의 출연이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기금의 출연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는 재단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 2.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 3.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4.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 5. 그 밖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법인의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00. 1.12 :「4·3사건법」제정공포(법률 제6117호)
- '00. 3. 3 :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설치
- '00. 8.28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발족(국무총리 소속)
- '01. 1.17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설치
- '02. 3.14 : 제주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의결(4 3위 제4차전체회의)
- '01년 ~ '03년 : 제주4·3평화공원 1단계사업 추진(112억원, 부지매입・위령제단 등)
- '03.10.15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확정
- '04. 3. 9 : 제주4·3평화공원 조성 2단계사업계획 의결(4·3위 제9차전체회의)
- '04년 ~ '08년 : 제주4·3평화공원 2단계사업 추진(480억원, 평화기념관·위패봉안관 등)
- '07. 1.24 :「4·3사건법」개정, 제주4·3평화재단 설립근거 마련
- '07. 10.8 : 평화재단 설립관련 심의(4·3위 제14차전체회의)
  ※ 설립기금(500억원) 대신 매년 20억원 이상을 사업비로 지원결정
- '08.10.14 : 제주4·3평화재단 설립허가(행정안전부 장관)
- '11. 1.26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계획 변경의결(4 3위 제16차전체회의)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 조정의결(401억원 → 120억원)
- '14. 3.2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공포
  • "4·3희생자 추념일" 법정기념일(매년 4.3.) 지정
- '16. 5.29 :「4·3사건법」개정(법률 제14189호)
  •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관련 재단에 자금 출연의 법적 근거 마련
- '13~'16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추진(120억원, 평화교육센터 및 어린이체험관 등)

※ 100대 국정과제 : 제주4·3문제 해결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 사업규모 :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제주4 3 70주년 기념사업 1식, 제주4·3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 사업 수혜자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등 제주도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24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4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조성	-	-	-	1,000	1,000	1,000	1,0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진화위('10.12 활동종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유해발굴과 안장을 대통령과 국회에 건의 및 정부에 이행권고('10.12)한 사항 이행

※ 진화위(1,617구) 및 유족회(483구)발굴 유해 총 2,100구, 추모의집(1,696구)등 4곳 임시 안치중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으로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해원, 과거상처를 치유 극복하여 국민통합과 화해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2조 제5항, 제36조
  - * (제32조 5항)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제36조)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및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진실화해위원회 정책권고(B.H, 국회, '10.12.28.)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진실화해위원회》

- '06.12. 유해매장 추정지 168개소 중 39개소 우선 발굴대상지 선정
- '07 ~ '09 전국 13개 유해매장 추정지 유해 발굴
  - * 유해 1,617구와 유품 5,600점 발굴(충북대 임시 안치, '16.8월 세종시 추모의 집으로 이전 안치)
- '10. 4.15. 진실화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위령시설 후보지(망향의 동산) 선정
- '10. 6~7. 전국유족회간 부지면적 및 구성 협의
  - * 전국단위위령시설 필요성은 공감, 부지 협소문제로 유족회와 협의 안됨
- '10.12.31.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 종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유해발굴과 안장*을 BH와 국회에 건의 및 정부에 이행권고('10.12.)
  - * 진화위(1,617구) 및 유족회(483구) 발굴 유해 총 2,100구, 세종시 추모의집

(1,696구) 등 4곳 임시 안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 '11. 4. 1.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출범
- '11. 6.13.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 시 전국단위위령시설 조성 추진의지 표명(행안부 장관)
- '11.11. 7. 국회 행안위 예산심사 시 전국단위위령시설 조성 추진의지 재표명(행안부 장관)
- '11.12월 진실화해위원회 정책권고사항 이행방안 방침(위령시설 조성사업 우선 추진, 추가 유해 발굴은 안장시설 건립 후 추진) 결정(5차 과거사심의위)
- '12. 2. 6.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 시 전국단위위령시설 조성 추진의지 3차 표명(행안부 장관)
- '12. 4.~8.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 방안연구』 용역실시
  ※ 용역 보고서에서는 사업비를 518억원으로 산정
- '13. 6. 7.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사업 추진방안 결정(안행부 장관)
- '13. 6.13.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실무위원회』에 추진방안 보고
- '15. 4. 위령시설 조성 추진방안 확정(6차 과거사심의위)
  ※ 용역보고서상 산정된 사업비(518억원)는 조정필요 의견(기재부 등)
- '16. 8. 9. 위령시설 조성계획(안) 마련(위령시설조성 자문위*)
  ※ 사업부지(대전 동구 낭월동 집단희생지 일원) 선정, 295억 수준으로 사업규모 조정
  * 유족대표(11명), 전문가(11명),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등 총 23명
- '16.10. 조성계획 확정(8차 과거사심의위)
  ※ 후보지 확정후 기본계획용역을 통한 사업규모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검증 필요(기재부 의견)
- '16.12~'17.7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기본계획 연구(공간구상, 수요예측, 타당성 조사 등)
- '17. 7.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16.11.29 ~ '17.7.4)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95억원
- 사업기간 : '18년~'20년
- 사업규모 : 조성면적 110,000㎡(추모관, 전시교육관, 관리사무소, 주차장, 유적공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및 유족

사 업 명
5.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24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2	300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강제동원진상규명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대일항쟁기강제동원 조사지원및운영	6,462	4,594	4,594	4,494	3,997	3,997	△597	△1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대일항쟁기에 강제동원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 및 피해조사를 통해 역사의 진실규명과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② 추진경위

-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후속조치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04.03.05)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발족('04.11.10)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정('07.12.10)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발족('08.06.18)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08.09.01～)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0.03.22～)
-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유골봉환, 해외추도, 역사관건립, 재단설립지원사업을 통해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 도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사업규모 : 강제동원피해조사 명부분석 및 사할린 한인 유골봉안 및 해외 추도사업 추진,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지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위탁운영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사업 수혜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및 그 유족 등

사 업 명
6.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보상금)(24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2	302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강제동원진상규명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보상금)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보상금)	7,964	6,440	6,440	5,796	5,796	5,796	△644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대일항쟁기에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진상을 규명하고 위로금등 지원을 통해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② 추진경위

-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후속조치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04.03.05)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발족('04.11.10)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정('07.12.10)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발족('08.06.18)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08.09.01～)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0.03.22～)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계속
- 사업규모 :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및 그 유족 등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및 그 유족 등

사 업 명
7.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24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 보상지원단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3	300
명칭	민주화지원 및 과거사정리	민주화관련자명예회복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지원	1,647	2,062	2,062	1,130	1,130	1,130	△932	△4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 상이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 1년 이상 해직자 등 그간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3.6.4.제정, '13.12.5.시행)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3.12.5. 시행)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1조(보상금), 제22조(생활지원금), 제23조(의료지원금)에 따른 보상금
  - · 동법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 동법 제16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에 따른 관련재단 지원
  - · 동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과 영 제7조(위원회의 사무직원)에 따른 위원회 및 '지원단' 운영

② 추진경위

- 법 제정 배경: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관련자 등의 명예회복·보상으로 인권신장,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제정
  - * '79.10.15.~20. 부산·창원(마산)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원발의
  - * 조경태 의원안('12.10.18), 이진복의원안('12.11.2), 설훈의원안('12.11.12), 행정안전위원회 대안('13.2.27)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시행('13.12)
- 2014.10.6.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위촉, 2014.10.13. 출범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실·피해 등 신고접수/처리 : 총 195건/194건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사 업 명
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24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4	300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지원	5,272	16,744	16,744	27,721	27,721	29,221	12,477	7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3조(기념사업)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1. 6.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정
- '01.10.24 박형규 이사장 임명(초대)
- '01.10.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시행
- '02. 1.2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출범식
- '04.11.22 함세웅 이사장 임명(2기, 3기)
- '07. 6.10 제20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기념행사 개최(국가기념일 제정)
- '10.12.24 제4기 이사회 출범(정성헌 이사장 임명)
- '13. 6.10 제26주년「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기념행사 개최
- '14. 2.14 박상증 이사장 임명(5기)
- '14. 5.15 제5기 이사회 출범
- '17. 6.05 최형술(지선 스님) 이사장 취임(6기)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업규모 :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포함한 전국민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지분취득(직접)
- 사업시행주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사업 수혜자 :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포함한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4조

사 업 명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24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5	300
명칭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4,200	5,343	5,343	3,094	3,094	3,494	△1,849	△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2.28민주운동기념사업 >

-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최초의 민주운동인 2·28민주화운동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홍보 및 기념사업을 지속 추진

<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통해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차 보상 추진 중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 >

-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민주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사업 추진
-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정신의 보편적 담론 형성을 위한 연구·토론기반 형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2·28민주운동기념사업≫

○ 지원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민주화운동 종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추진경위
- 2·28민주운동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운동 기도에 대항하여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투쟁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대표적인 저항운동으로
- 2·28학생의거가 불씨가 되어 3・15마산의거, 4・19혁명으로 이어져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민권 민주주의를 완성함

- 1962년 명덕네거리에 2・28학생의거기념탑을 건립
- 2000년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설립
- 2004년 舊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2・28민주운동기념공원 조성
- 2005년 12월 대구시 2・28민주운동기념조례 제정
- 2010년 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으로 제2조 민주운동 정의에 2・28민주운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임을 반영
- '10년부터 '11년까지 국비 80억원을 지원받아 '13. 2월 기념회관 개관
- 2014년부터 기념사업비를 지원 받음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 지원근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기념사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정지원)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 추진경위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제정 : '90.8.6.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정 : '95.12.21.
- 제24회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 '04.5월
- 문화중심도시 사업설명회 광주방문시 대통령 지원약속 : '04.11월
  -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명예회복 및 보상중심으로 이루어지던 5·18기념사업에 대해 '05년부터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 세계화 및 후세대에 대한 역사교육등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위주 사업으로 확대 추진
- 법개정(제5차)에 따른 6차 보상·추가신청 및 접수실시 : 06.3.24.
- 연행구금자 명단발표(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 '07.7월
-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 '11.5.25.
  - ・5・18아카이브를 설립 결정
-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인증서 전달 : '11.9.5.
- 5・18아카이브 구축사업 추진 : '12.1월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 및 보상추진 : '14.12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

○ 지원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6년도 국회 예결위 소위('06.12)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5.18기념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업비 예산을 '07년도에 신규 증액 반영

□ 주요내용

< 2.28민주운동기념사업 >

- 사업기간 : 2015 ~ (계속)
- 사업규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 기념사업회 활성화사업, 교육·문화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구광역시,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사업 수혜자 : 학생, 시민, 기념사업회 회원 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10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 사업 수혜자 : 5·18민주화운동 유족 및 당사자, 국민 전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10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 >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규모 : 부산 및 경남 시(도)민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사업 수혜자 : 시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Ⅱ. 지역발전특별회계

1. 세　　출

지방자치분권실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 555

2.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 557

사 업 명
1.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1148-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8	304
명칭	지방행정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제주)	30	30	30	30	30	3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자원봉사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0조

② 추진경위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참여인원 증가 촉진 등 기반 구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05.8) 및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다변화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6월
사업비(백만원)	130	50	50	30	30
자원봉사자 실인원(천명)	51	58	72	84	26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지역내 자원봉사자 다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122번

사 업 명
2.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1131 - 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경제발전 계정	010	013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지방자치분권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16,685	16,685	16,685	16,685	16,685	16,685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율통합지자체 국고보조금 지급 ※ **의무지출 사업**
-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인 창원시 및 청주시의 지역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동력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등*

* 통합 직전연도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100을 10년간 추가로 지원하여야 함(특별교부세로 3/100 교부, 국고로 3/100 보조)

② 추진경위

- 2009. 8.26 :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 발표(통합지자체 재정지원)
- 2010. 3. 2 :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정
- 2010. 7. 1 : 통합 창원시 출범 및 5개 구청 출범
- 2010. 10.1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 2013. 1.23 : 충북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정
- 2013. 5.28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부칙 제3조에 2015. 1. 1 이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 신설
- 2014. 7. 1 : 통합 청주시 출범 및 4개 구청 출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6,685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24년

※ 통합 차년부터 보조금을 10년간 지급(창원 : 2011년 ~ 2020년 / 청주 : 2015년 ~ 2024년)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창원시, 청주시)
- 사업 수혜자 : 창원시, 청주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등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특수상황지역 개발 ····· 560
2. 지역균형발전 추진 지원 ····· 562
3. 특수상황지역 개발(제주) ····· 564
4. 접경권 발전지원 ····· 566
5. 지역공동체일자리 ····· 568
6. 지역공동체일자리(제주) ····· 571
7. 지역공동체일자리(세종) ····· 574
8. 위험도로구조개선 ····· 577
9.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 579
10. 섬발전 협력사업 추진 ····· 581

사 업 명
1. 특수상황지역 개발(12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생활기반 계정	010	013
명칭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0
명칭	지역발전	특수상황지역 개발	특수상황지역 개발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특수상황지역 개발	187,127	187,486	187,486	187,705	187,705	187,705	219	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남북분단 및 도서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
- 지역의 부존자원, 관광자원 등을 발굴, 특화된 개발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1호

② 추진경위

- 각 부처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10년부터 통합사업 추진
  · 대상 : 접경지역 15개 시·군, 도서지역 19개 시·군·구 185개 도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계속
- 사업규모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15개 접경지역 및 185개 도서지역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사 업 명
2. 지역균형발전 추진 지원(12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경제발전계정	010	013
명칭					일반 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2
명칭	지역발전	광역경제권추진지원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역균형발전 추진지원	169	190	190	200	181	181	△9	△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행정안전부(지역발전과) 소관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사업관리·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사항('06. 3. 28 살기좋은 국토공간 만들기 국정과제회의)

※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균형발전 일반에 관한 집행적 지원을 할 것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계속
- 사업규모 : 연 2~3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사업 수혜자 : 지자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 특수상황지역 개발(제주)(1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제주특별자치도계정	010	013
명칭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1
명칭	지역발전	특수상황지역 개발(제주)	특수상황지역 개발(제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특수상황지역 개발(제주)	2,274	1,915	1,915	1,915	1,696	1,696	△219	△1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도서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 도모
- 지역의 부존자원, 관광자원 등을 발굴, 특화된 개발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1호

② 추진경위

- 각 부처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10년부터 통합사업 추진

· 대상 : 개발대상도서 7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계속
- 사업규모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7개 도서지역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사 업 명
4. 접경권 발전지원(12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경제발전 계정	010	013
명칭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0
명칭	지역발전	접경권 발전 지원	접경권 발전 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접경권 발전 지원	27,438	28,886	28,886	30,336	28,336	29,836	950	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장기적 국토의 미래성장축으로 육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

② 추진경위

- 초광역권 개발 추진구상 발표(지역발전위, '08.12.15)
  ※ 대외 개방형 국토 신성장축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 접경권(안행부) 및 동·서·남해안권(국토부) 등 4개 권역
-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 연구용역
  ※ 국토연구원 : '08.11.28～'09.11.27(837백만원)
-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 보고('09.12.2)
  ※ DMZ, 접경권 일원을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육성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확정('11. 6.30)
- 지역공약(경기, 강원)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 포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2030
- 사업규모 : 접경권 3개 시 도 15개 시 군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행정안전부장관
- 사업 수혜자 : 접경지역(3개 시·도 15개 시·군)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사 업 명
5. 지역공동체일자리(3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생활기반 계정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3131	300
명칭	일자리지원	지역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일자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역공동체일자리	29,033	27,216	27,216	33,621	33,621	33,621	6,405	23.5

* '16년부터 마을기업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일자리 창출

※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② 추진경위

< 지역공동체일자리 >

- (2009~2010년) : 글로벌 경제위기에 의해 악화된 국내 고용사정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희망근로사업 실시
- (2011~2012년) :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2013~2016년) : 국가시책·지역발전과 연계한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정착·확산함에 초점
- (2017년) : 단순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지속적·공동체적 마을일자리로 정체성 확립에 초점

< 마을기업 육성사업 >

-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추진(184개 선정지원)
- (2011년) '마을기업'으로 명칭 변경(483개 마을기업 선정 지원)
- (2012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지원(누계 788개)
- (2013년) 국정과제(No.2-7-105-7) 선정(지역공동체 활성화 → 각종 공동체발전사업 추진)
- (2016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지원(누계 1,446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15년부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16년부터 마을기업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사업규모 : 지역공동체일자리 0.9만명, 마을기업 322개 육성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지역공동체 일자리 : 취업 취약계층(만18세 이상인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마을기업 : 마을 주민 주도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마을 단위 기업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 업 명
6. 지역공동체일자리(제주)(3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3131	300
명칭	일자리지원	지역일자리창출(제주)	지역공동체일자리(제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지역공동체일자리(제주)	370	342	342	398	398	398	56	16.4

* '16년부터 마을기업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일자리 창출

※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② 추진경위

< 지역공동체일자리 >

- (2009~2010년) : 글로벌 경제위기에 의해 악화된 국내 고용사정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희망근로사업 실시
- (2011~2012년) :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2013~2016년) : 국가시책·지역발전과 연계한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정착·확산함에 초점
- (2017년) : 단순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지속적·공동체적 마을일자리로 정체성 확립에 초점

< 마을기업 육성사업 >

-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추진(184개 선정지원)
- (2011년) '마을기업'으로 명칭 변경(483개 마을기업 선정 지원)
- (2012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지원(누계 788개)
- (2013년) 국정과제(No.2-7-105-7) 선정(지역공동체 활성화 → 각종 공동체발전사업 추진)
- (2016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지원(누계 1,446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 '15년부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 '16년부터 마을기업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사업규모 : 지역공동체일자리 75명, 마을기업 8개 육성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 지역공동체 일자리 : 취업 취약계층(만18세 이상인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 마을기업 : 마을 주민 주도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마을 단위 기업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 업 명
7. 지역공동체일자리(세종)(3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3131	300
명칭	일자리지원	지역일자리창출(세종)	지역공동체일자리(세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역공동체일자리(세종)	249	310	310	313	313	313	3	1.0

* '16년부터 마을기업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일자리 창출

※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② 추진경위

< 지역공동체일자리 >

- (2009~2010년) : 글로벌 경제위기에 의해 악화된 국내 고용사정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희망근로사업 실시
- (2011~2012년) :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2013~2016년) : 국가시책·지역발전과 연계한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정착·확산함에 초점
- (2017년) : 단순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지속적·공동체적 마을일자리로 정체성 확립에 초점

< 마을기업 육성사업 >

-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추진(184개 선정지원)
- (2011년) '마을기업'으로 명칭 변경(483개 마을기업 선정 지원)
- (2012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지원(누계 788개)
- (2013년) 국정과제(No.2-7-105-7) 선정(지역공동체 활성화 → 각종 공동체발전사업 추진)
- (2016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지원(누계 1,446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15년부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16년부터 마을기업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사업규모 : 지역공동체일자리 30명, 마을기업 8개 육성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지역공동체 일자리 : 취업 취약계층(만18세 이상인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마을기업 : 마을 주민 주도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마을 단위 기업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 업 명
8. 위험도로구조개선(3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경제발전 계정	120	121
명칭					교통및물류	도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1	301
명칭	지방도구조개선	위험도로구조개선	위험도로구조개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위험도로구조개선	36,498	29,594	29,594	19,600	12,000	25,000	△4,594	△1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방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 구조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선제적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② 추진경위

- '03. 5.29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
  ※ 자동차특별회계를 지방도로 개선 사업에 지원 : 세입원의 25/100이상
- '04. 3.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업무이관(경찰청→행안부)
- '04. 4. 시·도 사업수요를 받아 제1차 중장기계획('04~'13) 수립·시행
- '06. 12.30 '07사업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
- '14. 1. 제2차 중장기 사업계획(´14~´23) 수립·시행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4 ~ 2023
- 사업규모 : 15개 시 도 667개소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시·도 및 시·군·구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별표1)

사 업 명
9.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32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120	121
명칭					교통및물류	도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1	306
명칭	지방도구조개선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위험도로구조개선(제주)	1,002	406	406	385	385	385	△21	△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방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 구조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선제적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② 추진경위

- ’03. 5.29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
  ※ 자동차특별회계를 지방도로 개선 사업에 지원 : 세입원의 25/100이상
- ’04. 3.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업무이관(경찰청→행안부)
- ’04. 4. 시·도 사업수요를 받아 제1차 중장기계획(’04～’13) 수립·시행
- ’06. 12.30 ’07사업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
- ’14. 1. 제2차 중장기 사업계획(´14～´23) 수립·시행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4 ~ 2023
- 사업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49개소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 도 및 시·군 구
- 사업 수혜자 : 시·도 및 시·군·구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별표1)

사 업 명
10. 섬발전 협력사업 추진(124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경제발전 계정	010	013
명칭					일반·지방재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41	300
명칭	지역발전	광역경제권추진지원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	-	-	2,500	2,000	2,000	2,0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생활필수품인 가스, 석유 등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연료 운반선 건조를 지원하여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 가스·석유 등의 연료는 별도의 화물선을 통해 운반해야 하나 경제성 문제 등으로 운항이 어려운 지역은 개인 어선을 통해 운송하는 실정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제10조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NO.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6,000백만원(국비 8,000 지방비 8,000)
- 사업기간 : 2018 ~ 2021년(4년)
- 사업규모 : 8척(50~100t 2척/년)
- 대상지역 : 민간 화물선이 운항하지 않는 외딴 섬 지역 중심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도 또는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시·도 및 시 군·구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전 자 정 부 국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 584

사 업 명
1.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28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경제발전	020	025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00
명칭	재난안전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구축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50(3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구축	11,955	11,100	11,100	10,382	10,382	10,382	△718	△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별로 소관 부서에서 설치한 CCTV의 효율적 관제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
- 강력범죄, 성폭력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② 추진경위

- '10. 6. 9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CCTV 운용효율화 방안 수립
- '10. 6. 11 영등포 초등학생 사건 관련 총리실 주관 "아동성범죄대책 관계부처 회의"
- '10. 6. 25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부의 아동안전 보완대책) 추진과제 포함
- '11년부터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사업(광특회계) 시행
- '11. 4. 4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CCTV 이용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 '13. 4. 5 안행부 업무보고('17년까지 전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목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229개 지자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및 지능형 관제 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 등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한국정보화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서울 30%, 그 외 지방자치단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별표 1]
한국정보화진흥원	100%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제4항

안 전 정 책 실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Ⅱ-1)

1.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 587

2.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제주) ····· 590

3. 소하천정비 ····· 593

4.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 596

사 업 명
1.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32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경제발전계정	120	부문코드(3자리)
명칭					교통및물류	도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2	300
명칭	지방도로구조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21,990	24,444	24,444	12,500	12,500	22,500	△1,944	△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방도로중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중앙분리대, 교통섬, 차로정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감소
- 불필요하게 신호 대기시간이 길고, 법규위반 사례가 많아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하여 사고감소, 소통원활, 녹색교통 활성화
-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38조의 2
- 국정과제 : No. 158-3,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 세부 이행과제 : OECD 중위권 수준의 도로교통 안전 달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04년부터 추진하였으나 '06. 12월말에 폐지되어 '07년부터는 균특회계사업, '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

  * 국무총리실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 중점관리 과제
  * 국무총리실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계획" 시행
  * 국토해양부의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세부사업과제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핵심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추진('09. 4. 29 대통령께 보고)
- 국정과제 : No. 158-3,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 세부 이행과제 : OECD 중위권 수준의 도로교통 안전 달성

≪어린이보호구역개선≫

-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개정 (´03. 5월)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기관 변경 : 경찰청 → 안행부 (´04. 4월)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폐지, 균특회계사업으로 전환 (´06. 12월)
- 국무조정실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 (´08년)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전환 (´10. 1월)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 국무회의 보고 (´10. 5월)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규칙 제정 및 통합지침 마련 (´11. 1월)
- 국정과제 : No. 158-3,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 세부 이행과제 :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지방도로 보행환경 전국 실태조사 실시 (´09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12.8.23)

  * 보행권 강화를 위한 국가적 책무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 보행법에 따른 사업 추진방식 전환(선개념, 균등배분→지구개념, 공모제)
- 보행환경개선 지구 공모사업 추진 ('13~)

- 국정과제 : No. 158-3,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 세부 이행과제 : 보행자 우선, 교통약자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 ~ 계속
- 사업규모 :
  -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 6,025개소
  - 회전교차로 설치 : 1,358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 16,042개소
  - 안전한보행환경 조성 : 1,27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회전교차로 : 정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사 업 명
2.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제주)(32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경제발정계정	120	부문코드(3자리)
명칭					교통및물류	도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2	301
명칭	지방도로구조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제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1,000	1,056	1,056	500	500	500	△556	△5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방도로중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중앙분리대, 교통섬, 차로정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감소
- 불필요하게 신호 대기시간이 길고, 법규위반 사례가 많아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하여 사고감소, 소통원활, 녹색교통 활성화
-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38조의 2
- 국정과제 : No. 158-3,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 세부 이행과제 : OECD 중위권 수준의 도로교통 안전 달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04년부터 추진하였으나 '06. 12월말에 폐지되어 '07년부터는 균특회계사업, '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

  * 국무총리실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 중점관리 과제
  * 국무총리실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계획" 시행
  * 국토해양부의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세부사업과제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핵심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추진('09. 4. 29 대통령께 보고)
- 국정과제 : No. 158-3,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 세부 이행과제 : OECD 중위권 수준의 도로교통 안전 달성

≪어린이보호구역개선≫
-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개정 (´03. 5월)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기관 변경 : 경찰청 → 안행부 (´04. 4월)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폐지, 균특회계사업으로 전환 (´06. 12월)
- 국무조정실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 (´08년)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전환 (´10. 1월)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 국무회의 보고 (´10. 5월)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규칙 제정 및 통합지침 마련 (´11. 1월)
- 국정과제 : No. 158-3,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 세부 이행과제 :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지방도로 보행환경 전국 실태조사 실시 (´09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12.8.23)
  * 보행권 강화를 위한 국가적 책무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 보행법에 따른 사업 추진방식 전환(선개념, 균등배분→지구개념, 공모제)
- 보행환경개선 지구 공모사업 추진 ('13~)
- 국정과제 : No. 158-3,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 세부 이행과제 : 보행자 우선, 교통약자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 ~ 계속
- 사업규모 :
  •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 165개소
  • 회전교차로 설치 : 234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 313개소
  • 안전한보행환경 조성 : 38개소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회전교차로 : 정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사 업 명
3. 소하천정비(2731-300, 2732-301, 27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2732, 2734	300~302
명칭	재난관리	[2731]소하천정비 [2732]소하천정비 [2734]소하천정비	[300]소하천정비(생활) [301]소하천정비(제주) [302]소하천정비(세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소하천정비	211,532	211,532	211,532	211,662	211,532	211,532	-	-
생활계정	199,333	203,726	203,726	199,898	199,768	199,768	△3,958	△1.9
제주계정	6,437	2,882	2,882	6,514	6,514	6,514	3,632	126.0
세종계정	5,762	4,924	4,924	5,250	5,250	5,250	326	6.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수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치수・이수(治水・利水)와 자연이 조화된 재해에 강한 소하천정비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비용보조 및 재정지원 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보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소하천정비사업 지원 대상 근거 - 지역발전특별회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1호제1항 2호 시·군·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1호,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지역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균특법 제34조제2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3년 : 전국의 소하천실태 일제조사 실시
- '95.01월 :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소하천정비법」제정
- '96.12월 : 지방양여금법령 개정으로 일정액의 양여금 확보
- '99.06월 : 소하천 시설기준 제정
- '03.04월 : 국무총리 주관으로 '03. 4. 8 국무회의시 확정된 범 정부적 수해방지 대책 과제로 소하천정비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과제로 선정
- '05년부터 양여금 제도 폐지 ⇒ 농특세 국비보조사업으로 제도 변경
- '15년부터 농특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

- '15.7월 : 소하천 관리기준, 정보체계 구축 등 내용을 포함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 ~ 계속
- 사업규모 : 총 54,377km ('16년까지 24,406km 완료, 정비율 44.9%)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국비보조율 5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지역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4.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27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세종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3	302
명칭	재난관리	재해위험·취약지역정비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7,041	6,337	6,337	5,070	3,270	3,270	3,067	△48.4

※ 2015년부터 지특회계(세종) 추진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재해취약요인 해소를 위한 재해위험지역·시설 정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재해위험지구>

① 법령상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12조, 제70조

② 추진경위

▪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함에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적시에 정비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98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14년까지 일반회계로 추진되다 '15년부터 지특(세종)으로 추진)
- 사업규모 : 재해위험지역 26개소('17년까지 21개소 해소)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5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지역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자치단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